



학생선수 인권의 현주소

**인권실태 전수조사와
스포츠분야 (성)폭력 판례분석
결과 발표 토론회**

일시 : 2019. 11. 7. 목. 14:00 - 18:0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 2층)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사회적 약자의 인권옹호를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위원회의 스포츠인권 증진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좌장과 발표를 담당해주실 배복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님, 이한본 변호사님과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토론 참여자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2월 25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와 협력하여 범정부적인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되었습니다. 빙상과 유도 종목에서 폭로된 문제는 일부 종목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스포츠계에서 만연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스포츠계 자체적인 해결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와 권리구제가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특조단은 피해의 실태를 정확히 밝힌 후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활동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지난 달 24일 개최한 <합숙소 앞에 멈춘 인권 : 학생선수 기숙사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는 자리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초·중고 학생운동선수 약 6만3천 명을 대상으로 5,000여개 학교에서 사전에 관련 동영상을 시청한 후 폭력·성폭력·학습권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개별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코치님 욱하지 말고 때리지 마세요. 너무 무서워요”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학생선수들이 조사관들에게, 또는 기타의견으로 적은 말 중 가슴을 아프게 하는 하나의 문구입니다. 이제 우리 학생선수들의 두려움을 견어내 주어야 합니다. 학생선수들이 용기내어 얘기한 우리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안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판례분석’도 함께 논의합니다. 법원이 현행법을 해석하고 적용한 판례를 분석하고자하는 이유는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실태를 토대로 한 법적·제도적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는 이미 2007년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에 이어 2010년에는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스포츠분야의 폭력·성폭력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것을 보면서 그 참담함은 절박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문제는 일회성·우발적이라기보다 구조화된 체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과중심적 문화와 은밀성 때문에 자의든 타의든 은폐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발표회와 토론회는 선수이기 이전에 ‘아동’이고 ‘학생’인 학생선수 인권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들이 선수로 활동하지만 아동이고 학생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학생선수들이 폭력과 성폭력으로 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해답을 찾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중에도 오늘 발표회와 토론회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안녕하십니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안민석입니다.

먼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님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스포츠분야 인권문제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학생선수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한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그리고 연구진 여러분과 토론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스포츠 혁신과 스포츠분야 인권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특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스포츠분야의 인권문제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특조단이 발표한 학생선수 기숙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자리에도 참석했습니다. 여전히 합숙소 앞에 멈춰버린 학생선수들의 인권 현실을 확인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미 2007년 ‘학원 체육 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고 이후, 학교체육진흥법을 통해 ‘상시적 합숙 훈련 근절 조항’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발표회와 토론회는 지난달 발표에 이어 학생운동선수의 인권 문제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실태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폭력·성폭력 문제에 대한 초·중고 학생선수 6만 3천 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사를 통해 학생선수 인권의 현주소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수치로 드러난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이면과 배경을 더 들여다보고, 학생운동선수들의 인권실태를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관련 법원의 판례 분석 결과는 입법적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데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국회에서 스포츠분야의 혁신과 인권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발족하면서 참담한 심정과 함께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다는 다짐을 말씀하신 데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이 지난 학생운동선수 기숙사 실태조사 발표에 이어 대한민국 스포츠인권 문제를 다시 상기하고, 근본적 해결 방법을 찾는 실마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을 흔히 ‘꿈나무’라고 합니다. 학생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스포츠의 현재이면서 미래가 바로 학생 운동선수들입니다. 저는 의정 활동 과정에서 이와 같은 시각에서 학원 체육의 정상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럼에도 크게 변하지 않은 스포츠계 현실은 제게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활동성과가 헛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 스포츠분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서 법과 제도를 통해 인권이 꽃피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7일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안 민 석**

- 일시 : 2019. 11. 7.(목) 14:00~18: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 2층)

시 간	내 용
개회식	
14:00~14:20	사회 : 이수연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특별조사팀장) ❖ 개회사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인사말 -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션 1. 학생선수 인권 어디까지 왔나	
14:20~14:30	[영상] 두려움 없이 운동하고 싶어요.
14:30~14:50	[발표]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결과 - 김현수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
14:50~15:50	[패널 토의] 좌장 : 배복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 류태호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 정혜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 신진용 (교육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장) - 서정화 (현 GKL스키팀 코치, 평창 동계올림픽 국가대표선수)
15:50~16:00	휴 식
세션 2.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판례분석 결과	
16:00~16:20	[발표]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판례분석 결과 -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6:20~17:20	[패널 토의] 좌장 : 이한본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 함은주 (문화연대 집행위원, 사회체육학 박사) - 원민경 (법무법인 (유)원 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 -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 김은희 (고양테니스아카데미 테니스 코치)
17:20~18:00	종합토론 및 마무리

- 세션 1. 학생선수 인권 어디까지 왔나
 - [발표]
 -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결과 3
 - 김현수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
 - [패널 토의]
 - 류태호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57
 - 정혜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65
 - 신진용 (교육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장) 73
 - 서정화 (현 GKL스키팀 코치, 평창 동계올림픽 국가대표선수) 83

- 세션 2.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판례분석 결과
 - [발표]
 -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판례분석 결과 91
 -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패널 토의]
 - 함은주 (문화연대 집행위원, 사회체육학 박사) 167
 - 원민경 (법무법인 (유)원 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 175
 -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181
 - 김은희 (고양테니스아카데미 테니스 코치) 189



【학생선수 인권의 현주소】

인권실태 전수조사와 스포츠분야 (성)폭력 판례분석 결과 발표 토론회

세션 1.

학생선수 인권 어디까지 왔나



【학생선수 인권의 현주소】

인권실태 전수조사와 스포츠분야 (성)폭력 판례분석 결과 발표 토론회

[발표]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결과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결과

"학생선수 인권, 어디까지 왔나"

2019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대한민국 학생운동선수들의 삶

“매번 똑같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책 없는 이야기 좀 그만해주세요! 진짜 힘들고, 죽고 싶은 생각 누구보다 많이 했어요, 운동 하나만보고, 오로지 운동이 좋아서, 남들 놀러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때 죽으라고 맞아가는 거 폭언하는 거 참아가면서 운동했어요. 조사만 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중3, 여자, 수영)

조사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4

조사의 필요성과 목적

- (한국 스포츠의 성과) 국가주도적 체육정책을 통한 급성장 배경
 - '체력은 국력이다'에 대한 잘못된 환상
 - 국민체육진흥법을 통한 법적 뒷받침(국위선양)
 - 정권정당성 확보 목적, 결과중심의 승리지상주의로 매몰
 - 88 서울올림픽의 유치 및 성공 개최를 위한 경기력 급성장 요구
- (성과에 대한 인식 및 효과) 국가 정책 목적에 부합
 - 선수 개인의 자기희생, 열정 + 지도자의 헌신 + 국가의 지원
 -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는 국민적 착시효과
 - 국민 대통합의 기제 - 국내 정치적 이슈 상쇄 효과

5

조사의 필요성과 목적

- (체육특기자 정책의 폐해)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의 한계
 - 운동에만 전념하는 시스템으로 기초교육 및 직업 다양성 상실
 - 인권침해(폭력, 성폭력, 학습권 침해 등)문제에 취약
 - 오랜 합숙소 생활로 자유권 침해 및 제한된 인간관계(고립된 섬)
 - 진학 및 취업 등에 지도자의 절대적 권한 남용으로 부작용 속출
 - 지도자 처우의 극단적 양극화 문제 발생

조사의 필요성과 목적

- (승리지상주의의 폐해) 스포츠 인권침해 사건들의 속출
 - 스포츠계 폭력, 성폭력, 사생활침해, 학습권 박탈, 출전제한, 합숙소 문제, 금품 갈취 및 상납, 무리한 체중감량으로 인한 사망, 경기단체 사유화, 규정의 주관적 해석, 행복추구권 침해, 자유권 침해, 안전권 확보 미흡, 아동인력의 착취, 은퇴 선수의 비참한 삶, 사이버 폭력, 승부조작, 입시부정, 사전스카우트, 강제유급 등

[주요 스포츠인권 사건]

- 2000년 3월, 체육특기자 동일계열 진학 조치
- 2000년 5월, 장희진 수영선수 국가대표 제명사건
- 2003년 3월,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8명 사망, 17명 부상)
- 2007년 5월, 국가대표 여자농구 감독 성추행 사건
- 2009년 9월, 국가대표 배구스타의 폭행 피해 사건
- 2013년 11월, 롯데자이언츠 구단 CCTV사찰 사건
- 2016년 1월, 역도 금메달리스트의 후배 폭행 사건
- 2016년 8월, 진천선수촌 여자수영 탈의실 불법촬영 사건
- 2016년 10월, 테니스 코치의 미성년자 제자 성폭행 판결(징역 10년)
- 2018년 12월, 국가대표 여자 쇼트트랙 코치의 성폭력 사건

조사의 필요성과 목적

- 전수 조사의 필요성
 - 기존 체육계를 중심으로 한 대책에 대한 반성과 혁신 요구
 - 대한체육회의 정기적 실태조사에도 조사의 실효성 등에 대한 의문 제기
 - 독립적 국가기구에서 객관적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시민사회 계의 요구
 - 초중고에서 운영 중인 학교 운동부와 개별적으로 운동하는 학생선수 전체를 세밀히 들여다보고 운동선수의 삶과 인권 실태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예방 필요
- 조사의 목적
 - 아동이자 학생인 학생선수들의 인권 현황을 아동인권, 학생인권, 성인지적 관점, 스포츠인권 등의 통합적 관점으로 접근, 구체적 실태 파악 및 정책대안 모색

스포츠인권보호의 논거

- 헌법상 기본권 및 국제 협약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1 아동최선의 이익)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위 협약 제19조1) 당사국에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의 학생 지도를 금지
 -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 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제1항) 학교의 장이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할 것을 언급
 - (대한체육회 정관 제2조) 스포츠에서의 어떠한 종류의 폭력도 배격 등
- 관계 기관의 권고 등
 - 국가인권위원회 - 스포츠인권헌장 및 가이드라인 제정 권고
 - IOC - Olympic Charter, Olympic Ethic
 - 유니세프 -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스포츠원칙 등 국제적 기준관련 문건들
 -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 대한체육회 등의 스포츠인권 문제 자정을 위한 문건들



조사방법

조사경과

2019년

- (3.28.) 2019 시도교육청 학교체육 업무담당자 정책실무협의회 협조 요청
- (4.24.~5.9.) 초중고 학생선수 대상 사전탐색조사(Pilot Test) 실시
- (5.1.) 교육부에 초중고 학생선수 현황 자료 요청(2019.5.1. 기준 대한체육회 등록 선수)
- (5.30.) 학생선수 인권 실태조사 연계 영상물 제작
- (6.10.) 시도교육청에 학생선수 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청(전국 5,274교, 63,211명 참여 확정)
- (6.19.) 시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담당 장학사 협의회 개최
- (6.25.) 시도교육청에 조사 실시 협조 요청, 학교 내 담당자에게 세부 가이드라인 안내
- (6.28.) 학생선수 인권 실태조사 개시 보도 의뢰
- (6.28.) 시도교육청에 학생선수 인권 실태조사 현장 모니터링 실시 요청
- (7.1.~7.12.) 학생 운동선수 인권 실태조사(온라인 기반 양적조사) 실시
- (8.9.~9.30.) 양적조사 결과 분석 및 질적조사 수행

조사방법

- 혼합연구
 - 결합 : 양적연구(실태조사)+질적연구(심층면접)
- 양적분석
 - 모집단 : 전수조사(19.05.01. 기준, 대한체육회 등록 학생선수 전체 63,211명)
 - 조사참여자: 최종 57,557명(응답률 91.1%, 초 18,007명, 중 21,952명, 고 17,598명)

구분		사례수(%)		
		초	중	고
성별	여자	4,968(27.6)	4,790(21.8)	3,756(21.3)
	남자	13,039(72.4)	17,162(78.2)	13,842(78.7)
종목 구분	개인종목	5,414(30.2)	4,926(22.5)	3,944(22.5)
	대인종목	4,498(25.1)	5,973(27.3)	5,232(29.8)
	단체종목	8,010(44.7)	10,998(50.2)	8,356(47.7)
학교운동부 소속 여부	학교운동부 소속	14,265(79.2)	18,703(85.2)	16,153(91.8)
	개별 활동	3,742(20.8)	3,249(14.8)	1,445(8.2)
계		18,007(100.0)	21,952(100.0)	17,598(100.0)

조사방법

- 문항의 구성

구분	학습권 (학업, 운동)	폭력 (언어/신체 폭력)	성폭력	개인적 특성	합계
초등학생	11	12	7	7	37
중·고등학생	14	32	27	8	81

- 자료분석
 - (분석도구) SPSS window ver. 23.0 프로그램
 - (분석방법) 빈도분석, 교차분석(전수조사로 유의차 검증 미 실시)

조사방법

- 질적 분석
 - 기간 : 9.1.~9.30.(1개월간)
 - 방법 : 연구자 6명(학습권 2, 폭력 2, 성폭력 2)이 현장에 방문하여 인터뷰 실시
 - (표집) 양적 연구에서 나타난 특이사항으로 고려
 - (이론적 틀) 사회생태학적 모델 ; 개인-대인-조직-공동체-공공정책
 - (분석) Maxwell의 테마 분석 프로토콜 - 코드, 카테고리, 테마 등을 발굴
 - 심층면접 참여자 : 총 29명, 학습권(11명), 폭력(10명), 성폭력(8명)
 - 기타의견 활용
 - 설문 문항 중 개방형 질문
'더 하고 싶은 이야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써주세요'
- 응답자 : 총 2,313명이 자유의견 기재(초 582건, 중 851건, 고 880건)

14

조사 후속조치

※ 상담 실시 및 진정 접수

- 설문 문항 중 상담요청 문항
'전화나 카카오톡 상담 받기' 원하는 학생은 연락처 작성
- 총 7,333명이 전화번호 기재(초 1,863명, 중 3,420명, 고 2,050명)
 - → 온라인 상담체계 구축 후 인권 상담 및 조사 유경험자가 상담 실시
 - 일부 진정사건으로 연계

15

조사결과 기초통계

유형별 폭력 경험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폭력 유경험 응답자 현황

급별	응답자수(명)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폭력(%)
초	18,007	3,423(19.0)	2,320(12.9)	438(2.4)
중	21,952	3,039(13.8)	3,288(15.0)	1,071(4.9)
고	17,598	2,573(14.6)	2,832(16.1)	703(4.0)
계	57,557	9,035(15.7)	8,440(14.7)	2,212(3.8)
총계	19,687명			

- 유형별 폭력 경험 현황
 - 전체 63,211명 중 57,557명 참여 (응답률 91.1%) → 19,687명 피해(중복)
 - 중학교부터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피해가 역전
 - 언어폭력 피해에 대한 내면화
 - 성폭력은 중학생이 가장 높아

학습권

- ‘공부할 시간이 없는 학생선수’
 - (하루 평균 운동시간)
 - 초(2-3시간 60.1) - 중(2-3시간 61.7) - 고(4-5시간 55.9)
 - (주말 및 휴일 운동) 실시한다
 - 초(71.8) - 중(80.1) - 고(83.1)
 - (운동시간에 대한 인식) 길다+너무 길다
 - 초(51.4) - 중(60.3) - 고(73.2)

- 수업참가
 - (평소 수업 참가) 오전/오후 모두 참가/결손
 - 초(75.1/24.9) - 중(85.6/14.4) - 고(53.5/46.5)
 - (시험기간 수업 참가) 오전/오후 모두 참가/결손
 - 초(68.4/31.6) - 중(68.6/31.4) - 고(41.4/58.6)

18

폭력

- 언어폭력
 - (피해경험) 초(19.0) - 중(13.8) - 고(14.6)
 - (가해자) 지도자(감독, 코치) 가해 비율: 초(69.0) - 중(43.8) - 고(56.0)

- 신체폭력 피해(8,440명)
 - (피해경험) 초(12.9) - 중(15.1) - 고(16.2)
 - (가해자) 상급학교로 갈수록 지도자는 감소(75.5-65.3-46.7), 동료는 증가
 - (신체폭력 피해 시 감정)
 - 대개 부정적 감정(초등: 정서적 피해, 중고등: 중도탈락과 연관된 감정)
 -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함”(30.4-17.0-16.1) 문제
 - (특징) 폭언의 일상화, 중학 이후 동료 간 욕설 증가, 언어폭력의 모방과 학습

19

성폭력

- 성폭력 피해, 2,212명 피해
 - (피해경험)초(2.4) - 중(4.9) - 고(4.0)
- 성폭력 피해 감정과 대처
 - (피해자 감정) 초등학생은 '정서적 피해'가, 중학교 이후는 '중도탈락'과 연관
 - 감정적 피해: 무섭고 화가남, 자존감이 낮아짐, 극단적 생각 등
 - 중도탈락 관련: 운동하기 싫어짐, 운동을 그만두고 싶어짐 등
 - (피해 시 대처방법)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소극적 대응'이 주류
 - 적극적 대응: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고 사과를 요구함, 싫다고 분명히 말하고 하지 말라고 요구함,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 요청함 등
 - 소극적 대응: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함, 괜찮은 척 함, 얼굴을 찡그리거나 하지 말라고 하며 싶은 내색을 함 등
 - 기타(22.7-19.5-20.8) - 심층분석 필요
- ▷ 합숙중심의 제한적 커뮤니티, 위계-권력 구조, 공동체우선주의, 승리지상주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 등에 의한 의도적 무관심 및 침묵 만연한 결과

20

조사결과 초등학교 전수조사

21

운동의 시작

- 운동시작 이유
 - 내가 좋아서(71.2), 운동에 소질이 있다고 해서(11.9), 부모님이 원해서(8.8) 등
- 운동시작 학년
 - 3학년(26.5), 4학년(23.1), 1학년(20.5) 순
 - 운동을 놀이로 인식 - 피로감 낮음
 - 스스로 선택에 의한 자연스러운 진입
- 시험 없을 때 하루 평균 운동 시간(평일)
 - 2시간(35.0), 3시간(25.1), 4시간(16.3) 순
 - 3시간 이상 49.1% - 과잉경쟁 -과잉훈련 시작
- 주말/휴일 운동
 - 한다(71.6), 안 한다(28.4)
 - 운동부 68.1%, 개별활동 85.2% - 주말 스포츠클럽 형태, 시험

22

“휴식할 때는 충분히 쉬고 싶다. 운동시간이 좀 긴 것 같다. 필요한 훈련 3시간 정도만 하고 싶다”

(초6, 남자, 농구)

“대회가 없는 날은 쉴 수 있는 요일을 좀 더 주면 좋겠다.”

(초5, 여자, 양궁)

“한 달에 1번은 쉬고 싶다.”

(초6, 남자, 야구)

“주말에 훈련을 안하고 싶다.”

(초6, 여자, 롤러스포츠)

23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수업 참가

		사례수	오전수업만	오후수업만	오전/오후 수업 모두 들어감	수업에 들어가지 않음	기타
■ 전체 ■		18,007	1,103(6.1)	2,858(15.9)	13,528(75.1)	80(0.4)	438(2.4)
성별	여자	4,968	367(7.4)	727(14.6)	3,707(74.6)	21(0.4)	146(2.9)
	남자	13,039	736(5.6)	2,131(16.3)	9,821(75.3)	59(0.5)	292(2.2)
학교운동부 소속 여부	학교 운동부 소속	14,265	903(6.3)	1,647(11.5)	11,374(79.7)	56(0.4)	285(2.0)
	개별 활동	3,742	200(5.3)	1,211(32.4)	2,154(57.6)	24(0.6)	153(4.1)

- 수업결손 24.9%
 - 스포츠 조기교육에 대한 믿음과 욕망
 - 스포츠 사교육의 시작

“인터뷰 같은 거 영어로 하고 그러려면”
(초등학교, 여자, 테니스)

24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합숙소에서) 새벽 운동할 때는 한 5시 40분 정도에 일어나서 자는 건 10시쯤이요. 평소에는 7시 30분. 새벽 운동이 좀 힘들었어요. 체력 훈련 하고…”

(초등학생, 여자, 유도)

25

운동 지속

- 중학교 진학 시 운동지속 의향
 - 있다(83.3%), 없다(16.7%)
- 중학교 진학 시 운동을 그만두려는 이유

		사례수	운동이 그냥 힘들어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부모님이 반대하기 때문에	기타	운동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서	욕을 먹거나 혼나는 것이 싫어서	맞는 것이 무서워서
■ 전체 ■		3,007	1,348(44.8)	586(19.5)	377(12.5)	295(9.8)	221(7.3)	137(4.6)	43(1.4)
성별	여자	1,248	593(47.5)	252(20.2)	138(11.1)	118(9.5)	92(7.4)	40(3.2)	15(1.2)
	남자	1,759	755(42.9)	334(19.0)	239(13.6)	177(10.1)	129(7.3)	97(5.5)	28(1.6)

“선생님이 못할 때 때리실 때가 무서웠다. 그리고 배구를 가는 날 하루 하루가 긴장되고 무서웠다. 그래서 아침이 되기도 싫었고...”
(초6, 여자, 배구)

“때리지 않으면 좋겠고, 폭력을 쓰면 안되고, 태권도 끊는다고 하면 끊게 해주세요. 제발...지금은 폭력 등을 너무해서...”
(초6, 여자, 태권도)

“코치님께서 나무배트 손잡이로 허벅지 안쪽 부분을 때려서 부모님이 그걸 보고 우셨습니다.”
(초5, 남자, 야구)

언어폭력

“나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나 욕, 비난, 헐박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사례수	있다
■ 전체 ■		18,007	3,423(19.0)
성별	여자	4,968	780(15.7)
	남자	13,039	2,643(20.3)
학교운동부 소속 여부	학교 운동부 소속	14,265	2,405(16.9)
	개별 활동	3,742	1,018(27.2)

- 가해자 : 지도자 69.0%
 - 코치 43.8%, 감독교사 25.2%, 선배선수 17.9%, 또래선수 9.9%, 기타 3.2% 순

“욕을 너무 심하게 한다. 욕을 먹지 않으면서 하고 싶다.”
(초4, 남자, 아이스하키)

28

언어폭력

‘나는 누군가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져서 공포감을 느낀 적이 있다’ (중복)

		사례수	코치	감독	선배선수	또래선수	기타
■ 전체 ■		1,525	887(50.3)	446(25.3)	219(12.4)	122(6.9)	88(5.0)
성별	여자	385	299(72.0)	36(8.7)	32(7.7)	28(6.7)	20(4.8)
	남자	1,140	588(43.7)	410(30.4)	187(13.9)	94(7.0)	68(5.0)

- 가해자
 - 남, 녀 모두 지도자에 의한 가해 - (남)74.1%, (여) 80.7%
 - 언어폭력과 같은 순(코치-감독-선배-또래-기타)
 - (남)선배선수에 의한 폭언이 시작

29

부당한 심부름

‘나는 원하지 않는 각종 심부름, 빨래, 청소를 대신 한 적이 있다’

		사례수	있다	없다
■ 전체 ■		18,007	779(4.3)	17,228(95.7)
성별	여자	4,968	197(4.0)	4,771(96.0)
	남자	13,039	582(4.5)	12,457(95.5)

- 가해자
 - 선배선수(42.7), 코치(26.3), 감독(12.5), 포래선수(11.6), 기타(6.8%) 순
 - 초등학교 때부터 서열화를 경험
 - 초등학교부터 공동체의식보다는 서열문화로 사회화되는 부작용
 - 합숙의 폐해

30

“우리가 선생님 말 안 듣고, 해야 하는 걸 하지 않으니까 형들한테 혼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형들이 선생님들한테 혼나니까.....”

(초등학교, 남자, 수영)

31

신체폭력

		사례수	예	아니오
■ 전체 ■		18,007	2,320(12.9)	15,687(87.1)
성별	여자	4,968	512(10.3)	4,456(89.7)
	남자	13,039	1,808(13.9)	11,231(86.1)

- 가해자 : 지도자 75.5%
 - 여학생: 코치(77.6), 선배선수(7.0), 감독(6.8), 또래선수(4.4), 기타(4.2) 순
 - 남학생: 코치(47.4), 감독(25.9), 선배선수(17.6), 또래선수(4.9), 기타(4.2) 순

32

“하루에 30대 정도 맞았어요, 많이 맞으면 40대... 안 맞는 날은 없고 매일 매일 맞았어요.....창고 들어가서 손으로 등이든 얼굴이든 그냥 막...”
(초등학교, 남자, 배구)

“발바닥 맞을 때는 피가 멈추는 느낌이 (들고) 손바닥을 맞을 때는 멍이 살짝 든 적도 있다. 안 맞고 훈련했으면 좋겠다.”
(초5, 여자, 수영)

“코치님이 엉덩이를 때려서 피멍이 전체에 든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잠도 못 자고 앓지도 못할 것 같았어요.”
(초4, 남자, 배드민턴)

33

신체폭력 시 감정

- 폭력을 당하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함(38.7)”
 - 무섭고 화가남(18.2), 운동하기 싫어짐(17.0), 운동을 그만두고 싶어짐(12.3), 자존감이 낮아짐(9.4), 기타(4.3) 순

“미워서 때리는 것은 아니니깐 맞아도 괜찮아요. 아니 그냥 운동하면서 맞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남자, 배구)

“코치님에게 맞는 이유는 제대로 하지 않아서 맞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건 상관없다”

(초등4, 여자, 태권도)

34

신체폭력 시 감정과 대처

- 도움 요청 하지 않은 경우 : 84.0%
-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 가족(55.1), 동료 운동선수(16), 지도자(11), 친구(9.8), 학교선생님(3.3), 기타(2.7), 상담원(1.5), 체육단체(0.4), 경찰 등 수사기관(0.2) 순

“엄마는 제가 수영하는걸 보러 오시고, 제가 맞는 것도 보시거든요, 엄마는 운동할 때 똑바로 잘 하지 왜 맞았냐고, 다음부터는 똑바로 잘 하라고.....”

(초등학교, 남자, 수영)

35

성폭력 피해현황 (중복응답)

		사례수	없다	선배선수	또래선수	코치	감독
■ 전체 ■		18,007	17,569(97.3)	174(1.0)	162(0.9)	110(0.6)	43(0.2)
성별	여자	4,968	4,888(98.3)	22(0.4)	30(0.6)	29(0.6)	6(0.1)
	남자	13,039	12,681(96.9)	152(1.2)	132(1.0)	81(0.6)	37(0.3)

- 전체 18,007명 중 489명 2.7%
- 피해 신체 부위
 - 엉덩이(19), 어깨(16.2), 성기(14.1), 얼굴(13.8), 가슴(10.6), 기타(9.8), 다리(9.5), 허벅지(6.8) 등
- 피해장소
 - 운동 연습하는 곳(운동장, 체육관)(49.9), 합숙소 또는 기숙사(18.9), 운동부실(체육실, 지도자실)(12.1), 기타(10.9), 시합하는 경기장(8.2) 순
 - (남) 합숙소가 21%, (여) 합숙소 9.7%로 낮은 대신 기타(15.1)가 높음

36

“선생님이 말 없이 가르치면서 제 몸을 터치 하는 것이 괜찮나요?”
(초등6, 여자, 빙상)

37

성폭력 경험 시 감정과 대처

성폭력 경험 시 감정		사례수	기타	무섭고 화가남	자존감이 낮아짐	운동하기 싫어짐	운동을 그만두고 싶어짐	극단적 생각(자해, 자살 등)
■ 전체 ■		438	126(28.8)	104(23.7)	92(21.0)	76(17.4)	36(8.2)	4(0.9)
성별	여자	80	26(32.5)	13(16.3)	17(21.3)	16(20.0)	7(8.8)	1(1.3)
	남자	358	100(27.9)	91(25.4)	75(20.9)	60(16.8)	29(8.1)	3(0.8)

• 학년이 높아질수록 '기타' 의견 증가
- 성폭력에 대한 전문성이 매우 중요

성폭력 경험 시 대처		사례수	싫다고 분명히 말하고 하지 말라고 요구함	괜찮은 척 웃거나 그냥 넘어감	아무런 행동을 못함	얼굴을 찡그리는 등 소심하게 불만을 표시함	기타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고 자리를 떠남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함
■ 전체 ■		438	106(24.2)	103(23.5)	82(18.7)	67(15.3)	36(8.2)	34(7.8)	10(2.3)
성별	여자	80	20(25.0)	20(25.0)	11(13.8)	17(21.3)	8(10.0)	4(5.0)	0(0.0)
	남자	358	86(24.0)	83(23.2)	71(19.8)	50(14.0)	28(7.8)	30(8.4)	10(2.8)

성폭력 경험 시 대처 이유

		사례수	행위의 정도가 심각치 않다고 생각되어서	유사한 피해를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보복이 무서워서	분위기가 어색해 질까 봐	동료 선수의 비난이 나올까 걱정되어서	상대방과 껄끄러워지는 것이 싫어서	상대방이 불이익을 줄까 걱정되어서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 전체 ■		438	104(23.7)	61(13.9)	51(11.6)	46(10.5)	40(9.1)	40(9.1)	27(6.2)	26(5.9)	24(5.5)	19(4.3)
성별	여자	80	17(21.3)	6(7.5)	9(11.3)	14(17.5)	6(7.5)	9(11.3)	5(6.3)	6(7.5)	5(6.3)	3(3.8)
	남자	358	87(24.3)	55(15.4)	42(11.7)	32(8.9)	34(9.5)	31(8.7)	22(6.1)	20(5.6)	19(5.3)	16(4.5)

• '소극적 대처'의 원인

- 불필요한 신체접촉 상황을 '훈련 상황'으로 수용하는 경향(23.7%)
 - 행위의 정도가 심각치 않다고 생각되어서
- 각 종목 공동체 내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고려(21.2%)
 - 분위기가 어색해 질까봐, 동료선수의 비난이나 왕따가 걱정되어서, 상대방과 껄끄러워지는 것이 싫어서
- 보복에 대한 두려움(13.4%)
 - 보복이 무서워서,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 신고체계에 대한 인식 부족 등(10.5%)

조사결과 중, 고등학교 전수조사_학습권

합숙경험

합숙경험	현재 중학생			현재 고등학생				
	사례수	있다(초등학교)	있다(중학교)	사례수	있다(초등학교)	있다(중학교)	있다(고등학교)	
■ 전체 ■	21,952	5,493(25.0)	10,368(47.2)	17,598	3,069(17.4)	8,282(47.1)	11,313(64.3)	
성 별	여자	4,790	1,095(22.9)	2,006(41.9)	3,756	606(16.1)	1,520(40.5)	2,027(54.0)
	남자	17,162	4,398(25.6)	8,362(48.7)	13,842	2,463(17.8)	6,762(48.9)	9,286(67.1)
통학시간	학교	사례수	1시간 이내	1시간 이상				
현재 중학생	초등학교	5,493	4,531(82.5)	962(17.5)				
	중학교	10,368	7,413(71.5)	2,955(28.5)				
현재 고등학생	초등학교	3,069	2,392(77.9)	677(22.1)				
	중학교	8,282	5,104(61.6)	3,178(38.4)				
	고등학교	11,313	5,766(51.0)	5,547(49.0)				

- 중학교에서 합숙경험 크게 증가
-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 원거리 학생선수 기숙사 조건과 일부 연관

“숙소에 가면 웬지 모르게 주눅들고, 쉬고 싶고, 자고 싶어도 못 자요. 만약에 잔다고 해도 맘 놓고 편하게는 절대 못 자는 것 같아요.”
(초등4, 여자, 탁구)

운동시간

운동시간		사례수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이상
중학생		21,952	1,231(5.6)	7,039(32.1)	6,500(29.6)	4,235(19.3)	2,947(13.4)
성별	여자	4,790	329(6.9)	1,242(25.9)	1,559(32.5)	1,042(21.8)	618(12.9)
	남자	17,162	902(5.3)	5,797(33.8)	4,941(28.8)	3,193(18.6)	2,329(13.6)
고등학생		17,598	275(1.6)	2,750(15.6)	4,737(26.9)	4,906(27.9)	4,930(28.0)
성별	여자	3,756	69(1.8)	488(13.0)	1,005(26.8)	1,148(30.6)	1,046(27.8)
	남자	13,842	206(1.5)	2,262(16.3)	3,732(27.0)	3,758(27.1)	3,884(28.1)

- 하루 3시간 이상 훈련 : 중 62.3- 고 82.8%
 - 중, 고 모두 여성 선수 및 지도자가 더 길게 훈련(주말포함)
- 주말/휴일운동(실시한다) : 중 80.1 - 고 83.1%
 - 주말 개인 훈련 및 주말리그 경기 등으로 추정
- 평소 운동시간에 대한 인식(길다, 너무길다) : 중 60.3 - 고 73.2%
 - 여자 선수가 더 길다고 인식(여자 지도자일 경우 마찬가지로)

“선수의 몸과 미래보다 순간의 성적을 위해 훈련을 과하게 시켜
 혹사를 하고, 폭언 폭행을 하는 등 더럽고 추악하기 그지없는 팀
 이었습니다.”

(고3, 남자, 카누)

“예, 대회 나가는 애들은 네 번씩. 새벽, 오전, 오후, 야간.”

(고등학생, 남자, 체조)

“저녁 10시까지 운동을 하기 때문에 11시 30분 취침을 해서 충분
 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고…”

(고1, 야구, 남)

“훈련 시간이 너무 길어서 훈련하기가 싫어지고, 그만 두고 싶어
 져요. 그리고 학교 동아리 시간에 또 만들어가지고 훈련을 해서
 평일에 훈련 6시간 할 때도 있어요.”

(고3, 역도, 남)

수업 참가

수업참가 정도		사례수	오전/오후 수업 모두 들어감	오전수업만	기타	오후수업만	수업에 들어가지 않음
중학생 평소		21,952	18,798(85.6)	1,488(6.8)	1,202(5.5)	405(1.8)	59(0.3)
성별	여자	4,790	3,956(82.6)	414(8.6)	316(6.6)	88(1.8)	16(0.3)
	남자	17,162	14,842(86.5)	1,074(6.3)	886(5.2)	317(1.8)	43(0.3)
고등학생 평소		17,598	9,407(53.5)	6,884(39.1)	1,126(6.4)	95(0.5)	86(0.5)
성별	여자	3,756	2,180(58.0)	1,358(36.2)	177(4.7)	25(0.7)	16(0.4)
	남자	13,842	7,227(52.2)	5,526(39.9)	949(6.9)	70(0.5)	70(0.5)

- 평소 수업결손 : (중)14.4, (고) 46.5%
 - 시험이 있는 경우 수업결손 : (중) 17%증가 (고) 11%증가
 - 학교운동부 소속 여부에 따른 수업결손
 - (중) 학교운동부(13.8), 개별활동 등(17.5)
 - (고) 학교운동부(48.5), 개별활동 등(25.0)

46

보충수업

보충수업 여부	사례수	예	아니요
중학생	21,952	13,351(60.8)	8,601(39.2)
고등학생	17,598	10,748(61.1)	6,850(38.9)

보충수업 해주는 사람	사례수	e-school	학교 선생님	학원, 과외	친구	부모	코치/감독	기타
중학생	13,351	11,726(74.3)	1,964(12.4)	824(5.2)	490(3.1)	349(2.2)	235(1.5)	188(1.2)
고등학생	10,749	9,860(79.9)	1,486(12.0)	187(1.5)	381(3.1)	85(0.7)	267(2.2)	78(0.6)

- 보충수업용 e-school
 - 압도적 활용도, 난이도, 성실 수강 문제 등 제기
- 보충수업이 도움이 된다?_(중) 83.8%, (고) 72.7%
 - '수업결손'에 도움 우려

47

“시합 갔다 오면 쉬어야 하는데, 공부 또 하고 있으니까. e-school하고 있으니까. ...강제적으로. 안 할 수도 없고, ...아 짜증 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뭘 e-school이냐고...”

(고등학생, 남자, 축구)

“저는 영상 틀어 놓고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단체로 이렇게 운동할 때도 틀어놓고 한다거나.”

(고등학생, 남자, 체조B)

“솔직히 e-school로 배웠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시간 채워서 학교 그거, 최저 학력하는 거죠. 거의 들어도 저희가 모르니까.”

(고등학교, 남자, 테니스)

“아무거나 들어도 상관없어요. 시간만 채우면 돼요.”

(고등학생, 남자, 체조A)

운동-학업병행에 대한 인식

운동-학업 병행 필요성	사례수	【필요없다】					
중학생	21,952	5,048(23.0)					
고등학생	17,598	6,138(34.9)					
운동-학업 병행이 필요한 이유	사례수	기본 교양과 지식을 배우기 위하여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기 위하여	최저 학력제 대비를 위하여	대학 진학을 위하여	교우 관계를 위하여	기타
중학생	16,901	6,011(35.6)	4,486(26.5)	3,242(19.2)	2,252(13.3)	725(4.3)	185(1.1)
고등학생	11,458	2,857(24.9)	3,343(29.2)	1,535(13.4)	3,142(27.4)	119(4.3)	75(0.7)
운동-학업 병행이 불필요한 이유	사례수	신체적으로 피곤하여	운동과 훈련에 방해가 되므로	대회 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업을 이해할 수 없어서	기타	코치, 감독이 원하지 않으므로
중학생	5,051	2,010(39.8)	1,377(27.3)	795(15.7)	648(12.8)	194(3.8)	27(0.5)
고등학생	6,140	2,107(34.3)	1,944(31.7)	847(13.8)	1,077(17.5)	130(2.1)	34(0.7)

“나중에 제가 부상으로 다치거나 하면, 운동 쪽으로 못 가게 되면 다른 길을 잡아야 하니까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학생, 여자, 태권도)

“운동하면서 공부도 같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힘들어 가지고 공부하는 게을리하는 거 같아요.”

(고등학생, 남자, 체조)

“부감선생님이랑 코치님이랑 같이 상의해서 (수업일수를 관리해주세요요)”

(중학생, 남자, 요트)

“공부요? 저는 솔직히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과목이 하도 많잖아요...오후에 수업 들을거면 인성교육 아니면 영어”

(고등학생, 남자, 축구)

학교 행사

학교행사 참여정도	사례수	【참여하는 편이다】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중학교	21,952	19,699(89.7)	2,253(10.3)
고등학교	17,598	12,142(69.0)	5,456(31.0)

• 성별

- 중학교는 남학생, 고등학교는 여학생이 학교행사에 더 적극적인 참여

“웬만하면 그냥 시험 가기 전에만 몇 주 빼고, 시험 가는 것도 개인적인 시험 가는 거는 현장체험학습으로 해서 가는 거니까. 수업을 빼고.”

(고등학교, 남자, 테니스)

“시험이나 훈련 간다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학교 체험학습을 같이 못 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도 못 놀아요.”

(고2, 여자, 수영)

조사결과 중, 고등학교 전수조사_폭력

언어폭력

문항	중학생	고등학생
나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나 욕, 비난, 헐박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	3,039(13.8)	2,573(14.6)
나는 누군가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져서 공포감을 느낀 적이 있다	1,275(5.8)	971(5.5)
나는 과도한 훈련을 요구해서 운동을 포기하려고 한 적이 있다	2,329(10.6)	2,287(13.0)
나는 돈이나 소지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적이 있다	1,079(4.9)	823(4.7)
나는 원하지 않는 각종 심부름, 빨래, 청소를 대신 한 적이 있다	1,952(8.9)	2,253(12.8)
나는 카톡 등 온라인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195(0.9)	130(0.7)
(중복) 합계	9,887명	9,037명

“성장기인 우리 앞에서 무자기한 담배를 피고 약 11시까지 훈련시키고 아주 심각한 욕과 비속어 그리고 ...”

(중2, 남자, 야구)

“감독님께서 계속 유급하라는 말을 안 꺼내시면 좋겠고 코치님이 욕을 안 하시면 좋겠고 ...”

(중1, 남자, 야구)

“코치들의 언어폭력...조선 놈들은 맞아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싫습니다. 우리는 운동을 하는 거지 욕을 듣고 인격을 모독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3, 남자, 축구)

“빨래, 심부름, 청소 등은 당연히 후배가 해야죠. 코치님들 일 담당하는 애들도 한 명 지정하기도 하고.....선배들이 화장실, 복도 청소하라고 하죠.”

(중학교, 남자, 야구)

54

언어폭력에 대한 인식

문항	중학생 [그렇다]	고등학생 [그렇다]
나는 내가 당한 언어 폭력을 따라 하게 되는 것 같다	2,132(9.7)	1,556(8.8)
경기 성적을 위해서는 언어 폭력이 필요하다	1,130(5.1)	1,166(6.6)
운동부 내의 언어 폭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2,712(12.4)	2,103(12.0)
운동부 내의 언어 폭력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6,743(30.7)	6,381(36.3)

- 언어폭력에 대한 대처문제
 -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행위에 순응하는 결과
 - 고학년일수록 소극적 대처
- 언어폭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강화
 - 언어폭력 근절 조치에 실효성이 부족

55

신체폭력 (중복응답)

		사례수	해당 없음	머리박기, 엎드려뺨치기 등 별	손이나 발을 이용한 구타	계획에 없는 과도한 훈련	운동기구나 도구를 이용한 구타	기타
중학생		21,952	18,664(78.5)	2,162(9.1)	1,175(4.9)	881(3.7)	703(3.0)	181(0.8)
성별	여자	4,790	4,104(78.9)	375(7.2)	236(4.5)	243(4.7)	199(3.8)	42(0.8)
	남자	17,162	14,560(78.4)	1,787(9.6)	939(5.1)	638(3.4)	504(2.7)	139(0.7)
고등학생		17,598	14,766(76.3)	1,916(9.9)	991(5.1)	1,053(5.4)	533(2.8)	91(0.5)
성별	여자	3,756	3,194(77.7)	324(7.9)	176(4.3)	264(6.4)	132(3.2)	21(0.5)
	남자	13,842	11,572(75.9)	1,592(10.4)	815(5.3)	789(5.2)	401(2.6)	70(0.5)

- 신체폭력 경험
 - (중) 5,102명(21.5) - (고) 4,584명(23.7)
 - 중, 고 모두 남녀 피해차이가 크지 않음
 - 고학년일수록 증가(중) 18.5→22.1→23.7, (고) 21.9→24.7→24.7
 - 개인종목보다 대인 및 단체종목의 피해가 더 큼
- 운동부 소속여부
 - (중) 학교운동부(20.2), 개별활동 등(18.4) / (고) 학교운동부(23.1), 개별활동 등(29.8)
- 합숙경험
 - (중-고) 합숙경험이 있는 경우(27.3- 26.1)가 없는 경우(15.9-15.9) 보다 더 피해

56

신체폭력(중복)

- 종목별
 - (중) 배드민턴(223명, 39.5%), 에어로빅(15명, 37.5%), 체조(77명, 34.8%), 근대5종(42명, 34.4%), 수영(227명, 29.3%), 빙상(63명, 27.5%), 롤러스포츠(37명, 27.0%), 야구/소프트볼(962명, 26.5%), 태권도(568명, 25.1%), 농구(147명, 25.0%)
 - (고) 근대5종(56명, 41.8%), 체조(30명, 31.9%), 배드민턴(130명, 31.3%), 빙상(57명, 31.0%), 농구(137명, 30.6%), 수영(144명, 30.5%), 럭비(105명, 30.4%), 태권도(602명, 27.4%), 야구/소프트볼(771명, 27.1%), 펜싱(112명, 26.5%)
- * 응답 사례수 10 미만 제외, 상위 10개 종목, 내림차순

신체폭력 주기 (중복응답)

신체폭력 주기		사례수	일 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중학생		3,311	1,236(37.3)	1,273(38.4)	585(17.7)	217(6.6)
성별	여자	691	305(44.1)	254(36.8)	106(15.3)	26(3.8)
	남자	2,620	931(35.5)	1,019(38.9)	479(18.3)	191(7.3)
고등학생		2,844	1,269(44.6)	1,034(36.4)	421(14.8)	120(4.2)
성별	여자	567	305(53.8)	178(31.4)	66(11.6)	18(3.2)
	남자	2,277	964(42.3)	856(37.6)	355(15.6)	102(4.5)

- 월 1-2회 이상 상습폭력-(중) 62.7%, (고) 55.4%
 - 남학생이 여학생이 비해 다소 높음
 - 코치가 남성일 경우, 여성 코치보다 높음

58

신체폭력 가해자(중복응답)

신체폭력 가해자		사례수	코치	선배 운동선수	감독	기타	또래 운동선수
중학교		3,311	1,719(45.0)	1,117(29.3)	445(11.7)	440(11.5)	95(2.5)
성별	여자	691	501(65.7)	92(12.1)	67(8.8)	90(11.8)	12(1.6)
	남자	2,620	1,218(39.9)	1,025(33.6)	378(12.4)	350(11.5)	83(2.7)
고등학생		2,844	1,312(39.6)	1,218(36.8)	417(12.6)	329(9.9)	38(1.1)
성별	여자	567	360(56.8)	108(17.0)	65(10.3)	98(15.5)	3(0.5)
	남자	2,277	858(32.0)	1,204(44.9)	564(9.9)	319(11.9)	35(1.3)

- 주요 가해자
 - (중) 남자: 코치(39.9), 선배 운동선수(33.6) / 여자: 코치(65.7)
 - (고) 남자: 선배 운동선수(44.9) / 여자: 코치(56.8)
- 가해자 특징(고)
 - 학교운동부 소속(41.8)이 개별 활동(21.9)에 비해 선배선수 가해 비율 높음
 - 학교 밖 개별 활동 선수들은 지도자(66.5)에 의한 피해가 큼(학교운동부는 44.2)
 - 합숙여부도 합숙(41.7), 비합숙(31.2)으로 선배선수 가해 비율 높음

59

“양궁이라는 종목이 다른 종목에 비해 육체보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운동인데...선배가 오늘 활을 잘 못 쏘거나 기록이 떨어지거나...스트레스를 받으면 저희한테 푹니다”

(중학교, 남자, 양궁)

“코치님들은 학교에서 1년 혹은 2년 계약을 하는 데 자기 성적이 안 좋으면 계약을 못하고 짝리잖아요....학생들은 코치님들이 계약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중학교, 남자, 야구)

“선배들은 주로 숙소에서.....심할 때는 그 충전기 선이랑...뭐 그런 걸로 감아서 팔이나 가슴이나 때리고.....딱 티가 나면(구타의 흔적) 뭐 위에 긴 팔 입으라고 하기도 하고...”

(중학교, 남자, 양궁)

신체폭력 장소(중복응답)

		사례수	운동 연습하는 곳(운동장 혹은 체육관)	합숙소 또는 기숙사	기타	운동부실(체육실, 지도자실)	시합하는 경기장
중학교		3,311	1,882(46.5)	1,183(29.2)	405(10.0)	395(9.8)	184(4.5)
성별	여자	691	564(69.5)	71(8.7)	64(7.9)	69(8.5)	44(5.4)
	남자	2,620	1,318(40.7)	1,112(34.4)	341(10.5)	326(10.1)	140(4.3)
고등학생		2,844	1,526(42.8)	1,236(34.6)	338(9.5)	318(8.9)	151(4.2)
성별	여자	567	427(61.9)	95(13.8)	74(10.7)	54(7.8)	40(5.8)
	남자	2,277	1,099(38.2)	1,141(39.6)	264(9.2)	264(9.2)	111(3.9)

- 가해자의 차이가 장소에 반영
 - 남자: 선배선수 → 합숙소 (서열화가 더 심각)
 - 여자: 코치 → 운동장 또는 체육관

신체폭력 경험 시 감정

		사례수	운동하기 싫어짐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함	무섭고 화가남	운동을 그만두고 싶어짐	자존감이 낮아짐	기타
중학생		3,311	999(30.2)	707(21.4)	496(15.0)	432(13.0)	353(10.7)	324(9.8)
성별	여자	691	240(34.7)	134(19.4)	61(8.8)	135(19.5)	69(10.0)	52(7.5)
	남자	2,620	759(29.0)	573(21.9)	435(16.6)	297(11.3)	284(10.8)	272(10.4)
고등학생		2,844	1,095(38.5)	459(16.1)	337(11.8)	372(13.1)	280(9.8)	301(10.6)
성별	여자	567	220(38.8)	95(16.8)	46(8.1)	86(15.2)	65(11.5)	55(9.7)
	남자	2,277	875(38.4)	364(16.0)	291(12.8)	286(12.6)	215(9.4)	246(10.8)

- 폭력의 내면화
 -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함 (중 21.4 / 고 16.1)
- 중도탈락 관련
 - 운동하기 싫어짐+운동을 그만두고 싶어짐 (중 43.2 / 고 51.6)

62

신체폭력을 경험한 이유

		사례수	가해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서	훈련을 게을리 해서	이유를 잘 모르겠음	가해자의 기분이 좋지 않아서	기타	정신력이 헤이해졌다는 이유로	규칙을 위반해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해서	가해자에 게 짝해서
■전체■		3,311	608(18.4)	520(15.7)	442(13.3)	413(12.5)	363(11.0)	360(10.9)	276(8.3)	200(6.0)	129(3.9)
성별	여자	691	147(21.3)	166(24.0)	60(8.7)	47(6.8)	75(10.9)	86(12.4)	22(3.2)	71(10.3)	17(2.5)
	남자	2,620	461(17.6)	354(13.5)	382(14.6)	366(14.0)	288(11.0)	274(10.5)	254(9.7)	129(4.9)	112(4.3)
■전체■		2,844	483(17.0)	327(11.5)	440(15.5)	421(14.8)	267(9.4)	375(13.2)	281(9.9)	151(5.3)	99(3.5)
성별	여자	567	91(16.0)	103(18.2)	52(9.2)	50(8.8)	61(10.8)	110(19.4)	39(6.9)	51(9.0)	10(1.8)
	남자	2,277	392(17.2)	224(9.8)	388(17.0)	371(16.3)	206(9.0)	265(11.6)	242(10.6)	100(4.4)	89(3.9)

- 피해의 내면화 경향*
 - (중) 59.3(여 71.2, 남 56.2)
 - (고) 56.9(여 69.5, 남 53.6)
- * 가해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서, 훈련을 게을리해서, 정신력 헤이해졌다는 이유로, 규칙을 위반해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해서

63

“코치님이 때릴꺼면.....타당한 것이면.....주장에게 허락해서 주장이 가서 몇 대 지정해서 때리는 식...”

(고등학교, 남자, 축구)

“자기가 원하고 꿈이 있으면...스스로 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누가 옆에서 그렇게(폭력)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중학교, 여자, 펜싱)

기타: 부모의 서열과 차별

왕따의 조건

“선도적인 애들이 있어요. 축구부 중에 막 자기가 뭐 된 것 같고, 돈 많고, 축구 잘하고.....그런 애들 쪽으로 다 붙어야 해요. 웬만하면.....그런 애들에게 못 붙으면 왕따 당하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우리 엄마(경제적으로 가난한)가 주는 음료수를 받아마자 (코치님이)쓰레기통에 집어 던졌어요.....학부모와 코치님들과 불륜도 있었고...”

(고등학교, 남자, 축구)

충성맹세

“제 동기가 운동이 힘들어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쳤는데, 아버지가 잡아 왔거든요.....그 자리에서 모두가 있는 곳에서 그 친구 아버지가 제 동기를 폭행하시더라고요. 다 보고 있는데 막 주먹으로 때리고.....감독님도 말렸는데...결국 감독실 가서도 또 맞더라고요.”

(중학교, 남자, 야구)

삭발과 핸드폰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삭발시키는 행위를 해결해주세요. 학교 내 규정을 위반한 학생선수는 삭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시합전이라던지 연대책임이라던지 되도 않는 핑계로 잘못하지 않는 학생 모두를 삭발 시키려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고3, 야구, 남)

핸드폰을 뺀 행위는 21세기에서 없어야 하는 인권침해입니다. 특히 지금 핸드폰은 2달째 뺀고 있습니다. 저희도 불편하지만 부모님들도 많이 걱정하시고 불편해하십니다.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1, 야구, 남)

신체폭력 피해시 대처

	사례수	아무런 행동을 못함	괜찮은 척 웃거나 그냥 넘어감	얼굴을 찡그리는 등 소심하게 불만을 표시함	기타	싫다고 분명히 말하고 하지 말라고 요구함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함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고 자리를 떠남	
중학생	3,311	1,558(47.1)	599(18.1)	443(13.4)	413(12.5)	177(5.3)	70(2.1)	51(1.5)	
성별	여자	691	353(51.1)	120(17.4)	103(14.9)	91(13.2)	18(2.6)	3(0.4)	3(0.4)
	남자	2,620	1,205(46.0)	479(18.3)	340(13.0)	322(12.3)	159(6.1)	67(2.6)	48(1.8)
고등학생	2,844	1,257(44.2)	618(21.7)	423(14.9)	327(11.5)	124(4.4)	60(2.1)	35(1.2)	
성별	여자	567	274(48.3)	102(18.0)	86(15.2)	81(14.3)	10(1.8)	12(2.1)	2(0.4)
	남자	2,277	983(43.2)	516(22.7)	337(14.8)	246(10.8)	114(5.0)	48(2.1)	33(1.4)

• 피해 시 대처 : 소극적 대처를 넘어 무력감이 드는 상황

– 소극적 대처* : (중) 78.6, (고) 80.8

* 아무런 행동을 못함, 괜찮은 척 웃거나 그냥 넘어감, 얼굴을 찡그리는 등 소심하게 불만을 표시함 등

“동네친구들이 있는데.....그냥 그 친구들은 운동을 안하니까 이런쪽으로 말해봤자 잘 이해도 못하고.....애초에 말을 잘 안하죠.”

“(일이 생겨도) 뭐 신고하라고 이야기는 해줄 수 있어도 나서서 신고는 못 해줄 것 같아요.....그러면 그 코치뿐만 아니라 이 얼음바닥...이 바닥에서 제가 저 코치를 신고했다더라...이런 이야기도 돌고.....이런 경우에도 괜히 이슈가 많은 선수보다는 없는 선수를 뽑지 않겠냐는 게 저의 생각이예요.

(고등학교, 남자, 병상)

신체 폭력 시 도움 요청 대상(중복응답)

		사례수	가족	지도자 (감독,코치)	동료 운동 선수	친구	학교 선생님	기타	체육 단체	상담원	경찰 등 수사 기관
중학생		155	84(30.4)	47(17.0)	46(16.7)	39(14.1)	23(8.3)	13(4.7)	11(4.0)	10(3.6)	3(1.1)
성별	여자	14	9(36.0)	3(12.0)	6(24.0)	4(16.0)	1(4.0)	2(8.0)	0(0.0)	0(0.0)	0(0.0)
	남자	141	75(29.9)	44(17.5)	40(15.9)	35(13.9)	22(8.8)	11(4.4)	11(4.4)	10(4.0)	3(1.2)
고등학생		123	61(29.9)	31(15.2)	39(19.1)	36(17.6)	12(5.9)	11(5.4)	4(2.0)	8(3.9)	2(1.0)
성별	여자	21	14(38.9)	5(13.9)	7(19.4)	6(16.7)	3(8.3)	1(2.8)	0(0.0)	0(0.0)	0(0.0)
	남자	102	47(28.0)	26(15.5)	32(19.0)	30(17.9)	9(5.4)	10(6.0)	4(2.4)	8(4.8)	2(1.2)

- 피해 시 도움 요청 대상
 - 상담 및 신고 관련 독립, 신뢰, 전문 기관 확보 필수
 - 여학생의 경우 체육단체, 상담원, 경찰 등 수사기관은 단 한 건도 없음

“힘든 것 다 털어놓을 수 있고.....아무리 다 털어놓는다고 해도 각자 비밀은 하나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이야기 할 수 있는 동료...진짜 이 친구들 없이는 아무 것도 못해내죠..”

(고등학교, 남자, 축구)

“뭐 어차피 상담센터 가서 운동부인데 뭐 맞았다 이런 얘기하면 또 그 운동부 가서 얘기해서 코치 쌤한테 들릴 수도 있고.....그래서 이용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여자, 펜싱)

신체폭력 시 도움 요청 결과(중복)

		사례수	가해자의 사과	폭력행위의 중단	상담으로 종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	기타	가해자의 징계 또는 형사 처벌
중학생		155	58(29.6)	39(19.9)	35(17.9)	29(14.8)	21(10.7)	14(7.1)
성별	여자	14	2(12.5)	2(12.5)	4(25.0)	3(18.8)	5(31.3)	0(0.0)
	남자	141	56(31.1)	37(20.6)	31(17.2)	26(14.4)	16(8.9)	14(7.8)
고등학생		123	42(27.3)	27(17.5)	31(20.1)	28(18.2)	18(11.7)	8(5.2)
성별	여자	21	8(33.3)	3(12.5)	2(8.3)	5(20.8)	6(25.0)	0(0.0)
	남자	102	34(26.2)	24(18.5)	29(22.3)	23(17.7)	12(9.2)	8(6.2)

• 피해 시 도움 요청 결과

- 전문적 행정, 사법 체계가 적절히 운용되지 못함
- 여학생은 상담으로 종결되는 사례(중 25.0), 가해자 사과(고 33.3)등이 가장 많았으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중 18.8, 고 20.8), 가해자의 징계 또는 형사처벌은 한 건도 없음
- 여학생의 기타(중 31.3, 고 25.0): 교내의 조치, 혹은 역효과 관련 추정

내부의 회유

“부모님들이 그냥 참아라. 3학년들 형들 낀 해봤자 1년 남았고.....너도 후배들한테 그럴 수 있고.....너가 멍들고 뼈 부러지고 그런 거 아니면 좀 참아라.”
(고등학교, 남자, 축구)

피해 시 대처 이유

	사례수	행위정도가 심각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서	기타	보복이 무서워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신체폭력을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분위기가 어색해질까 봐	상대방이 불이익을 줄까 걱정되어서	상대방과 결투러워지는 것이 싫어서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비난이나 왕따가 걱정되어서	
중학생	3,311	573(17.3)	557(16.8)	514(15.5)	456(13.8)	426(12.9)	297(9.0)	208(6.3)	182(5.5)	62(1.9)	36(1.1)	
성별	여자	691	122(17.7)	121(17.5)	85(12.3)	126(18.2)	71(10.3)	56(8.1)	39(5.6)	50(7.2)	12(1.7)	9(1.3)
	남자	2,620	451(17.2)	436(16.6)	429(16.4)	330(12.6)	355(13.5)	241(9.2)	169(6.5)	132(5.0)	50(1.9)	27(1.0)
고등학생	2,844	469(16.5)	489(17.2)	422(14.8)	345(12.1)	292(10.3)	256(9.0)	270(9.5)	241(8.5)	35(1.2)	25(0.9)	
성별	여자	567	97(17.1)	119(21.0)	65(11.5)	102(18.0)	43(7.6)	46(8.1)	36(6.3)	51(9.0)	6(1.1)	2(0.4)
	남자	2,277	372(16.3)	370(16.2)	357(15.7)	243(10.7)	249(10.9)	210(9.2)	234(10.3)	190(8.3)	29(1.3)	23(1.0)

- 대응 상의 문제
 -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 여자(중 18.2, 고 18.0)가 남자(중 12.6, 고 10.7)에 비해 높음
 - 보복이 무서워서의 비율
 - 남자(중 16.4, 고 15.7)는 여자(중 12.3, 고 11.5)에 비해 높음
 - 기타(중 16.8, 고 17.2)에 대한 심층연구 필요

“폭력에 대한 대처요? 실천해 본 적 없어요.....일이 커질까봐...괜히 또 그랬다가 우리 운동부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말해봤자...”
 (중학교, 남자, 양궁)

신체폭력에 대한 인식

	중학생	고등학교
	【그렇다】	【그렇다】
나는 내가 당한 신체폭력을 따라 하게 되는 것 같다	584(2.7)	455(2.6)
경기 성적을 위해서는 신체 폭력이 필요하다	468(2.1)	509(2.9)
운동부 팀워크를 위해서 신체 폭력이 필요하다	263(1.2)	333(1.9)
운동부 내의 신체 폭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1,913(8.7)	1,421(8.1)
운동부 내의 신체 폭력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6,032(27.5)	5,710(32.4)
(중복)합계	9,260명	8,428명

- 폭력의 대물림
 - 개인은 가해자임을 부정 + 폭력의 정당성 발견
 - 스스로 스포츠에서 폭력은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인식한 결과
- 심각성 - 개선 요구
 - 심각성은 낮고, 개선요구는 높은 상황(개인적 둔감성과 목격 경험의 차이)
- 종목별 편차
 - 종목별로 구시대적 훈련문화 답습 정도의 차이 존재

필요악으로서의 폭력

“운동 할 때는 그래도 무섭게 해야 애들이 딱 굳기 잡혀가지고 이제 말도 잘 들을 것 같은데 너무 부드럽게 대해 주시면 좀 운동이.....”

“이제 계속 밑에 학년들이 들어오니까 아 선생님이 지금 이런 상황에 화가 나셨구나 ...상황을 잘 넘기자 이렇게...”

(중학생, 남자, 수영)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좀 때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그런 게 없으면...(성적내기가 힘들죠)”

(고등학교, 남자, 야구)

“선배가 그랬듯이 저희도 가면 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고.....선배들도 이렇게 했으니까 저희도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폭력행사) 그렇게.....운동하는 사람들은 처 맞아야지 정신을 차립니다.”

(중학교, 남자, 양궁)

76

조사결과

중, 고등학교 전수조사_성폭력

77

성폭력 1

성폭력 문항	중학교	고등학교
나에게 운동 중 불쾌할 정도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	298(1.4)	177(1.0)
자신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게 하거나 팔베개, 마사지, 주무르기 등을 시키는 행위	410(1.9)	344(2.0)
나의 특정 신체부위 (가슴, 엉덩이)의 크기나 모양, 몸매, 외모 등에 대한 성적 농담을 하는 행위	559(2.5)	316(1.8)
나에게 듣고 싶지 않은 음담패설, 성적인 비유, 성행위를 언급하는 행위	241(1.1)	127(0.7)
나의 특정 신체부위를 훑어지게 쳐다보는 행위	109(0.5)	76(0.4)
나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그림, 영상물을 직접 보여 주거나 문자, 카톡, SNS 등을 통해 보내는 행위	57(0.3)	38(0.2)
내가 보는 앞에서 원하지 않음에도 자신의 신체 부위(성기, 가슴 등)를 보여 주는 행위	62(0.3)	32(0.2)
(중복) 합계	1,736	1,110

- 주요 가해자
 - (남) 동성 선배, 코치, 또래, (여) 동성 또래, 선배, 이성 코치 등
- 장소
 - (남) 숙소, (여) 훈련장(체육관이나 운동장 등)

78

불편한 시선과 행동

“제가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가 된 기분이에요...찍는 분들도 계시고, 학생이지만 오~ 이러는데... 좋죠, 그런데 그런 반응은 신경이 많이 쓰여서 운동에 집중이 안 되죠 솔직히...”

(중학생, 여자, 체조)

“대부분은 수영복을 입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슴 봐’, ‘허벅지 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중학생, 여자, 수영)

“저 2학년 때 법이 바뀌면서 통학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부원들끼리 해서 근처 오피스텔을 구해서 저희들끼리 생활했는데 개랑 같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요즘 선배들은 많이 안그러는데 의외로 친구들이 많이 성희롱 하고...”

(고등학생, 남자, 유도)

79

성폭력 2

문항	중학교	고등학교	특징
누군가 자신의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를 강제로 만지라고 강요	42(0.2)	22(0.1)	(남) 동성 선배나 또래 (여) 동성 또래
누군가 나의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 등을 강제로 만졌음	131(0.6)	75(0.4)	(남) 선배선수 남, 또래선수 남, 코치 남 (여) 동성 선배, 남 코치, 여 또래, 기타
누군가 내게 강제로 키스나, 포옹, 애무를 하였음	45(0.2)	18(0.1)	(남) 주로 동성, (여) 이성 선배, 지도자
누군가 나의 신체부위를 몰래 또는 강제로 촬영하였음	76(0.3)	61(0.3)	(남) 동성 또래, 선배, 코치 순 (여) 이성 또래, 이성 선배 등
(중복) 합계	294	176	

- 피해장소
 - (남) 숙소, (여) 훈련장
 - 합숙경험 있는 경우가 더 높은 피해
 - 가해자에 '기타' 답변이 다소 나타남

80

불편한 행동

“옛날에는 운동부면 코치님들이 장난식으로 (성희롱) 많잖아요 그런 거.. 감독님이 딱 그 나이 드셔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는데 도복 매고 준비상태로 가는데 애들 불알 만지고... 제 낀 딱밤으로 때리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귀여워하는 후배가 있고 이러면 뽀뽀해요.”

“어떤 선배가 진동 칫솔 있죠, 그런 거 다 쓴 거 자기 젓꼭지에 대고 ‘앙’ 이러면...”

(중학교, 남자, 유도A, B)

81

가해자의 적절한 처벌?

“중학교 2학년 때 운동을 다시 시작했고, 고1 때 도장 사범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다른 도장으로 이전하고, 지금은 아무런 문제없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성추행, 성폭력 예방을 위해 도장에 CCTV 설치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약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 도장은 다시 운영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3, 태권도, 여)

82

여성 선수로서의 어려움

“다른 학교 애들이 잡는데 비슷한 또래 남자애들도 잡아야... 굳히기라는 옆드려서 조르기, 꺾기 이렇게 하는데 개네가 저희가 쪼그려있으면 안쪽으로 깃을 넣거든요? 거기서 고의적으로 건들고...”

“감독님이 연세가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여자를 가르치시는데 항상 일부러 터치를 세계 하시는 거 같아요. 도복을 일부러 세계 잡아서 속옷까지도 잡는다는 거 만지면서 잡는다는 거.”

(고등학교, 여자, 유도A)

“요즘 저희 나이대면 다 한번씩 성관계 하잖아요. 어떤 선배는 한 번씩 와서 자랑스럽게 ‘나 누구랑 했어’ 이런 식으로.. 낮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고”

옆드려서 하는 굳히기 있잖아요. 그 동작 따라할 때, 코치님이 직접 알려 주셔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손을 넣어서 잡고 돌리라 하는데, 보는 사람도 수치인데, 남자 코치님이니까...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서 바짓가랑이를 잡고 손을 넣어서 가슴 깃도 잡는데, 남자 코치님이면 수치스럽잖아요.” (고등학교, 여자, 유도B)

83

성폭력 3_성관계 요구

		사례수	있다	없다
중학생		21,952	9(0.0)	21,943(100.0)
성별	여자	4,790	3(0.1)	4,787(99.9)
	남자	17,162	6(0.0)	17,156(100.0)
고등학생		17,598	9(0.1)	17,589(99.9)
성별	여자	3,756	4(0.1)	3,752(99.9)
	남자	13,842	5(0.0)	13,837(100.0)

합계 18명

- (남) 운동부 소속, 합숙경험 등에서 높은 피해보고
- 초등학생 시기 피해 보고
 - 조기 인권교육 필요성 제기

84

성폭력 3_성관계 요구(중복)

누가	사례수	기타	또래선수 남	코치 남	감독 남	선배선수 남	체육 단체 임직원 남
중학생	9	4(28.6)	3(21.4)	2(14.3)	2(14.3)	2(14.3)	1(7.1)
성별	여자	3	2(66.7)	1(33.3)	0(0.0)	0(0.0)	0(0.0)
	남자	6	2(18.2)	2(18.2)	2(18.2)	2(18.2)	1(9.1)
고등학생	9	1(8.3)	3(25.0)	4(33.3)	1(8.3)	3(25.0)	0(0.0)
성별	여자	4	0(0.0)	1(25.0)	1(25.0)	0(0.0)	2(50.0)
	남자	5	1(12.5)	2(25.0)	3(37.5)	1(12.5)	0(0.0)

어디서	사례수	숙소	기타	훈련장 또는 경기장	라커룸(샤워장)	가해자의 집(방)
중학생	9	4(40.0)	4(40.0)	2(20.0)	0(0.0)	0(0.0)
성별	여자	3	1(33.3)	2(66.7)	0(0.0)	0(0.0)
	남자	6	3(42.9)	2(28.6)	2(28.6)	0(0.0)
고등학생	9	6(40.0)	4(26.7)	2(13.3)	2(13.3)	1(6.7)
성별	여자	4	2(40.0)	3(60.0)	0(0.0)	0(0.0)
	남자	5	4(40.0)	1(10.0)	2(20.0)	2(20.0)

“저희는 도복훈련을 하면 타이즈만 입고 도복을 입기 때문에 풀어헤치면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땐 와가지고 남자들이 한 번씩 하자 해요. 하다 보면 운동에 집중해야 하는데 여기(가슴)를 보고 하는 거예요. 후배들이 운동 끝나고 ‘누나 B컵이에요?’ 이런 식으로 묻더라고요..”

(고등학교, 여자, 유도C)

“좀 지금이 더 예민한 편이죠. 어렸을 때 동계훈련이나 하계훈련 전지훈련 나가잖아요. 그 때 초중고 때도 한 번씩 그게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여자, 유도B)

성폭력 4_누군가 나를 강간하였음

		사례수	있다	없다
중학생		21,952	5(0.0)	21,947(100.0)
성별	여자	4,790	2(0.0)	4,788(100.0)
	남자	17,162	3(0.0)	17,159(100.0)
고등학생		17,598	1(0.0)	17,597(100.0)
성별	여자	3,756	0(0.0)	3,756(100.0)
	남자	13,842	1(0.0)	13,841(100.0)

합계 6명

- (운동부 소속여부): 운동부 소속 (4), 개별활동 (2)
- (합숙경험) 있다(5), 없다(1)
- (가해자)
 - (여) 남자 코치, 여자 선배선수
 - (남) 남 코치, 남 포래선수, 남 감독, 남 선배선수, 체육단체임직원, 기타
- (피해시기) 초, 중, 고 모두 나타남
- (피해장소) 경기장 또는 훈련장, 숙소, 가해자의 집(방) 등

성폭력 경험 시 감정

감정		사례수	기타	운동하기 싫어짐	자존감이 낮아짐	무섭고 화가남	운동을 그만두고 싶어짐	극단적 생각(자해, 자살 등)
중학생		1,071	295(27.5)	259(24.2)	190(17.7)	178(16.6)	140(13.1)	9(0.8)
성별	여자	280	68(24.3)	60(21.4)	57(20.4)	40(14.3)	52(18.6)	3(1.1)
	남자	791	227(28.7)	199(25.2)	133(16.8)	138(17.4)	88(11.1)	6(0.8)
고등학생		703	199(28.3)	174(24.8)	109(15.5)	113(16.1)	97(13.8)	11(1.6)
성별	여자	210	50(23.8)	52(24.8)	32(15.2)	42(20.0)	28(13.3)	6(2.9)
	남자	493	149(30.2)	122(24.7)	77(15.6)	71(14.4)	69(14.0)	5(1.0)

- ‘기타’의 파악
 - (중) 27.5%, (고) 28.3%
- 극단적 생각: (중) 9명, (고) 11명
 - 실효성 있는 심리정서적 지원 체계 마련 필요

88

성폭력 경험 시 대처

대처		사례수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함	기타	괜찮은 척 함	싫다고 분명히 말하고 하지 말라고 요구함	얼굴을 찡그리거나 하지 말라고 하며 싫은 내색을 함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고 사과를 요구함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함
중학생		1,071	223(20.8)	221(20.6)	200(18.7)	189(17.6)	137(12.8)	59(5.5)	42(3.9)
성별	여자	280	71(25.4)	47(16.8)	62(22.1)	42(15.0)	42(15.0)	11(3.9)	5(1.8)
	남자	791	152(19.2)	174(22.0)	138(17.4)	147(18.6)	95(12.0)	48(6.1)	37(4.7)
■ 전체 ■		703	137(19.5)	149(21.2)	158(22.5)	104(14.8)	96(13.7)	37(5.3)	22(3.1)
성별	여자	210	45(21.4)	34(16.2)	56(26.7)	30(14.3)	29(13.8)	7(3.3)	9(4.3)
	남자	493	92(18.7)	115(23.3)	102(20.7)	4(15.0)	67(13.6)	30(6.1)	13(2.6)

- 소극적 대처: (중) 52.3%, (고) 55.7%
 - 아무런 대처를 못함, 괜찮은척 함, 얼굴을 찡그리거나 싫은 내색을 함
 - 중, 고 모두 여학생의 소극적 대처가 크게 높음
- ‘기타’ 의견에 대한 분석 필요

89

“저는 웬만하면 그렇게 일을 크게 내고 싶지 않으니깐. 크게 내면 유도 부 없어진다 그러니까. 내 선에서 딱 끝내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남자, 유도)

성폭력 경험 시 도움 요청 대상(중복응답)

도움요청 대상	사례 수	가족	지도자 (감독, 코치)	친구	학교선 생님	동료 운동 선수	상담원	경찰 등 수사 기관	기타	체육 단체	
중학생	75	37(28.9)	28(21.9)	16(12.5)	14(10.9)	13(10.2)	6(4.7)	6(4.7)	6(4.7)	2(1.6)	
성별	여자	14	8(30.8)	6(23.1)	6(23.1)	2(7.7)	1(3.8)	1(3.8)	2(7.7)	0(0.0)	0(0.0)
	남자	61	29(28.4)	22(21.6)	10(9.8)	12(11.8)	12(11.8)	5(4.9)	4(3.9)	6(5.9)	2(2.0)
고등학생	47	20(18.0)	19(17.1)	12(10.8)	14(12.6)	18(16.2)	7(6.3)	9(8.1)	4(3.6)	8(7.2)	
성별	여자	15	9(23.1)	7(17.9)	6(15.4)	3(7.7)	9(23.1)	2(5.1)	2(5.1)	0(0.0)	1(2.6)
	남자	32	11(15.3)	12(16.7)	6(8.3)	11(15.3)	9(12.5)	5(6.9)	7(9.7)	4(5.6)	7(9.7)

- 젠더 특성
 - 여성: 가족 및 친구 의존도 높음, 학교선생님 낮음
 - 상담원, 경찰 등 수사기관, 체육단체 불신
 - 내부 해결을 선호, 이유는 운동지속과 관련 → 폐쇄성 이유
 - 지도자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동료선수에 의한 피해에 국한

성폭력 경험 시 도움 요청 결과(중복)

도움 요청 결과	사례 수	가해자의 사과	폭력 행위의 중단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	상담으로 종결	가해자의 징계 또는 형사 처벌	기타	
중학교	75	28(28.6)	24(24.5)	21(21.4)	12(12.2)	7(7.1)	6(6.1)	
성별	여자	14	4(23.5)	6(35.3)	4(23.5)	2(11.8)	1(5.9)	0(0.0)
	남자	61	24(29.6)	18(22.2)	17(21.0)	10(12.3)	6(7.4)	6(7.4)
고등학생	47	17(27.9)	9(14.8)	7(11.5)	15(24.6)	9(14.8)	4(6.6)	
성별	여자	15	5(25.0)	3(15.0)	4(20.0)	3(15.0)	4(20.0)	1(5.0)
	남자	32	12(29.3)	6(14.6)	3(7.3)	12(29.3)	5(12.2)	3(7.3)

- 불신과 위축
 -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중 21.4, 고 11.5), 가해자의 징계 등(중 7.1, 고 14.8)
 - 상담으로 종결(고등학교 남자 29.3)
- 중재 가능성(가해자의 사과)
 - 중, 고 남자가 중재 높은 편(중 29.6, 고 29.3)

92

성폭력 경험 시 대처 이유

피해시 대처 이유	사례수	기타	성폭력을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보복이 무서워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행위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분위기가 어색해 질까 봐서	상대방과 결끄러워지는 것이 싫어서	상대방이 불이익을 줄까 걱정되어서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비난이나 왕따가 걱정되어서	
중학생	1,071	256(23.9)	194(18.1)	142(13.3)	117(10.9)	112(10.5)	75(7.0)	58(5.4)	46(4.3)	45(4.2)	26(2.4)	
성별	여자	280	58(20.7)	42(15.0)	32(11.4)	40(14.3)	32(11.4)	22(7.9)	23(8.2)	10(3.6)	11(3.9)	10(3.6)
	남자	791	198(25.0)	152(19.2)	110(13.0)	77(9.7)	80(10.1)	53(6.7)	35(4.4)	36(4.6)	34(4.3)	16(2.0)
고등학생	703	180(25.6)	109(15.5)	79(11.2)	64(9.1)	82(11.7)	61(8.7)	61(8.7)	36(5.1)	22(3.1)	9(1.3)	
성별	여자	210	41(19.5)	34(16.2)	18(8.6)	31(14.8)	22(10.5)	20(9.5)	25(11.9)	6(2.9)	8(3.8)	5(2.4)
	남자	493	139(28.2)	75(15.2)	61(12.4)	33(6.7)	60(12.2)	41(8.3)	36(7.3)	30(6.1)	14(2.8)	4(0.8)

- ‘기타’의 감정
 - 가장 높은 빈도 ‘기타’에 대한 이해 필요
- 소극적 대처
 - (여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남자) 보복이 두려워서
 - 집단 내 관계에 대한 인식(폐쇄성)이 걸림돌

93

성폭력에 대한 인식

	중학생 【그렇다】	고등학생 【그렇다】
나는 내가 당한 성폭력을 따라 하게 되는 것 같다	94(0.4)	59(0.3)
운동부 내의 성폭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1,634(7.4)	1,093(6.2)
운동부 내의 성폭력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527(25.2)	5,213(29.6)

-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
 - 직접 피해보다 급격히 증가
-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에 비해 개선 요구는 폭발적 증가
 - (중) 5,527명(25.2), (고) 5,213명(29.6)
 - 성폭력이 암수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지속적 관찰과 지원 필요

94

보거나 들은 경험: 성폭력(고)

성폭력 문항	있다(경험)	있다(간접경험)
누군가 나에게 듣고 싶지 않은 음담패설, 성적인 비유, 성행위를 언급하는 행위	127(0.7)	202(1.1)
누군가 나의 특정 신체부위를 훑어지게 쳐다보는 행위	76(0.4)	79(0.4)
누군가 나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그림, 영상물을 직접 보여 주거나 문자, 카톡, SNS 등을 통해 보내는 행위	38(0.2)	29(0.2)
강제 키스, 포옹, 애무	18(0.1)	24(0.1)
강제 성행위	1명(남 1)	6명(여 2, 남 4)

- 강제 성행위 간접 경험
 - 가해자: 코치(3, 37.5%), 선배 선수(2, 25%), 감독(2, 25%), 모른다(1, 12.5%) 순

95

개선방안

96

왜 ‘改革’이 아니라 ‘革新’인가?

- 심각성 기준의 변화
 -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이해 변화(단, 한 건도 불허 원칙)
 - 아동인권 관점의 증진 및 적용
- 같은 대책 반복 - 실천의 문제 강조
 - 그간의 좋은 대책들이 무력화
- 인적 쇄신 실패 - 목표 관련 방어적 태도 일관
 - ‘승리=성과’, ‘스포츠는 집단간 총량의 경쟁’이라는 인식
- 자정 능력 상실 - 외부의 개입 필수
 - 자정의 범위에서 인권문제는 독립필수
 - 전문성, 신뢰성, 독립성이 모두 충족된 인권보호기관의 설립
 - 체육계 관련 규정 적용 및 운영에 대한 감사업무 강화
- 특기자 제도 개편 - 문제해결의 전제 자체의 변화
 - ‘학생선수’에 대한 전면 재정의 및 경쟁중심 패러다임의 변화
 - 서열화, 권력화 방지가 핵심

97

관점

- 아동 인권의 관점 강화
 - 스포츠분야 아동 폭력, 성폭력 관련 보호체계의 전문화 필요
 - 언어폭력에 대한 이해 증진
 - 성폭력에서 동성간 피해(남성)
 - 여학생 - 코치(훈련장), 남학생-선배(숙소)
 - 서열화 - 권력화 → 동료의식 강화를 위한 재정의와 교육
 - 학부모 및 동료에 대한 인권감수성 강화 교육
 - 학생-학부모-지도자-행정가 통합 워크숍 프로그램
 - 폭력의 내면화 → 개선조치

98

제도

- 체육특기자 제도 개혁 논의 본격화
 - 전부에서 부분으로...
 - 체육특기자 입시제도에서 학업 반영비율 상향
 - 학생권리의 회복 → '섬'문화의 해체
 - 운동부 별 합숙 금지 - 일반학생들과 함께 기숙
 - 학교 간 경쟁은 '축제'로 전환

99

예방

-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
 - 운동부 패러다임에 대한 구조적 변화 모색
- 훈련시간 제한
 - 학습권 박탈의 주요 원인은 '과잉훈련', 적정 훈련시간 설정 필요
 - 1일 훈련시간, 주중 훈련일수, 연중 합숙일수, 연중 대회 참가 횟수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현장적용
- 합숙소 폐지 기조 및 정책 강화
 - 중학교 완전폐지, 고교 단계 조정
 -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개정, 교육부 교육(지원)청 관리감독 강화
- 아동인권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피해는 초등학교부터 발생, 이후 폭력의 내면화 강화
 - 성인지도자 및 선수 중심의 인권교육 패러다임은 전면 재수정 필요

100

보호조치

- 피해자 지원체계
 - 기존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신뢰와 활용 문제 제기
 - 실질적인 지원 모델 구축
- 스포츠 사교육 시장 모니터링 필요
 - 학교 내 운동부가 아닌 외부 사설 강습 증가
 - 지도자 검증 및 장소 안전성 등 담보 안됨
 - 개별 활동 선수 실태조사 필요
- 교외 개별활동 선수 보호조치 강구
 - 지도자 자격 검증제도 재검토(범죄경력 조회 포함)
 - 시설 안정성 확보 방안 모색

101

기타

-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정례화 필요
 - 사각지대 제거
 -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정례화에도 운동부는 사각
 - 지표의 관리
 - 전수조사 정례화로 정책의 효과 검증 및 관리
 - 예방효과
 - 전수조사는 그 자체로 예방 및 점검 효과
 - 대상의 다각화
 -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 대상으로 확대
 -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한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 세부조사항목에 대한 연구와 적용

102

감사합니다!

103



【학생선수 인권의 현주소】

인권실태 전수조사와 스포츠분야 (성)폭력 판례분석 결과 발표 토론회

[패널 토의]

학교스포츠는 진보할 것인가, 반복할 것인가

류태호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학교스포츠는 진보할 것인가, 반복할 것인가

류태호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I. 기대와 우려와 아픔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생선수 학습권, 폭력, 성폭력과 관련된 실태조사 결과를 기다려 왔다.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한 중도탈락 학생선수와 대학교 학생선수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경험이 있는 나는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발표의 토론자로 부탁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밀려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도 이전의 실태조사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실태 보고서 서론은 국가 주도 체육 정책의 목적, 성과와 효과, 폐해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 및 단체의 노력을 시기별로 구분한 후, 스포츠인권과 관련된 대한변호사협회의 진단, 헌법과 국제협약, 인권 관계 기관의 문건, 국내법 등을 정리 분석하였다. 관련 문헌의 분석 결과와 전문가들의 의견 등이 충실히 반영되어 조사의 필요성이 잘 정리 되었다고 본다. “공허한 노력과 대책들에 대한 반성과 혁신의 필요성”으로 명료화한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실태조사 결과가 실질적인 노력과 치열한 반성에 기반하여 혁신을 제안한 것으로 기대했다.

실태조사 방법의 구체성과 실사 과정의 어려움을 치하하고 싶다. 전수조사의 방대함, 설문지 구성의 세밀함, 양적 조사와 질적 연구를 혼합한 조사방법의 체계적 접근 등은 그동안 다양한 인권조사의 경험과 노하우가 느껴졌다.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이론적 틀과 분석방법 그리고 자료의 진실성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다양한 방식의 활용 등은

통계수치의 의미화 작업과 질적 자료의 맥락화로 전형적인 실태조사의 방식보다 진일보한 방식이었다.

실태조사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기초조사와 학교 급별 세부조사 내용으로 기술되었다. 기초조사의 결과를 보면서 기존의 실태조사 결과를 떠올렸다. 학습권과 관련된 결과를 보면서 평균 운동시간이 과거에 비해 적어졌지만 여전히 과잉 운동시간임을 확인했다. 수업참여의 비율도 학습권 보장과는 거리가 있다. 학습과 운동의 병행을 전제할 때 학생선수의 하루 일상은 건강권을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 주말과 휴일에도 운동하는 학생이 70-80%에 이른다. 이들에게 학생으로, 인간으로의 일상성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폭력과 관련하여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은 10% 중반 정도이다. 학생선수의 수로 계산하면 8,500여명에 이른다. 인권이 궁극적으로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와 구제의 대상을 제로화(0%)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수치이다. 즉, 학생선수는 폭력이 일상화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선수의 비율은 초등 2.7%, 중등 4.9%, 고등 4.0%로 나타났다. 이를 합하면 2,112명의 학생선수가 성폭력(성희롱)의 피해자다. 청소년 시기의 성폭력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이며 인격이 파괴되는 경험이다. 기초조사의 결과만 보아도 학생선수는 비인권적, 반인권적 상황에서 운동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어서 학교 급별 세부내용은 기존의 학습권과 폭력, 성폭력 실태보다 양적으로는 줄어들었지만, 질적으로 방식의 교묘함과 암묵적 강제, 인권 감수성의 무력화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내온 이번 보고서는 이상의 실태조사뿐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문제의 심각성을 어떻게 진단하고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는 받지 못했다. 조사의 필요성에서 언급한 치열한 노력과 혁신의 청사진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II. 오래된 미래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초등학교 학생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7년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발표하였다. 한편 KBS 시사기획 ‘썸’의 『스포츠와 성폭력에 관한 인권보고서 1, 2』는 학생선수와 프로선수들의 인권적 민낯을 온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를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인권 TF’를 구성해 전국단위의 실태조사와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스포츠, 여성, 아동·청소년 관련분야 단체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스포츠 인권정책 포럼을 구성해 관련 정책과 제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2008년 초중고 학생선수들의 폭력, 성폭력, 학습권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학생선수들의 78.8%가 폭력을 경험하였고, 63.3%는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해 큰 충격을 주었다. 이후 2009-2010년 중도탈락 학생선수의 인권실태와 대학 학생선수의 인권실태를 조사하여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정부 부처 및 교육청, 대한체육회에 이를 채택,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와 대책이 발표된 지 11년이 지난 오늘.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KBS 시사기획 썸의 인권보고서 방송을 다시 보는 듯하다. 수업 참여율이 좀 향상되었고, 폭력 및 성폭력의 빈도가 낮아졌지만, 전체적인 양상은 변함이 없다. 바다에 떠 있는 빙산의 모습이 작아졌을 뿐 수면 아래 빙산은 여전히 녹지 않고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11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한체육회 등에서 학생선수의 폭력, 성폭력에 대한 대책과 기관설립, 법과 제도의 제정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역시 공염불이었다. 그렇다면 왜 다시 반복되는가? 문제의식과 진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고 본다. 학생선수의 문제를 구조적, 시스템적으로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체육계 구조와 시스템의 특징은 국가 주도의 통제와 관리, 소수로 제한된 엘리트 운동선수 육성, 영역(학교, 생활, 전문) 간 불균형과 단절로 요약할 수 있다. 특

히 체육조직은 소수의 전문선수에게 물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이들의 운동기능을 효과적(기계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하였으나, 잠재된 풍부한 인적 자원을 원천 봉쇄하고, 선발된 선수들의 장기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한편, 합숙 훈련, 수업결손, 폭력, 성폭력 등으로 인한 행복추구권과 학습권을 박탈하는 풍토를 조성하였다. 이러한 구조와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한 10년 뒤 학생선수의 인권실태도 오늘의 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III. 학교스포츠 구조 개혁을 위한 제안

인간은 스포츠를 통해 한계를 극복하는 도전 의식, 자신의 몸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태도와 실천, 함께 하는 삶을 사는 공동체 정신 함양 등 무제한의 교육적, 사회문화적 가치를 경험하게 된다. 학생들에게 스포츠 경험은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기본 토대를 제공한다. 학생선수는 스포츠를 깊고 넓게 경험한다. 스포츠의 가치가 정상적으로 체화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학교스포츠 구조 개혁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학생선수 육성시스템 혁신에 관한 권고(2차 권고)를 토대로 다음의 네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습권 보장의 중요성을 더욱 민감하게 인식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학교운동부 중심의 엘리트선수 양성시스템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 우리는 한계 상황에 도달한 기존 체제의 기둥을 붙잡고 버티기보다는 학교스포츠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와 이를 위한 혁신적 제도개혁의 길로 나갈 필요가 있다. 학생으로서 학습권은 헌법적 권리이며 책임이다. 공부를 하면 운동을 못하게 되고, 운동을 하면 공부는 당연히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퇴행적 사고와 관행은 시대착오적 통념이다. 학생선수의 학습권(기본소양, 지력, 인성)과 경기력(운동능력 및 잠재력)의 이분법적 논리보다는 운동도 중요한 공부의 일환이며, 학업 역시 학생선수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주중 대회를 전면 금지하고 최저학력제를 강화해야 한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은 국가의 책무이다. 학생선수는 수업 종료 후 훈련을 하고, 학기

중 대회 참가를 금지하며, 학기 중 대회는 주말 대회와 방학 중 대회로 운영하는 제도를 제안한다.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학생선수도 예외일 수 없다. 더불어 최저학력제의 실질적 적용도 필요하다. 현행법상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학교장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대회 출전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최저학력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최저학력에 도달하는 학생만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종합적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진학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현행 경기실적 중심의 체육특기자 진학 시스템을 경기력, 내신 성적, 출결, 면접 등이 반영된 종합적 선발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고교 입시의 경우, 투명한 진학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전 스카우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정한 체육특기자 선발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는 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하고, 경기실적, 내신 성적, 실기 능력 등 종합적인 선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해야 한다. 대학 입시의 경우,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는 종합역량 평가에 기반한 선발 원칙을 확립하고, 학업 성적, 논술, 면접, 경기력 등 전형요소를 다양화해야 한다.

넷째, 학생선수의 (성)폭력 예방 및 구제 대책이 필요하다. 국가주의적, 엘리트주의적 스포츠 정책 및 제도가 본질적 수준의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체 폭력, 성폭력 등 심각하고 광범위한 수준의 인권침해와 차별 문제를 야기해왔다. 체육계는 이를 일부 지도자의 일탈로 치부해왔지만 이는 국가적 스포츠 정책 및 제도로부터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다. 따라서 학교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와 학생선수들이 폭력과 성폭력 문제에 대한 민감성과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스포츠 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징계 요구, 수사 의뢰 등), 스포츠 성폭력 예방을 위한 외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학생선수 인권의 현주소】

인권실태 전수조사와 스포츠분야 (성)폭력 판례분석 결과 발표 토론회

[패널 토의]

학생선수 인권의 현주소 :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차별 없이 운동하기 좋은 세상 꿈꾸기

정혜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학생선수 인권의 현주소 :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차별 없이 운동하기 좋은 세상 꿈꾸기

정혜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2019년 빙상계 성폭력이 폭로된 이후, 성폭력 근절을 외치는 체육계 미투(#MeToo)가 뜨겁다. 체육계 미투(#MeToo)는 스포츠에서도 인권이 지켜져야 진정한 의미의 스포츠 가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체육계 성폭력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로 그 대책이나 대응 방안 마련이 쉽지 않다. 2000년 이후 굵직한 스포츠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는 개선 정책을 내놓았지만, 노력의 한계는 분명했고 대동소이한 단기적 대책들만 반복되었다.

이제 ‘학생선수 인권의 현주소 : 인권실태 전수조사와 스포츠분야 (성)폭력 판례분석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통해, 체육계 구조적 문제를 균열시키는 변화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 이 자리가 잠깐의 주목과 망각의 자리가 아닌 체육계 폭력 및 성폭력 문제를 해소할 실질적 기회라는 인식 아래, 학생선수 성폭력 방지 및 인권 증진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더하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한다.

첫 번째,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 선수들은 공개장소(훈련장소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발생이 높고¹⁾, 남성 선수들은 비공개 장소(합숙소, 기숙사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발생이 높다. 또한 초등학생선수 결과를 보면 여성 선수들의 경우 자신이 겪은 성폭력 경험으로 인해 소속된 운동부 혹은 주변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상황을

1) 코치와 선수간의 빈번한 신체적 접촉이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스포츠 영역에서 여성 선수들은 심각한 신체접촉 이외에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김인형, 2010). 해외의 연구들에 의하면 어린 여자선수들은 남성지도자를 친구이자 아버지의 모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훈련과정에서 선수들은 지도자와 감정적으로 복잡한 관계로 얽힐 수 있으며(Naomi feigin and Roint Hanegby, 2001), 이 같은 친밀성이 종종 지도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활용되는 경우도 상당수 보고되고 있음(Jan Toftegaard Nielsen, 2001; 황정임 외, 2007 재인용)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남성 선수들보다 강하다. 이러한 결과들은 다른 조사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2019년 경기도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여성 선수들은 ‘참고 모르는 척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웃거나 농담으로 받아들이기’, ‘간접적인 의사표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별(gender)에 따라 학생선수들의 성폭력 피해양상이나 피해대처에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 진지한 고민과 대책이 우리 안에 있었는지 반성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성인지적 감수성이다. 젠더에 기반한 체육계 성폭력방지 정책이 필요하다. 즉, 아동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차별 없이 운동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동시대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이자 시대 정신이며, 인권의 문제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방향키를 세우고 스포츠인권 침해방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성희롱(성폭력) 피해 학생들의 많은 수가 가족이나 동료선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울만(Ulman, 2010)에 연구에 의하면, 사회의 부정적 반응이 성폭력의 후유증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한다.

“선생님한테 맞았는데 엄마는 똑바로 하지 왜 맞았냐고... 똑바로 하지 이런 말만 하시고 <중략>” (인권실태 전수조사 인터뷰 내용)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2019 경기도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피해대처와 관련하여 ‘주위 사람에게 이야기함’은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여성 선수들의 경우 성희롱(성폭력) 피해와 관련해서 초기 발생 단계에서 주변에 이야기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빈도가 남성에 비해 높다. 여성 피해자 지원 시 주변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 선수들의 경우 성폭력 사건 이후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빈도가 높다는 결과를 살펴볼 때, 피해 여성의 친밀한 타자와 주변인, 조직문화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피해자에게 트라우마적 피해를 더 갖도록 할 수도 있고, 자신이 입은 피해를 극복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선수들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 사건은 선수들의 일상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랜 시간 함께 하는 지도자와 동료가 미리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운동부 내에서 일

정 기간 지속한 폭력은 대부분 지도자와 동료가 짐작할 수 있거나, 알고 있는데 묵인한 결과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차별 없이 운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친밀한 타자인 가족, 지도자와 동료가 피해자에 대한 인지,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이 필요하다.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 방어자)

예를 들어 (동료) 캐나다 웨스턴 대학에서는 2019년 2월 Allies on Campus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²⁾. Allies on Campus 프로그램은 해당 대학의 남성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캠퍼스 성폭력 예방 활동자 교육이다³⁾. 12주간의 훈련이 진행되고, 다양한 스포츠분야에서 지원한 학생선수들로 구성되며, 성폭력에 대한 지식 교육, 구체적인 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 등으로 구성된다. 기존에 성폭력 예방활동이 여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인식해왔던 만큼, 이 프로그램은 남성을 성폭력 예방활동의 동지로 인식하게 하고, 방관자가 아닌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훈련하는 프로그램이다⁴⁾. 12주 훈련 후에는 수료자들에게 매주 이메일과 온라인 교육 자료가 발송되며, 팀 리더들을 중심으로 매주 예방 활동을 하도록 구성되어서 교육 후에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 밖에 해외에서는 부모에 대한 체육계 성폭력방지와 예방프로그램이나 코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들도 많이 있다. (부모 및 코치) 예를 들어 Womensports International⁵⁾에서는 대응 정책으로 모든 스포츠 단체들은 성인과 아동에 대한 코치 윤리강령을 개발할 것, 성 학대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코치 교육을 할 것, 운동선수와 부모가 함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을 받을 것, 신고 시스템을 구축할 것, 각 단체는 자녀가 어디 있는지를 부모가 항상 알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할 것, 코치나 자원봉사자에 대한 엄격한 선발절차를 수립할

2) https://westerngazette.ca/sports/western-s-male-athletes-facilitate-solutions-in-sexual-violence-prevention/article_978939b6-25b1-11e9-8d68-678d6c82bbf4.html
 3) 대학 홈페이지 참조. 자료검색 2019년 7월 5일.
https://westerngazette.ca/sports/western-s-male-athletes-facilitate-solutions-in-sexual-violence-prevention/article_978939b6-25b1-11e9-8d68-678d6c82bbf4.html
 4) 제3자가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 개입을 해야 한다는 교육들은 ‘apple 훈련’ 등이 존재함.
<https://apple.studenthealth.virginia.edu/>
 5) 홈페이지 참조. 자료검색 2019년 7월 6일. <http://womensportinternational.org/>

것 등의 대응안을 담은 브로슈어를 작성하고 회원기관은 물론 관련 단체와 기관에 배포하였다.

미국의 키즈파워⁶⁾에서는 2012년에 체육 활동 코치들의 단체인 “긍정적 코치 연합(Positive Coaching Alliance)⁷⁾”과 협력하여 “성적 학대로부터 청소년 선수 보호(Protecting Youth Athletes from Sexual Abuse)”라는 교육 동영상을 개발하였다. 1993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 National Alliance for Youth Sports (NAYS)⁸⁾에서는 아동·청소년 스포츠 단체의 리더, 자원봉사자, 부모를 교육하고 있으며, 모든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코치와 부모용 교육을 따로 제공하고 있다.

세 번째로 인권실태 전수조사의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가해자의 변화다. 상급 학교로 갈수록 지도자는 감소하고(75.5%→65.3%→46.7%), 동료는 증가한다. 이명선 외(2008) 연구에 의하면 스포츠계 성폭력은 폭력과 함께 지도자가 선수를 통제하거나 선배가 후배를 괴롭히는 방식의 하나로 나타날 수 있으며, 심지어 훈련이나 체벌의 한 형태로 오용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폭력의 피해자 역시 성폭력을 체벌이나 훈련의 일환으로 혼동하거나 일상적인 해프닝(장난)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폭력 허용적 조직 문화**를 수용하는 집단 내에서 선수들은 부당한 인권 침해나 폭력에 저항할 방법을 배우거나 힘을 갖지 못한 채, 오히려 폭력이나 통제에 순응하거나 자신 역시 폭력의 가해자로 역할하게 되는 폭력의 사회화 과정(socialization of violence)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이명선 외, 2008)⁹⁾. 정혜원 외(2019)¹⁰⁾ 연구에서도 운동부 내 **통제적 팀 문화와 성희롱(성폭력) 허용적 문화**를 가진 집단일수록 성희롱(성폭력) 직접피해 경험과 간접피해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순환적으로 나타나는 체육계 조직문화에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육계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구성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인권실태 전수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체육계 성폭력 근

6) 홈페이지 참조. 자료검색일 2019년 7월 5일. <https://www.kidpower.org/who-we-serve/>

7) <https://www.positivecoach.org/>

8) 홈페이지 참조. 자료검색 2019년 7월 3일. <https://www.nays.org/>

9) 이명선 외(2008).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10) 정혜원 외(2019) 경기도 체육계 성폭력 실태조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절을 위해서는 운동부의 조직문화, 즉 위계와 서열, 권력과 통제, 복종의 규범이 작동하는 '군대'와 같은 집단적 특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문화에 균열 낼 수 있는 내용과 함께 교육 대상에게 적합한 내용으로 교육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조기발견은 매우 중요하다.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체육계 조직문화로 인해 신고율이 낮을 수 있으며, 인권실태 전수조사에 의하면 여성선수의 경우 운동장 혹은 체육관 등 운동 연습하는 곳에서 피해가 남성선수에 비해 높다고 한다. 이에 현장에 기반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조기발견과 구제 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찾아가는 피해자 조기발견 시스템과 사전 예방체계를 신설하거나 접수창구 접근성과 사건 대응 용이성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올림픽 현장 기본원칙 6항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 토론을 마치려고 한다. (올림픽 현장 기본원칙 6항) “인종, 피부색, 성별, 성적 지향,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여타 신분 등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 올림픽 현장에 명시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즐겁고 안전하고 차별 없이 스포츠정신이 구현되는 그날을 위해서 ...



【학생선수 인권의 현주소】

인권실태 전수조사와 스포츠분야 (성)폭력 판례분석 결과 발표 토론회

[패널 토의]

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 선수
- 신체활동 가치 인식 및 운동소양 함양을 통한
모든 학생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

신진용

(교육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장)

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 선수

- 신체활동 가치 인식 및 운동소양 함양을 통한 모든 학생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

신진용 (교육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장)

4대 중점과제	19개 실행과제
1. 학교체육교육 내실화	1-1. 체육수업 내실화 및 체육교사 전문성 신장 1-2. 학교체육 역량 강화 연수 1-3. 초·중고 체육교육 전문인력 지원 1-4. 초등 수영실기교육 및 생존수영 확대 운영 1-5. 체육 중점학교 및 거점학교 운영 1-6.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1-7. 학생 건강체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강화
2.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운동하는 모든 학생)	2-1.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2-2.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내실화 2-3. 학교(학급) 및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활성화 2-4.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2-5.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지원 확대
3.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지원	3-1. 학생선수 학사 관리 강화 3-2.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강화 3-3.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4. 학교체육 네트워크 운영 및 대국민 인식 제고	4-1. 학교체육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체계 구축 4-2. 단위학교 자율 체육프로그램 활성화 4-3. 체육활동 중요성 인식 개선 4-4. 학교 체육시설 환경 구축

□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관리 강화

【변경 예고】

2020학년도부터 초·중·고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학교장이 허가하는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출석인정결석)를 축소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학사 관리를 강화할 예정

-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학생선수는 ‘출석인정 결석’으로 수업일수의 1/3 범위 내에서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선택적으로 실시 가능

※ 학교장은 학생 안전,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 처리를 허가하고, 반드시 수업일수의 1/3 범위를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참가 원칙

- 교내에 훈련장소가 없어 정규수업 이수 불가능할 경우, 보충학습 제공, 출결처리, 안전대책 등에 관한 사항 해당 교육청 보고 의무화
- 학생선수가 수업결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e-school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보충학습을 의무적으로 제공

□ 2021학년도 고입 체육특기자 전형 내신성적 반영 의무화 및 제도 개선

- 현행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전형은 입상실적, 실기능력 위주로 선발하고 있으며, 내신성적을 반영하지 않아 학생선수가 학업에 소홀 하는 경향

-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에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내신성적(교과 및 출결) 반영비율 등을 정하여 실시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 학생선수 학력저하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 심화에 대해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을 통한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의무화

□ 상시 합숙 훈련 근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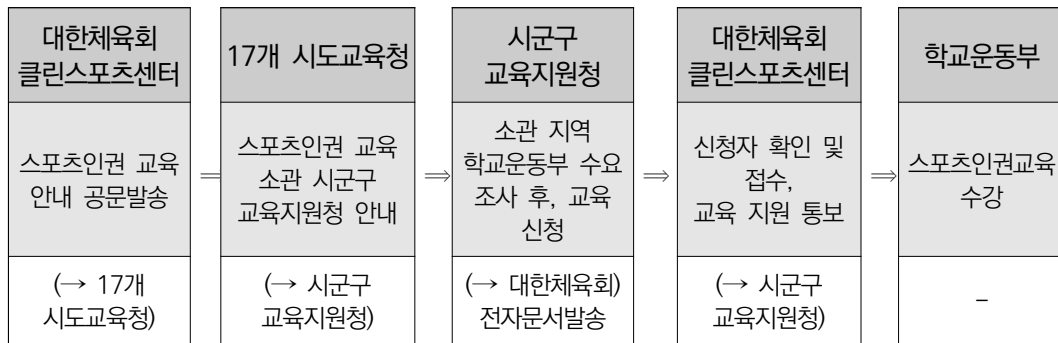
- 학교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 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

☞ (관련법령)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제3항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중 상시 합숙 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 운영은 가능하며, 안전대책 수립과 학습여건 등을 잘 갖추어 운영
- 학생선수의 통학거리(원거리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숙식제공과 주거 생활만 하는 합숙소 형태의 기숙사 운영 불가
 - 기숙사 운영 요건을 갖춘 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점검·승인 후 운영

□ 학생선수·학교운동부 지도자·학부모 대상 인권교육 지원



□ 학교운동부 지도자 채용 안내

- (자격)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반드시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비리 발생 시 활용), 경기단체 (징계) 확인서*

□ 학교운동부 지도자 등 연수 강화

- (의무화) 초·중고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성·교육적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도역량 배양을 위한 필수 교육으로 교육청(학교)의 의무 참가
※ 「학교체육 진흥법」12조제②항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 의무적인 직무교육 참가

□ 학교운동부 지도자 갑질행위 근절

- (채용절차 공정화) 학교운동부 지도자 선발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개채용 절차를 준수하여 적격자 채용
※ 다면평가 등을 통해 유능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교운동부 지도자 선발

- **(예방교육 의무화)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학생선수 인권 보호교육을 의무화**하여 사전 예방활동 강화(학교체육진흥법 제6조 제1항)
 - ※ 학생선수 인권보호,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 입시비리 예방, 지도자 직무연수 실시
- **(운동부 운영·관리)** 학교장은 운동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지도자 책임용에 반영
 -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인권 보호, 교육적·과학적 지도방법 적용 등
- **(비위행위 처리)**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해지 조치(법 제12조 제4항)

학생선수·학교운동부지도자학부모 예방교육 강화

-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권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 [학교운동부 지도자(학부모)·학생선수] 학교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 [학부모]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교육 의무화
- [학생선수] 담임·체육교사, 상담교사 및 보건교사 등이 학생선수의 건강상태 및 선수활동 고민사항을 점검·해소(월 1회, 면(상)담일지 기록)

학교운동부 정기 점검 실시(연 1회)

- 매년 실시하되,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성폭력 예방교육, 예산집행 투명성, 관련법규 준수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 점검

- ①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권 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연 1회(2시간)이상)
- ② 학생선수 학교폭력 예방교육(연 2회) 및 면(상)담 활동(월 1회)
- ③ 학부모 부담금 학교회계 편입
- ④ 학생선수 인권·학습권 침해 현황 및 보호를 위한 조치
- ⑤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미도달 학생 현황 및 도달을 위한 노력
- ⑥ (전지)훈련 장소, 기숙(합숙)시설 운영 전반 점검

□ 학교운동부 지도자 객관적 평가시스템 도입

- (방식) 직무수행 실적, 복무태도, 운동부 운영 성과 등 **종합적 평가**
- (입상실적 평가 지양) 전국대회 입상을 위해 학생선수에게 비교육적인 방법과 과도한 훈련으로 인권침해 사례 등 유발 (서울·경기 등)

□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집행 투명성 확보

- 학부모 부담의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등은 반드시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학운위 심의를 거쳐, 집행 시에는 **법인카드 사용·공개**

□ 대입 체육특기자 입시관련 비리 근절

- '20학년도 대입전형에 체육특기자 교과 성적 및 출석 반영 의무화
- 정성적 평가 요소를 최소화, 종목별, 포지션별 선발인원 명시 등
- 면접평가/실기평가 시 3인 이상 참여, 1인 이상 외부위원(타 대학 교수) 참여, 타학과 교수 또는 입학사정관 참여, 공정성 위원 참여 의무화

□ 학교운동부 비리 관련 징계 강화

-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우수선수 스카우트 관련 금품수수, 운동부 경비집행 부정행위, (성)폭력 등에 대해 지도자·선수 등 징계 강화
- (징계 절차 개선) 단위학교 ⇨ 시도교육청 ⇨ 대한체육회·교육부* ⇨ 경기단체 ⇨ (결과회신 : 대한체육회⇨시도교육청·교육부)
- 학생선수가 학교폭력 가해자일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입학비리 연루 학생선수에 대한 영구제명 조치*

□ 학교운동부 해외 전지훈련 관리 철저

- 가급적 지양하되, 방학기간 중 실시가 원칙이며, 해당교육청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고, 사전·사후 보고 및 결과공개 철저히 이행
- 학교장은 기관 및 학부모회 요구가 있을 경우 학생선수 안전, 학습권 보장, 학부모 부담경비 최소화, 학교폭력 예방 등을 고려하여,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해당교육청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며 관리·감독을 충실히 이행

단계	내 용	담당 기관(단체)	비 고
1	전지훈련 계획서 제출	주관기관(단체)→학교	- 개인별 학부모동의서 포함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	- 실시 여부 결정
3	사전 보고 및 참가 현황공개	학교→교육청	- 1개월 전까지 - 학교·교육청 홈페이지
4	전지훈련	주관 기관(단체)	- 안전사고 예방 유의
5	사후 보고 및 결과공개	주관기관(단체)→학교 →교육청	- 귀국 후 15일 이내 - 학교·교육청 홈페이지

□ 학교운동부 운영 학부모 부담금 세액 공제 절차 안내

-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수익자 부담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입해야 하며, 교육비 세액공제 처리 가능(연 300만원)



【학생선수 인권의 현주소】

인권실태 전수조사와 스포츠분야 (성)폭력 판례분석 결과 발표 토론회

[패널 토의]

학생선수의 인권침해와 학습권을 통한 해결방안, 그리고 스포츠정신의 용기

서정화

(현 GKL스키팀 코치, 평창 동계올림픽 국가대표선수)

학생선수의 인권침해와 학습권을 통한 해결방안, 그리고 스포츠정신의 용기

서정화 (현 GKL스키팀 코치, 평창 동계올림픽 국가대표선수)

올 2월, 진천선수촌 내에 선수 인권 상담실이 문을 열었다. 개소식이 있고 한 달 반 정도 흐른 뒤,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위원으로 인권상담실 홍보차 진천선수촌에 방문했다. 100여 명의 대표선수가 모여 듣는 교육 중간에 10분가량을 할애 받아 더 많은 선수가 인권 상담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는 말을 전하고 있었는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한 선수가 크게 외쳤다.

“거기 가면 잘려요!”

약간의 침묵이 흐른 뒤, “네, 그럴 수도 있긴 하죠.”라고 대답했다.

오늘 이 국가인권위원회 발표 및 토론회를 평소 스포츠인권에 관심이 많은 후배 학생 선수에게 소개해주며 와서 들어보라고 권유했다. 그 선수의 말은 정말 가고 싶어서 며칠 동안 고민했는데, 평일이어서 훈련을 빠지고 와야 하지만 인권 관련 토론회에 온다고 하면 감독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 그래서 “이해하니까 그러면 다른 핑계를 대서라도 올 수 있으면 와.”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 이 자리에 몇 명의 선수들이 왔을지도 궁금하다.

앞의 두 선수에게 스포츠인권에 목소리를 내도 ‘잘리지 않을 거’라고 혹은 ‘감독님이 허락하실 거’라고 말할 수 없었다. 고등학생 때부터 10년 넘게 국가대표 선수 생활을 해오며 경험한 바로는 선수들의 대답이 더 옳았다. 이번 초중고 학생선수 스포츠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접했을 때도 양적 분석 결과보다 질적 조사 결과의 인터뷰들이 더 현실적으로 와 닿았다. 모든 인터뷰 내용이 특수한 인권침해 사안들이라기보다 너무나 쉽게 혹은 선수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이해될 내용이었고, 심지어 그래도 ‘진짜 심각한 수

준은 나오지 않은, 적정 수위의 내용'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에 비해 아직 양적 분석 결과에는 많은 부분이 담기지 않은 것 같다.

스포츠 선수들에게 인권은 무엇일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라는데, 왜 선수가 인권에 대해 말하려고 하면 '잘릴걸' 걱정해야 하고, 인권을 공부해보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과 문제 해결의 시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문들이 넓고 깊게 담아냈다고 생각한다. 과거 정부 정책, 사회 구조적 문제, 교육 정책, 그리고 그로 인한 국내 스포츠 문화 특성 등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고 모두 맞물려 연결되어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학생선수였던 경험으로 스포츠 현장에서 고민했던 점에 한정 지어 얘기해보고자 한다.

대회 성적이 학생선수들의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는 말은 너무 당연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인권침해의 근간에는 폭력으로라도 선수들의 더 나은 경기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그렇지만 어떤 순간에도 좋은 성적을 위한 과정과 선수들의 인권이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놓여있을 필요가 없다. 물론 선수가 연습과 경기에서 실력과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선수들이 매일매일 항상 완벽하게 운동을 잘할 수는 없다.

슬럼프를 겪을 때처럼 때로는 같은 노력을 위해 더 많은 동기부여가 필요한 날도 많다. 그러한 동기부여를 지도자들이 폭력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선수 스스로 노력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이며 그 선택의 답은 정해져 있다. 스포츠 심리 지식, 과학적, 인권 친화적 방식이 더 연구되고 지도자와 팀 관계자들이 이를 지속해서 공부하고 적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생선수에게 지나친 훈련 양과 시간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해야 할 학교생활을 빼앗아 사회적 고립을 발생시키고 학습권 침해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그 사회적 고립과 학습권 침해는 첩바퀴처럼 다시 돌아 과도한 훈련 양과 시간을 만들고 학생선수들이 폭력, 성폭력 피해를 비롯한 인권침해 사안들에 침묵하게 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때부터 운동만 한 학생은 고등학생 때에 이르면 이미 어려워진 공부를 따라잡긴 힘들고, 운동 외에는 새로운 선택의 길이 제한된다. 그래도 열심히 한 운동이니까 하기 싫어도

이제 와서 그만두기 아깝고 대학도 가야 한다. 감독님이 시키는 훈련은 무조건 소화해야 하고 대회 성적에 앞으로의 진로가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기분 나쁘고 불편하더라도, 괜히 문제 삼았다가 앞으로 선수생활과 대학 진학이 어려워지느니 일단 여기서 버텨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결국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이 사회적 고립을 막고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훈련 양과 시간을 줄여야 한다. 종목별, 연령별 그리고 시즌별로 중요한 트레이닝 내용이나 방법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같은 시간과 운동량을 강요하거나 운동 강도 자체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 학생선수들도 장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훈련 자체가 당연시되는 문화 탓인 듯하다.

많은 트레이너가 말하길 운동 시간과 부상 발생 비율은 비례한다고 한다. 해외 프로 선수들조차도 긴 연습시간을 선호하지 않고 축구의 이강인 선수가 인터뷰에서 밝혔듯 발렌시아 유스팀 훈련 시간은 방과 후 2-3시간뿐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강도 높은 훈련만 진행하는 것에 익숙해진 선수들이 오히려 적정 운동량을 하면 모자란 것 같은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한다. 학생선수의 연령대별로 적정 운동시간과 시간 대비 효과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과학적 지식에 기반을 둔 효과적 훈련 시간이 제시되면 좋겠다.

또한 학생선수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연구도 중요할 것이다. 시즌 준비 기간도 종목마다 다양하고, 체력훈련이 더 필요한 기간이 있을 수도, 반대로 기술훈련이 더 필요한 기간이 있을 수 있다. 집중해야 할 훈련 내용을 세분화하는 트레이닝 주기를 대회 일정과 학생선수의 학사 일정을 동시에 고려하여 만들면 충분히 수업에 참여하면서 운동성과도 오히려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체력훈련도 항상 높은 강도만 유지할 필요는 없다. 적절한 휴식과 다양한 종류와 강도의 트레이닝 구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높은 강도와 많은 시간이 있어야 하는 훈련은 방학 위주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피해서 정하고, 반대로 공부에 좀 더 집중해야 할 기간은 낮은 강도나 적은 시간 짧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훈련을 진행하면 된다.

학생선수들의 학습 지원에 대한 제도 혹은 교내 시스템 또한 필요하다.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학생선수들에게는 시간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일반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고 운동하려면 운동도 공부도,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도와 주어야 한다. 운동선수가 원하면 수행평가 공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혹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범위 내에서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고 보충할 수 있는 센터나 지원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예로 미국 LA에 있는 남가주대학교(Univ. of Southern California)의 경우 운동선수를 위한 학습 지원 센터(Student Athlete Academic Service, <https://saas.usc.edu>)가 있다. 학교 소속 운동선수들은 언제든지 이 센터를 통해 에세이 작성을 비롯한 과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수학, 과학이나 영어와 같은 보충 하길 원하는 과목을 지정해서 개인 튜터 시간을 잡을 수도 있다. 또 수강 중인 특정 수업의 필기나 자료가 필요하면 이 센터에서 학생선수가 듣고 있는 수업의 전체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학생선수의 학습을 도와줄 학생을 찾아주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학습권 보장 정책을 뒷받침할 학습지원 시스템이 갖추어져 나가길 희망한다.

스포츠계 문화에 녹아있는 인권침해를 하루아침에 근절하기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리고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에 경기장 대관 문제, 주말 대회 개최로 인한 예산 증가 문제 등 현실적 난관이 많다는 시각에도 공감한다. 하지만 학생선수들의 인권 침해는 너무나 오랜 시간 방치되어왔고, 이번 조사 결과조차 그 일부만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각자 혹은 부처별 입장을 떠나 '이제는 바뀌야 한다'는 마음을 모두 함께 모으고, 스포츠 정신의 '용기'도 필요할 것이다.

운동선수로 세계선수권이나 올림픽과 같은 큰 대회에서 '잘 안 될 것 같다'는 의심을 갖고 경기를 뛰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반대로 상황이 정말 어렵지만 '할 수 있고, 꼭 해야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했을 때의 경기는 모두 성공적이었다.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이 뜻을 모아 변화를 함께 이루어간다면 모든 학생선수가 행복하게 운동하고 공부하는 미래가 곧 올 것이라고 믿는다. 선수들이 당당히 스포츠 인권에 목소리를 내고, 오늘 이 토론회와 같은 자리에도 더 많은 선수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날이 가까운 미래에 있길 바란다.

【학생선수 인권의 현주소】

인권실태 전수조사와 스포츠분야 (성)폭력 판례분석 결과 발표 토론회

세션 2.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판례분석 결과



【학생선수 인권의 현주소】

인권실태 전수조사와 스포츠분야 (성)폭력 판례분석 결과 발표 토론회

[발표]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판례 분석 결과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판례분석 결과¹⁾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들어가기

이른바 “조재범 사건”은 스포츠 지도자와 선수 사이에서 성폭력·폭력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스포츠분야 성폭력·폭력 사건의 정형성, 즉 그 일상성과 불평등한 권력 구조와 위계적인 문화가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포츠분야 성폭력·폭력 사건은 다른 분야의 성폭력·폭력 사건과는 달리 몸을 매개로 하는 활동이 가지는 특성과 함께 선수와 지도 간의 위계적인 구조, 체육 권력 등이 결합하여 일상성, 지속성, 폭력성 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여기에 매달 중심주의, 엘리트 스포츠 정책 등으로 말미암아 성폭력·폭력 사건은 은폐될 뿐 아니라 침묵이 강요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발표는 스포츠분야에서 발생한 성폭력·폭력 사건에 대한 판례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실태와 판례 경향을 살펴본 후에 스포츠분야 성폭력·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판례 분석이라는 방법론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 판례는 법원이 현행법을 해석·적용하여 사건을 처리한 사례를 의미하기 때문에 법원이 가지고 있는 스포츠계 성폭력·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 정도가 그대로 드러나고, 현행법의 틀 내에서 법리와 내용을 해석하기 때문에 현행법의 한계와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판례는 사건을 전제로 하므로 스포츠분야 성폭력·폭력 실태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스포츠분야

1) 이 발표문은 박선영·박복순·고현승·김현아·정지원·이승운(2019),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사건 판례분석 및 구제방안 연구(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의 일부분을 본 발표용으로 작성한 것이다.

의 성폭력·폭력 실태를 토대로 관련 정책의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자료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 발표문에서 사용한 판례는 법원도서관 유료 판례 검색 사이트와 로앤비 사이트에 ‘체육교사’, ‘코치’, ‘감독’, ‘선수 성폭행’은 물론 ‘선수’, ‘훈련’, ‘강간’, ‘폭행’, ‘추행’, ‘희롱’, ‘합숙’, ‘기숙사’, ‘상해’, ‘따돌림’, ‘괴롭힘’ 등을 단독 또는 조합하여 검색한 총 264건의 판례이다. 기간은 1997년~2019.9.까지의 판례로 법원도서관은 유료검색이 가능한 2013년부터 2019년 9월까지이다.

형사사건은 성폭력사건 84건, 폭력사건 43건으로 총 127건이고, 민사, 행정사건은 총 43건이다. 이중 판례를 통해 본 성폭력·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실태 분석에 사용한 판례는 형사사건 중 성폭력 사건 71건, 폭력사건 39건이다. 판례 분석에는 입수한 판례 전체를 사용하였다.

II. 스포츠분야 성폭력 사건 판례 분석²⁾

1. 스포츠분야 성폭력 사건 판례를 통해 본 스포츠분야 성폭력 실태

가. 학교체육의 높은 비율

분석대상이었던 127건의 판례 중 성폭력 사건 71건을 분석한 결과 생활체육 18건, 학교체육 38건, 전문체육 6건 분야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 학교체육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 피해자의 대다수가 미성년의 학생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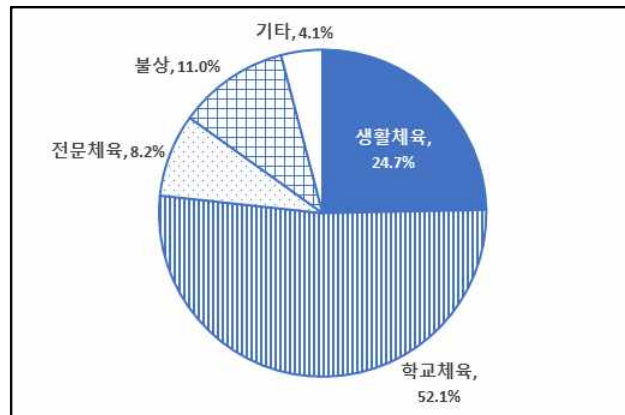
2) 대법원 판례 검색 사이트와 로앤비 사이트에 ‘체육교사’, ‘코치’, ‘감독’, ‘선수 성폭행’은 물론 ‘선수’, ‘훈련’, ‘강간’, ‘폭행’, ‘추행’, ‘희롱’, ‘합숙’, ‘기숙사’, ‘상해’, ‘따돌림’, ‘괴롭힘’ 등을 단독 또는 조합하여 검색한 총 264건의 판례를 검색하여 입수하였다. 형사사건은 성폭력사건 84건, 폭력사건 43건으로 총 127건이고, 민사, 행정사건은 총 43건이다. 이중 판례를 통해 본 성폭력·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실태 분석에 사용한 판례는 형사사건으로 성폭력 사건 71건, 폭력사건 39건이다. 판례 분석에는 입수한 판례 전체를 사용하였다.

〈표 1〉 체육 목적별 성폭력 사건 수

(단위 : 건)

체육목적	생활체육	학교체육 (수업, 유치원, 학교운동부 포함)	전문체육	불상	기타 (학부형)	합계
사건 수	18	38	6	8	3	73*

주: * 피해자가 학부모+학생인 경우가 2건.



〔그림 1〕 체육 목적별 성폭력 사건 비율

나. 생활체육 중 태권도 성폭력 사건의 높은 비율

생활체육 분야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18건 중 15건은 태권도 학원에서 발생하였다. 태권도는 가장 대중화되어 있는 스포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보편화되어있고, 유치원부터 초·중등학교 학생까지 태권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태권도 학원에서 성폭력 사건이 많다는 것은 생활체육에서의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2〉 생활체육 영역에서의 성폭력 사건 수

(단위 : 건)

종목	합기도	태권도	복싱
사건 수	1	15	2

다. 피해 드러내기가 더 어려운 전문체육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하고,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전문체육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6건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사건 수가 적었다. 전문체육의 경우 취업알선과 성적에 대한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피해자들이 성폭력에 대해 저항하지 못한다거나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사건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표 3〉 전문체육 영역에서의 성폭력 사건 수

(단위 : 건)

종목	골프	역도	유도	쇼트트랙
사건 수	3	1	1	1

라. 체육 수업 중에 발생하는 성추행의 높은 비율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하고, 학교란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학교 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하고 학생선수란 학교 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활동하는 선수를 말한다(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학교체육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다양한 종목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체육수업, 축구, 농구, 육상, 야구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체육수업 시간 중에 가장 많은 발생을 보이는 것은 정규 수업과정에서 성추행이 발생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표 4〉 학교체육 영역에서의 성폭력 사건 수

(단위 : 건)

종목	골프	농구	럭비	무용	배구	양궁	역도	유도	축구
사건 수	1	5	1	1	2	1	1	1	5
종목	육상	정구	체육수업	배드민트	스태킹	싸이클	씨름	야구	탁구
사건 수	4	1	7	1	1	1	1	3	1

마. 주요 피해 장소는 합숙소와 체육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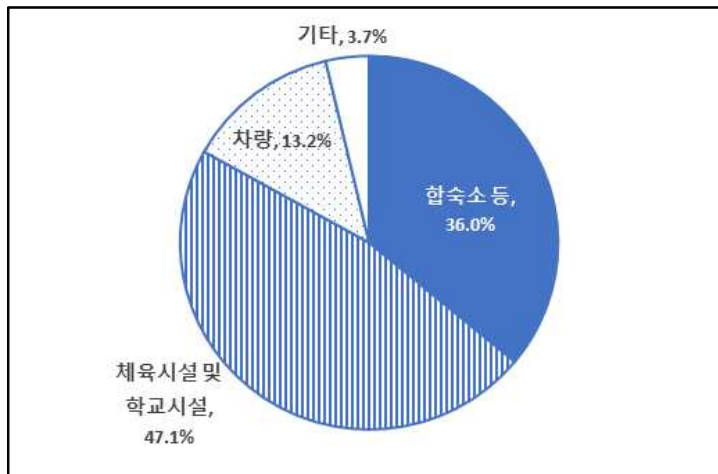
스포츠 성폭력 사건의 주요 피해 장소는 합숙소(49건)와 체육시설(64건)이었다. 합숙소는 합숙시설, 호텔, 모텔, 코치나 감독의 주거지, 학생의 주거지, 캠프 주차장 등이 포함된다. 체육관을 비롯하여 탈의실, 탁구장, 강당, 운동장, 체육관 사무실, 코치실, 체육준비실, 옥상 등도 체육시설에 포함하여 집계하였다. 기타로 노래방, 등산로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표 5〉 스포츠 성폭력 사건 발생 장소(중복)

(단위 : 건)

피해장소	합숙소 등	체육시설 및 학교시설	차량	기타*
사건수	49	64	18	5

주 : * 통신매체, 노래방, 등산로 등



[그림 2] 스포츠 성폭력 사건 발생 장소(중복)

바. 가해자의 위력적 지위와 선배에 의한 성폭력의 잔인한 양상

1) 가해자의 위력적 지위

가해자는 크게 교사적 지위와 선배로 분류되고, 교사적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한 성폭

력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66건). 감독, 코치, 학교교사, 태권도 관장이나 사범, 합기도장 관장 등의 사설학원 관리자, 골프강사, 수영강사 등이 가해자로 드러났다.

간음의 수단으로 폭행, 협박에 이르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코치, 교사, 강사의 지위는 대개는 업무상 위력을 구성한다. 청소년 국가대표 출전 여부를 빌미로 위력에 의한 추행을 한 사례가 있다³⁾. 또 12세의 피해자의 어려운 가정형편을 상담한 후 프로 축구팀에 진학하도록 도와주고 매달 용돈을 5만 원씩 주는 그루밍의 형태로 지속해서 강간한 판례도 있다⁴⁾. 이러한 위력적 지위는 대학 농구부 감독의 농구부 학생 어머니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나타나기도 한다⁵⁾.

가해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합숙 등 생활을 공유하고 있어 지배 종속의 정도가 심할수록 성폭력의 정도 또한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스포츠 성폭력 판례는 대체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드물게는 태권도 관장이 업무 보조 직원에게 성폭력을 행하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으로 처벌되는 예도 있다⁶⁾. 전문체육의 경우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의 경우에도 태권도장에서 아동기에 추행을 당하고 10년이 넘게 계속 태권도를 배우다가 성년의 나이가 되어 성폭력 사실을 신고하는 사례도 발견된다⁷⁾.

〈표 6〉 스포츠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지위

(단위 : 건)

가해자의 지위	교육자*	선배	합계
사건 수	66	5	71

주 : * 교사, 감독, 코치, 강사, 사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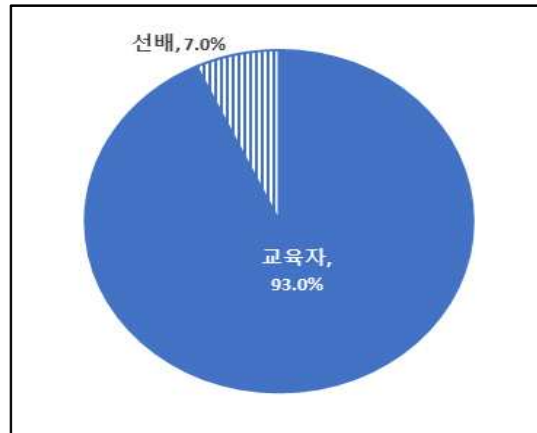
3) 대구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고합238, 2017초기938(병합) 판결.

4) 수원지방법원 2011. 12. 1. 선고 2011고합569 판결.

5) 수원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고단6344 판결.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5. 18. 선고 2018고정45 판결.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1. 10. 선고 2018고합85 판결.



[그림 3] 스포츠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지위

2) 선배에 의한 성폭력의 잔인한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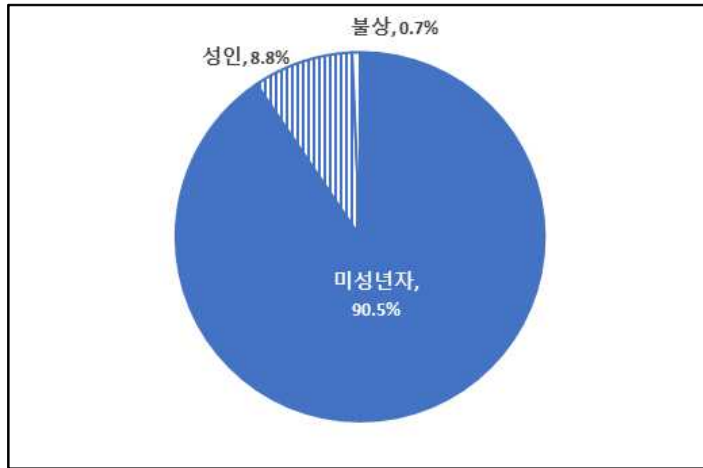
선배에 의한 성폭력(5건)은 훈련뿐만 아니라 합숙에서도 더 긴밀하게 생활을 공유하기 때문에 감독, 코치, 강사, 교사보다 더 심각한 양상의 성폭력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청양고추, 마늘과 쌈장만으로 쌈을 만들어 먹인다거나 향문에 파스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성기를 소독약으로 소독하고, 단순한 안마가 아니라 마사지를 하게 하고, 음부를 추행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⁸⁾⁹⁾ 성폭력의 정도가 심각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의 높은 비율

스포츠분야 성폭력 피해자의 90%정도가 미성년자이다. 성폭력 유형은 아래 그림과 같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비율이 높다. 특히 강간·강제추행 행위 중 미성년자에게 행해진 경우가 총 66건이다. 그 밖에 강간 1건, 강간미수 8건, 강제추행 4건, 카메라 이용 촬영 4건 등이다.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고합195 판결.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8. 17. 선고 2018고합 33 판결.



[그림 4] 스포츠분야 성폭력 사건 피해자 연령(중복)



[그림 5] 스포츠 성폭력 사건 피해 유형(중복)

2. 스포츠분야 성폭력 사건 판례 분석

가. 직업적 진로를 이용한 성폭력

전문체육의 경우 교육자의 지위가 직업적 진로와 결부되어 성적, 진학, 취업, 시합출전 기회 부여, 국가대표 선정 영향력 등에 있어 아래와 같이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선수들이 가해자의 성적 요구나 성적 침해에 대해 거절하거나 거부감을 표현하기 어려워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기 쉽고, 침해의 정도 또한 클 수밖에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고단3728 판결

피고인은 2012. B대회 C 국가대표팀 코치, 2015. B 대회 C 국가대표팀 감독을 역임하고, 2017. 1.부터 D 소속 E 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대표선수를 추천하는 권한을 갖는 등 E에서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2018. 1. 18.경 B 대회 국가대표 남자 C팀 감독으로 임명되어 국가대표 여자 C 선수들인 피해자들을 지도해왔다. 한편 피해자들은 C 실업팀에 갓 입단했거나 실업팀 입단을 목표로 하면서 C를 계속하기를 원하였으므로, 자신들을 직접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자신의 장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함부로 항의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이러한 입장을 이용하여 수시로 피해자들을 따로 불러내거나 훈련 중 자세교정지도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훈련 중이던 피해자의 등 부위 브래지어 끈 부분을 쓰다듬고,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보호장구인 갑의 옆쪽에서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수행하였다.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수행하였다.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등 부위 브래지어 끈 부분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수행하였다.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대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수행하였다. 자세를 잡아준다는 빌미로 피해자의 가슴 보호 장구인 ‘갑’의 옆 부분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경 위 연수원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던 중, 피해자의 앞쪽에서 지도를 한 후 갑자기 그녀의 가슴 보호 장구인 ‘갑’의 위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에 손이 닿도록 한 상태로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에게 “알았냐?”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수행하였다.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만 보고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수행하였다. 뒤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열심히 해, 수고했어.”라고 말하며 그녀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수행하였다. 훈련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그녀의 볼을 꼬집고 얼굴과 머리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수행하였다.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를 업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에 매달려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수행하였다.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자세를 교정해준다는 빌미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수행하였다. 훈련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귀에 염증이 생겨 테이핑을 한 상태였던 그녀의 귀 쪽에 피고인의 입을 대고 “이게 뭐냐”라고 속삭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수행하였다 등등 . 이로써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상습으로 강제로 수행하였다’.¹⁰⁾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9노179 판결, 대법원 2019도9323 상습강제추행죄로 확정.

나. 훈련을 빙자한 성폭력

전문체육은 합숙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생활을 공유하고 일상에 개입하는 정도가 커서 성폭력의 정도가 심각하게 나타난다. 단순한 학교체육보다 전문체육의 경우 탈의와 샤워 등부터 집에 가서 해결하기보다는 체육관에 설치된 샤워시설에서 정기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정도와 빈도라는 측면에서 성폭력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합숙시설의 개인공간은 훈련을 빙자하여 성폭력이 자행될 수 있는 공간으로 작용한다.

피고인은 00에서, 피고인이 가르치는 피해자 00(14세)을 불러 발 마사지를 시키다가 근력을 잡는 것을 알려주겠다며 스트레칭 자세를 잡아보라고 한 후 자세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티셔츠와 바지를 벗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태권도를 장래 진로로 삼고 있어 관장인 자신의 요구를 거스르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곤하니 숙소로 돌아가고 싶다며 완곡하게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썩 만 더 잡고 가자.”며 속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여, 이에 옷을 모두 벗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마사지를 빙자하여 주무르고 음부를 만지면서 “만지면 기분이 어떠냐, 흥분하지 말라.”고 하고, 숙소로 돌아가려고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딸 같아서 이러는 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¹¹⁾

다. 태권도 관장이나 사범에 의한 아동 성폭력

태권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제 다목에서 체육단체 중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으로서 체육 종목으로 특정된 유일한 종목일 만큼 대중화되어 있는 스포츠이다.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 적어도 1, 2개의 태권도장이 있고, 유치원에 진학하기 이전부터 학교생활을 하는 중에도 많은 아동과 학생들이 태권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현실이다.

판례분석 결과 태권도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비중이 생활체육에서는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일상에 조금 더 깊숙하게 침투된 만큼 성폭력의 정도가 더 심각하게 드러난다. 성폭력 사건의 양상이 태권도 관장이나 태권도 사범에 의해 태권도장에서 또는 아동이나 학생을 집에 내려다주는 셔틀버스 등의 차량에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학교나 유치원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고합5, 2017고합191(병합), 서울고등법원 2017. 11. 7. 선고 2017노2458 판결.

만큼이나 믿고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와 교육받는 아동이나 학생의 신뢰를 심하게 배신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¹²⁾. 또한, 태권도 관장이 도복 띠를 매어주겠다며 7세 여아의 음부를 추행하고¹³⁾, 태권도 사범이 탈의실에서 만 6세 여아의 음부를 추행하며¹⁴⁾, 태권도 사범이 태권도장에서 8세 여아의 음부를 추행¹⁵⁾하거나 탈의실에서 12세 여아를 강간하는 등 13세 미만의 아동에게도 심각한 수준의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⁶⁾. 또한, 태권도 사범이 셔틀버스 안에서 잠든 13세 여아를 무릎에 눕히고 보보를 하거나¹⁷⁾, 태권도 학원의 조교가 9세 여아를 자신의 집이나 개인 차량으로 불러들여 추행한 사례도 발견된다¹⁸⁾.

라. 15년이 지나도 계속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강간치상 사건

스포츠 성폭력의 몸을 매개로 한 폭력은 피해자의 나이가 10세에서 11세인 경우에 가해졌으나 고소가 15년 후에 이루어지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피해자는 15년 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¹⁹⁾.

피해자를 진찰한 00의 정신과 전문의 00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만성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를 겪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피해자는 초등학교 시절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인 성폭력 범죄를 당한 이후 현재까지도 당시 상황이 불현듯 떠오르거나 악몽으로 재현되는 침습적 증상, 당시 경험과 관련한 자극이나 단서로 유발되는 과각성 반응, 감정의 변화, 감각적 변화, 인지적 변화 등이 지속적이며 고통스럽게 반복되고 있다. 최근 피고인과의 조우 및 형사재판의 진행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이 최근 증상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를 8개월 이상 치료한 00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 전문의 00 역시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피해자는 과거 외상과 연관된 자극에 재노출 후 불

12) 대구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9노167 판결.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5. 17. 선고 2019고합6 판결.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 19. 선고 2017고합115 판결.

15) 인천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8고합296 판결.

16) 울산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8고합23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5388 판결에서 확정.

1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고합62 판결.

18) 서울고등법원 2019. 4. 19. 선고 2018노3268 판결.

19) 서울고등법원 2018. 4. 24. 선고 (춘천) 2017노156,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7118로 확정.

안, 주체할 수 없는 눈물, 외상과 연관된 악몽, 반복회상 등의 증세와 우울감 등을 보이고 있고, 과거 외상에 대한 침습적인 사고 및 반추, 특히 남성에 대한 피해사고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00은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외상에 노출되면 분명히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환자의 상황에 따라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주변에서도 모르고 지나갔다가 뒤늦게 성인이 되어서 본인이 '이것이 상처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도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에는 특정 감각, 이미지 등의 자극에 굉장히 민감해지는데, 피해자는 초등학교 때 피부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깊은 잠에 들지 못하였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 사건 범행과 연관된 악몽을 계속 꾸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아동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현양상에 관한 증인 00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실제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활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외부에 적극적으로 표출하지 못한 채 감내하면서 주변에는 위와 같이 단지 복통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정도에 그쳤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달리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할 만한 사건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그 밖의 증목 불상 관장이 매주 4-5회씩 11세(여)의 피해자 등을 승용차, 체육관 사무실, 체육관 등에서 수백 회에 걸쳐 폭행, 협박, 위력으로 강간한 사건도 있었다²⁰⁾. 또한, 태권도 관장이 어릴 때부터 자신에게 태권도를 배우던 만 20세의 아르바이트생을 수면제를 먹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도 있었다²¹⁾.

마. 빈번한 신체적 접촉과 추행 사이

형법 제298조에 의하면,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이에 대한 판례의 해석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

20) 대구지방법원 2009. 9. 4. 선고 2009고합171, 2009전고3(병합) 판결.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2. 21. 선고 2017고합228 판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²²⁾.

1) 강제추행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에 해당된다²³⁾.

피해자는 당시 강당에서 체육수업을 받고 있던 중 농구경기를 하던 남학생이 던진 농구공에 머리를 맞아 쓰러졌고, 이를 본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피해자의 주위로 몰려든 점, 당시 강당 밖에서 체육수업을 진행하던 피고인이 때마침 강당으로 들어와 학생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았고, 학생들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 앞으로 데려오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농구공을 맞은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괜찮냐’고 묻는 등 상태를 확인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수회 주무른 후 보건실에 가보라고 말을 한 점, 학생이 수업 도중 머리에 충격을 받은 경우 뇌진탕 여부 등을 판별하기 위하여 일부 신체 부위에 자극을 주어 정신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체육교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주변에 남학생들을 포함하여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있었고 피해자가 머리를 다친 상황에서 피고인이 체육교사의 지위에서 한 위와 같은 행동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²⁴⁾.

22)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23)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24) 광주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전주)2016노119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20872 판결로 확정.

2) 위력에 의한 추행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는 것에 대하여 평소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오던 피해자에 대하여 그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그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름이 끼치도록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고, 이어 나중에는 피해자를 꺼안기까지 한 일련의 행위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추행 성행을 앞서 본 추행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나 업무상 위력이 행사된 점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²⁵⁾.

추행이 신체부위와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다는 위와 같은 판례는 사소한 신체접촉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인용하기 좋은 판례이다. 물론 발로 10~12세 여아들의 음부를 추행한 사건²⁶⁾과 어깨동무를 한 사건의 추행의 정도가 같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다. 판례는 종목불상 전문체육강사가 14-15세인 피해자들을 합숙 중 객실로 불러 키스를 하거나 가슴, 허벅지 등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의 폭행, 협박에는 해당하지 않고 의사를 제압당한 상태에서의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²⁷⁾. 이와는 달리 학교 체육교사가 학생을 업무를 도와달라고 교무실로 부른 후 치마 아래 허벅지 등을 만진 사건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²⁸⁾. 씨름부 코치가 초등학교 씨름부 학생들에게 평소 나무막대기로 잦은 폭행을 하고, 숙소에서의 추행을 용이하게 한 사례도 발견된다²⁹⁾.

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판례는 학교 체육교사가 학교 강당에서 수업을 듣고 있던 여학생 2명(여, 16세)에게

25)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26) 대전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노348 판결.

27) 서울고등법원 2019. 4. 3. 선고 (춘천)2018노133, (춘천)2018전노9(병합) 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9도4908 판결에서 확정.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8. 14. 선고 2018고합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3. 19. 선고 2018노2293 판결.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 1. 16. 선고 2018고합60 판결.

서핑보드 신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손을 잡고, 엉덩이를 받치게 한 경우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반면³⁰⁾, 태권도 관장이 태권도를 전공하려고 하는 수강생(14세)에게 수강생들을 집에 데려다주는 차량 안에서 손을 잡아달라고 하여 손을 잡고, “외롭다 한 번만 안아달라”고 하여 포옹하여 준 사안에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³¹⁾. 또한 태권도 코치가 훈련 도중 다른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OO가 크다, OO 000 크지 않냐”라고 말하고 성기를 친 사건 또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되었다³²⁾.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³³⁾.

3. 스포츠분야 성폭력 사건 양형 분석

가. 양형사유 분석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고려하는 양형사유는 개개의 사안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스포츠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각 판결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별적인 양형요소들을 살펴보고 그 적정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30) 부산지방법원 2017. 4. 19. 선고 2016고단7694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1762 판결에서 확정.

31) 서울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춘천) 2018노49, (춘천) 2018 전노5(병합)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4186 판결에서 확정.

32) 인천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3고단6503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2561 판결에서 확정.

33)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1) 적극적인 특별양형가중요소의 판단 필요성

앞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스포츠분야에서의 성폭력 가해자의 종류는 크게 교사적 지위와 선후배 동료로 분류되고, 교사적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한 성폭력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보호자나 교육자로서의 지위와 본분을 망각한 채 특히 전문체육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학과 진로에 관한 생사여탈권을 무기로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위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스포츠 성폭력 판결에서 법원은 이러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양형사유에 반영하여야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양형인자와 관련하여 특별 가중요소로 고려되고 있는 것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다. 분석 판결들은 이와 같은 스포츠분야의 특성과 관련된 특별양형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거나 하나만 고려하거나 복수로 고려하는 등 사안마다 다르다.

청소년의 성 보호와 관련하여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오히려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가 가해자가 된 경우는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범행이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높아 특별양형가중인자로 판단되는 것이다. 13세 미만의 경우는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도 특별양형(가중)인자로 고려되고 있다.

또한 양형기준이 정의하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그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자체만으로 무거운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아청법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높은 법정형을 부과한 것도 같은 이유이다.

이에 대법원 양형기준 또한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특별양형(가중)인자로, 청소년에 대한 범행을 일반양형(가중)인자로 정하고 있다. 이때 특별양형인자란 일반양형인자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당해 범죄유형의 형량에 큰 영향력을 갖는 인자로서 권고 영역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인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어떤 인자를 특별양형인자로 설정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인데, 대법원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특별양형(가중)인자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13세미만인 경우에는

이중평가금지원칙에 따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가중요소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³⁴⁾.

분석 대상 판결 중에서 스포츠분야의 성폭력 특성을 반영하여 이러한 특별가중요소로서 고려한 판결들은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8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면서 특별가중인자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을 고려하였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로서 청소년인 학생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인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바른 인격을 형성하도록 지도하고 본을 보여야 할 책무가 있고, 청소년의 성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교사로서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호).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사로서의 책무와 법적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추행·간음하는 등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는바, 범죄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하였다.³⁵⁾

법원은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가중요소로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을 양형의 이유로 실시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중학교 코치였던 피고인이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제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차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³⁶⁾

피고인은 태권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그 태권도장의 관원들이었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적인 접촉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항소심에서는 각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판단하였다.³⁷⁾

또한 오히려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할 장소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는 특별양형인자인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의 ‘특별보

34) 윤덕경, 장미혜, 이미정, 김차연(2017),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2016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를 중심으로 별책-」, 여성가족부, 16면
 35) 광주지방법원 2017고합84 사건
 3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합104
 37)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노49

호장소에서의 범행'은 학교(교정, 교사 포함),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시설 또는 보호시설의 내부와 주변, 등하굣길,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 승강기 등과 같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그 장소에서 범행을 시도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은 학교 체육관에서 코치와 제자라는 인적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당시 만 10세에서 12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들이 향문에 손가락을 넣거나 다리 사이로 발을 넣어 음부를 문지르거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찍었으며 그 밖에 폭행, 강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법원은 이 사안에서 다수피해자 대상 계속적 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을 모두 고려하였다.³⁸⁾

특히 범행 장소 중 일부는 학생인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할 교육현장인 학교내이다.³⁹⁾

그런데 피고인이 초등학교 배드민턴부 코치로 근무하면서 배드민턴 부원인 피해자(여,10세)를 위력으로 성추행한 사건에서는 특별양형인자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폭행 협박이 아닌 위계 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이라는 감경요소만을 고려하였다.⁴⁰⁾ 또한 피고인은 태권도장의 관장이고 태권도장의 관원이었던 피해자(여,14세)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례에서도 특별양형인자가 없음으로 판단하였다.

다른 한편, 특별 가중요소로 판단하면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이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장애, 나이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하는 바,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만 13-14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그이 개인 골프 강사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어서 위 특별 가중 요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구체적으로 설시⁴¹⁾한 판례도 있다.

성폭력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장소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책임이

38)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296

3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합104

40) 대구지방법원 2012고합1165

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68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스포츠 성폭력 사건에서 법원은 적극적으로 이와 관련된 특별양형요소들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엄격히 처벌하여야 한다.

2) 스포츠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양형사유

가) 피해 회복의 어려움 반영

스포츠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는 성폭력 사건의 발생 시 성폭력 피해 그 자체를 넘어, 스포츠분야에서 자신의 직업과 꿈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이런 피해자의 상황을 양형 사유에서 고려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었다. 스포츠 성폭력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이러한 특수 상황을 적극적으로 양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피해자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나이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G, H는 다른 배구부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 다른 지역으로 갔고, 피해자 F는 배구선수의 꿈을 접었다.⁴²⁾

피해자 G는 이 사건으로 장래 사이클 선수로서의 꿈을 접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기까지 하였다.⁴³⁾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정신적 위계 관계 고려

스포츠는 그 특성상 지도자인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정신적, 정서적인 위계 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성폭력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 청소년들이 피고인과 사귀었다는 이유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사례도 있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그루밍(Grooming, 길들이기)’이다. 그루밍은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범죄의 폭로를 막으려는 목적을 갖고 신뢰를 쌓거나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대인관계 및 사회적 환경이 취약한 대상에게 다양한 통제 및 조종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수사 재판 과정에서 그루밍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⁴⁴⁾. 최근에는 이러한 방식의 그루밍(길들이기)에 대한

42) 광주지방법원 2017고합33

43)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92

44) 탁틴내일연구소(2017),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피해사례 분석, 아동·청소년 성범죄 속 그루밍(Grooming), 어떻게 볼 것인가 심포지엄 자료집 15면

심각성이 알려지고 있고,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피해자나 피고인을 이성으로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나 정식으로 사귀었다는 상황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데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태권도장 관장인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관원인 4명의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추행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00에게는 잠든 사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가슴 및 엉덩이를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강압적인 언행을 한 것은 없고 오히려 자유롭고 친밀한 관계로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과정에서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에 피해자들과 나눈 메시지 대화 등을 보면 특히 피해자 00, 00의 경우 피고인을 이성으로 좋아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00(여, 13세)은 피고인과 정식으로 사귀기도 한 점, 피해자 00, 00가 피고인을 이성으로서 좋아하는 마음이 아직 가치관이나 인격이 정립되지 않았고, 사리분별력이 약한 미성년자의 어린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들은 당시 13세 이상이었고 피고인에 대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위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판시와 같은 추행이나 성적 학대행위를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의 범행과 양형에 있어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이유있다고 보았다.⁴⁵⁾

다)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한 고정관념 탈피

스포츠분야의 특성상, 동성이 함께 운동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성폭력이 동성 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법원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를 양형사유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남자 청소년인 동성이어서 정신적인 충격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고, 단순히 동성이라는 이유로 그 피해를 경미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동성에게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더 수치스러워서 피해를 알리지 못하고 성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45)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노49

피고인은 오랜 기간 자신이 지도하는 체육관 남학생들을 상대로 사실상 무차별적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를 문제삼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그 범행의 내용, 횡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은 모두 남자 청소년들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과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⁴⁶⁾

피해자는 “남자로서 남자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수치스럽고 창피했으며,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였다”고 하여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도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반복되는 피고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⁴⁷⁾

3) 2차 피해와 관련된 양형사유

가) 주변 이해관계인들의 은폐 등 개입에 대한 엄격한 판단 필요

스포츠 성폭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수생활과 미래, 직업 등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피해자가 속한 관련 단체 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등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종사하고 있는 스포츠계의 선수들과 관계인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성폭력 사건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스포츠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처벌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관련 스포츠 종사자들의 선수 생활에도 현실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변 이해관계인들에 의한 개입, 은폐, 진술, 증언 등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관련 스포츠 종목의 학부모들도 자신들의 자녀들의 스포츠분야가 위축되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 측에 동조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이런 상황을 유도하고 개입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엄격히 법원이 양형사유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고합45

4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195

무엇보다도 피고인과 학교 측은 배구부원들에게 이 사건이 공론화될 경우 배구부가 해체될 수도 있음을 내비쳐 사실상 종전 입장을 바꾸게 강요함으로써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일부 학부모들도 피고인과 학교 측의 입장에 동조하는 한편, 나아가 피해자들을 질책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피해자들은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다른 배구부원들은 이 사건에 대하여 침묵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피해자들을 따돌리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행태는 비인간적이고 비교육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⁴⁸⁾

나) 피고인 선처 탄원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피고인은 자신의 감형을 위해 주변인들에게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기도 하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피고인에게는 방어권의 한 측면이지만, 피해자에게는 현실적으로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 성폭력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주변인들의 탄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배, 허벅지, 엉덩이, 음부 등을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3년, 4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다. 피고인은 60세에 가까운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들은 중학교 1학년(13세)이다. 특별 양형인자 가중요소는 5인 이상의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반복적 범행, 보호시설(학교) 종사자의 범행이고 감경요소는 처벌불원이다. 그런데 선고형을 결정하면서 ‘교사라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해임되어 교사직을 상실하였고, 30년 이상 성실하게 교사로 근무한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 제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⁴⁹⁾

하지만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여 엄격히 선고한 판결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일부 제자들로 하여금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며, 비록 피고인의 처와

48) 광주지방법원 2017고합33

49)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122

딸을 비롯한 가족, 제자, 학교장과 배구협회장 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교육자의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⁵⁰⁾

또한 피고인의 평상시의 직무 태도나 생활 태도는 피해자에게 가한 성폭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다.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C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하고 학생들을 위해 창의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평소의 생활태도나 직무수행이 훌륭하다고 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그러한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본질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⁵¹⁾

다) 처벌불원의 신중한 고려

스포츠 성폭력 판결에서도 처벌불원은 대표적인 감경사유이다. 그런데 스포츠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할 때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있는 성범죄의 본질상 “처벌불원”을 감경요소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며, 특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고, 나아가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회복적 사법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성범죄는 재산범죄와 같이 피해회복이 금전으로 가능한 것이 아닐 뿐더러, 현실에서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2차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합의를 반영하더라도 감경에 결정적인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신중

50) 광주지방법원 2017고합33에서 징역2년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되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를 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 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계속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을 위하여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라고 보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0시간 사회봉사과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 선고되었다.

5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합20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적자기결정권 외에 “건전한 성적 발육” 또한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특히 피해자가 어릴수록) 처벌 불원을 이유로 형을 감경사유로 할 때에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이때 “처벌불원”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에서 비롯된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과 피해자의 진정한 용서, 피해의 회복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175)⁵²⁾.

스포츠 성폭력 판결에서도 처벌불원은 대표적인 감경사유이고, 특히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감형이 되고 있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처벌불원의 조건을 섬세하게 고려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는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실시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스포츠 성폭력의 경우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감형요소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을 위해서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해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니라고 보아,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8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감경하고,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⁵³⁾

피고인은 자신이 사범으로 근무하는 태권도 도장의 제자로서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수차례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성희롱 등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던 바.....더욱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⁵⁴⁾

52) 윤덕경·박복순·황의정·김차연·정선영(2014). 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 과제(Ⅲ) -여성폭력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53) 광주지방법원 2017고합84 사건

54) 대구고등법원 2018노65, 원심인 2017고합390은 징역6년을 선고하였다.

4) 피고인 개인과 관련된 양형요소

가) 피고인의 연금 등 퇴직 후 개인 상황 등에 대한 신중한 고려

법원은 피고인 재직 중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양형을 고려하면서, 피고인이 이로 인해 퇴직 이후에 겪게 되는 연금 등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거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하는 형을 선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유를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배, 허벅지, 엉덩이, 음부등을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선고형을 결정하면서 ‘교사라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재직 중의 사유인 이 사건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제 42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급여제한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⁵⁵⁾

피고인이 초등학교 교사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는데, 재직 중의 사유인 이 사건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급여제한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난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⁵⁶⁾⁵⁷⁾

나) 피고인의 성적 만족 동기 고려 부적절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55)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122

5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고합35

57)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년~16년6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 1/2+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 1/3)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성적 욕구나 만족을 위하여 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여자 농구부 코치였고,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10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이 사안에서 코치와 제자라는 인적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당시 만 10세에서 12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들이 항문에 손가락을 넣거나 다리 사이로 발을 넣어 음부를 문지르거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찍었으며 그 밖에 폭행, 강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간의 관계, 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추행이 피고인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동기에서 저지를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일부 폭행 행위는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⁵⁸⁾

다) 감경요소로서 ‘공탁’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하는 “상당금액 공탁”의 의미는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이다. 이러한 공탁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고인 측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합의의 의사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있어 공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감경요소로 반영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여자 농구부 코치였고,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10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찍었으며 그 밖에 폭행, 강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이다. 피해자들 및 그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폭행행위는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합계 2,3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공탁하였다.⁵⁹⁾

58)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296

59)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296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감을 명하였다.⁶⁰⁾

나. 양형기준에 부합한 처벌

양형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하여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 양형 기준제도가 도입되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2018년 7월 현재 총 38개 범죄군에 한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있다⁶¹⁾. 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양형의 도출을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러한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아(법원조직법 제81의7 제1항) 법관은 판결문에 양형 기준제도에 제시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양형이유의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어(동조 제2항) 간접적으로 양형이유의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⁶²⁾.

스포츠 성폭력은 특히 피고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2차 피해발생의 우려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며 비난가능성이 높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교생활, 선수생활 뿐 아니라 직업과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하고도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언제든지 다시 가해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일상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스포츠를 하게 되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심각한 범죄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하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성폭력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하는 판결들이 있다.

스포츠 성폭력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처벌하고 재발을 예방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벌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한 미약한 처벌이 아닌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판결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6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고합2017

61) 김혜정(2018), 양형기준 준수 의미의 재고찰에 기초한 양형기준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 法曹 2018·10(Vol. 731), 129면

62) 김혜정, 위의 글, 132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 피해자(E, 12세)의 하의를 벗기고 다리사이로 몸을 넣고 성관계 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아래위로 흔들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상체에 입을 맞추었다. 또한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손으로 성기를 아래위로 흔들면서 만지다가 상의를 벗겨 나체인 상태로 태권도 품새를 하게 하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졌다. 또한 수회 피해자 F(6세)에게 강제로 바지를 내린 후 엉덩이와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엉덩이 배와 성기 사이에 입을 맞추고 강제로 옷을 벗긴 후 나체인 상태인 피해자를 껴안은 사안이다.

이와 같이 태권도 도장의 사범인 피고인이 그 태권도 도장에 다니는 동성의 제자들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2명을 수회에 걸쳐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특별가중인자는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고,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6년~16년 6월이다. 그런데 선고형은 징역 4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으로 그 하한을 일탈하였다.⁶³⁾

다. 항소심 감형 지양

많은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의 감형과 불이익금지원칙을 기대하면서 항소를 제기하고 있다. 법원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제출된 모든 양형자료를 참작하되, 변경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관대하게 항소심에서 감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스포츠 성폭력 판결 중에서 항소심에서 변경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대하게 감형한 사례들이 있었다. 이는 스포츠 성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하였을 때 바람직하지 않아 지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부모와 함께 피해자의 부모를 찾아가 사죄를 구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태권도 사범으로 있던 도장에서 10세, 13세에 불과한 자매들의 가슴, 엉덩이를 만지거나 손으로 쳐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 횡수,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판결에 따른 성폭력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수강명령을 이수하고 있던 와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점, 이 사건

63)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271)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과 그 부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안은 다수 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년~15년 20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피고인에 대한 정보공개 3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이 선고되었다.⁶⁴⁾ 그러나 그 후 항소심에서는 별다른 양형사유의 변동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고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되었다.(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공개명령이 면제되었고, 5년간 취업제한이 선고되었다.⁶⁵⁾

Ⅲ. 스포츠분야 폭력 사건 판례 분석

1. 스포츠분야 폭력 사건 판례를 통해 본 폭력 실태

가. 학교체육에서 높은 발생률

스포츠 폭력에 대한 판례 39건 중 세부내용이 불상인 1건을 제외한 38건 중 생활체육은 6건, 학교체육은 25건, 전문체육은 7건이다. 성폭력 사건과 같이 학교체육, 즉, 학교운동부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의 경우보다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는 지시 불이행, 태도불량, 단체생활에서의 잡음이나 불화, 순종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태도를 문제 삼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훈련 도중 원산 폭격 또는 ‘엎드려 뺨쳐’ 등의 체벌로 시작하여 중량목검이나 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구타로 이어지는 체육부의 폭력은 쉽게 상해의 결과에 이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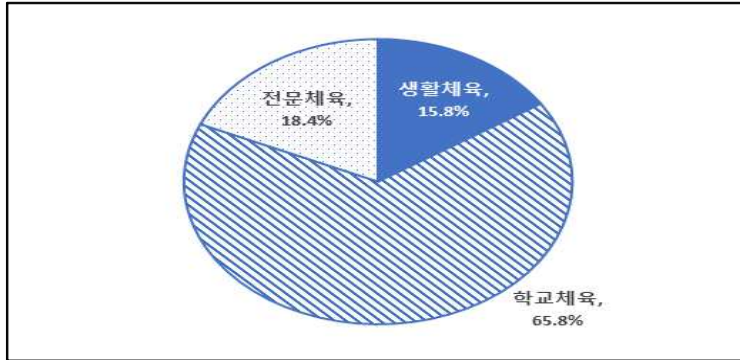
〈표 7〉 체육목적별 폭력 사건 수

(단위 : 건)

체육목적	생활체육	학교체육 (유치원포함, 수업, 학교운동부 포함)	전문체육	합계
사건 수	6	25	7	38

64)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141

65) 대구고등법원 2018노481



[그림 6] 체육종목별 폭력 사건 비율

스포츠 폭력에 대한 판례 또한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모두 다양한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태권도 종목에서의 피해가 7건으로 가장 높다.

〈표 8〉 전문체육 영역에서의 폭력 사건 수

(단위 : 건)

종목	골프	뇌성마비 장애인 특수경기	력비	빙상	수영	태권도	피겨스케이팅	합계
사건 수	1	1	1	1	1	1	1	7

〈표 9〉 생활체육 영역에서의 폭력 사건 수

(단위 : 건)

종목	쇼트트랙	수영	태권도	합계
사건 수	1	1	4	6

〈표 10〉 학교체육 영역에서의 폭력 사건 수

(단위 : 건)

종목	기계체조	농구	배구	수영	사이클	야구	역도	우슈	합계
사건 수	1	2	2	1	1	4	1	1	
종목	유도	정구	축구	탁구	태권도	투척	피구	핸드볼	
사건 수	1	1	2	1	2	1	1	3	25

나. 훈련 중 피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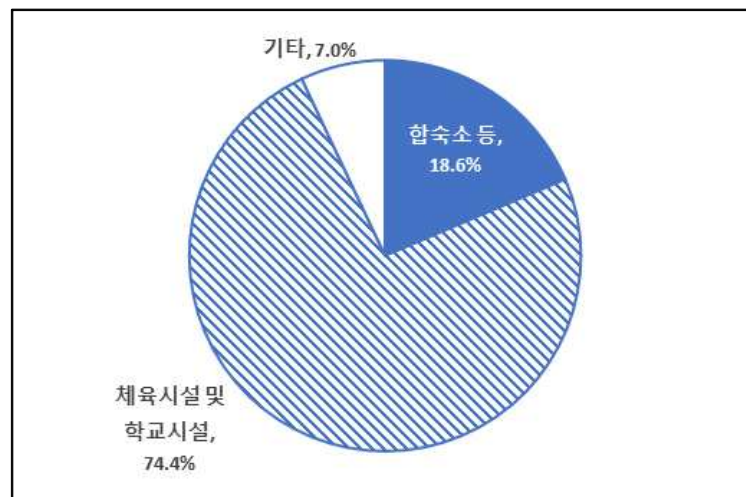
스포츠 폭력의 경우 대체적으로 체육시설에서 훈련 중 기합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핸드볼 코치가 웨이트 장에서 여중생 핸드볼 팀원(15세)이 다리를 제대로 들어올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70cm의 나무막대기로 허벅지로 수회 때린다거나⁶⁶⁾, 쇼트트랙 강사가 10세의 선수가 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선수대기실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하키스틱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려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는 사례⁶⁷⁾ 등이 그것이다.

〈표 11〉 스포츠 폭력 사건 발생 장소(중복)

(단위 : 건)

피해장소	합숙소 등	체육시설 및 학교시설	기타*
사건수	8	32	3

주 : * 주점, 숙소 밖 공터, 야산



주 : * 주점, 숙소 밖 공터, 야산

〔그림 7〕 스포츠 폭력 사건 발생 장소(중복)

6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고단3306 판결.

67) 대전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고단1530 판결.

다. 가해자의 위력적 지위

감독, 코치 등에 의한 폭력은 대체로 훈련 도중 잘하지 못한다거나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선수 또는 학생들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양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이는 때로는 은밀한 괴롭힘의 양상으로, 때로는 단체기합 중 모욕이나 폭언을 동반한 학대에 이르기도 하고, 선수들이 코치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진로 등에 불이익을 입게 될까 걱정하여 훈련과정으로 수인하게 되기도 하는 단순한 폭행이나 타박상을 넘어 선수생활이나 생명이 위태로운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와 같은 폭력의 양상은 중증장애인인 선수들에게도 흉포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장애인 체육교사가 휠체어 없이 거동이 불편한 선수들을 시합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먹, 콤파스, 나무로 제작한 심판 표지판 등을 이용하여 폭행하고, 휠체어에서 내려와 구르게 하고 발로 밟는 등의 학대를 하고, 교사의 도움 없이는 생활까지 불가능한 선수들의 훈련비를 갈취한 사례(68)가 그 예이다.

선배에 의한 폭력은 훈련뿐만 아니라 합숙에 있어서도 더 긴밀하게 생활을 공유하기 때문에 감독, 코치, 강사, 교사보다 더 심각한 양상의 폭력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숙소에서 가위 등 흉기로 폭행하거나 체육관에서 BB탄을 발사하고 쇠파이프(60cm)로 폭행하거나(69) 태권도 학과 선배들이 공동하여 후배들을 야산으로 끌고 가 각목으로 폭행하고 소위 ‘정신교육’을 행하는 등(70) 괴롭힘의 정도와 양태가 더 심각하고 불량하다.

〈표 12〉 스포츠 폭력 사건 가해자의 지위

(단위 : 건)

가해자의 지위	교육자*	선배	합계
사건 수	37	2	39

주 : * 교사, 감독, 코치, 강사, 사범, 강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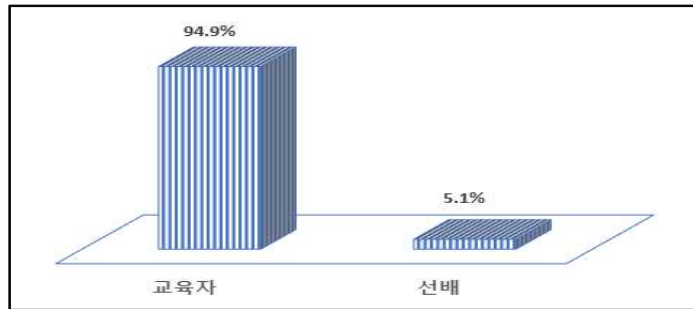
분석 대상 스포츠분야 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지위는 ‘교육자’인 성인이 가장 많은 데 반해, 피해자는 대다수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스포츠분야 폭력 사건

68) 인천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고단163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6노 739 판결.

69) 수원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고단4641 판결.

70) 수원지방법원 2011. 9. 16. 선고 2011고단3472 판결.

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수직적 위계 관계 하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 8] 스포츠분야 폭력 사건 가해자 지위

스포츠분야의 폭력 사건은 훈련 및 합숙 과정에서 단체 기합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사건별 피해자 수는 다수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분석 대상 사건들의 피해자 수를 살펴본 결과, 피해자가 복수(2명 이상)인 사건이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스포츠 폭력 사건 피해자 수

(단위 : 건)

단수	복수	불상	합계
17	20	2	39

라. 폭행에서 공동상해까지 피해 유형의 다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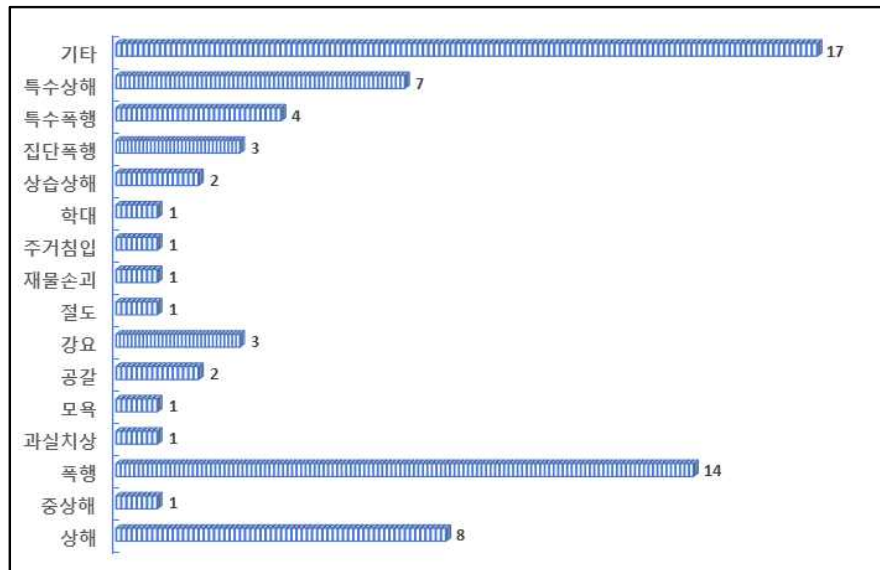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정신적 학대가 17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폭행(14건), 상해(8건), 특수상해(7건), 특수폭행(4건), 집단폭행(3건), 강요(3건) 순이다. 폭행 중 특수폭행은 4건, 상해 중 특수상해는 7건으로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이었다. 또한 드물게 싸이클부 선배들이 싸이클부 후배들을 집단 구타하여 공동상해를 구성하는 사건도 있었다⁷¹⁾.

71) 대구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노400 판결.

〈표 14〉 스포츠 폭력 사건 피해 유형(중복)

상해	중상해	폭행	과실치상	모욕	공갈	강요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학대	상습상해	집단폭행	특수폭행	특수상해	기타
8	1	14	1	1	2	3	1	1	1	1	2	3	4	7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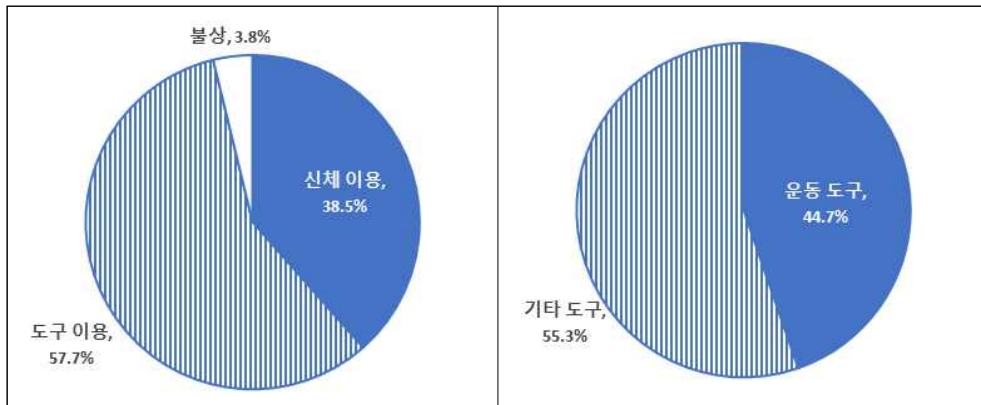
주 : *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정신적 학대



[그림 9] 스포츠 폭력 사건 피해 유형(중복)

마. 도구를 이용한 폭행

폭행 도구에 따라 사건의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신체를 이용한 폭행보다 도구를 이용한 폭행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구를 이용한 폭행 중에서는 운동 도구가 아닌 기타 도구를 이용한 폭행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림 10] 스포츠분야 폭력 사건의 폭행 도구(중복)

바. 상습적 폭행

폭행 횟수에 따라 분석 대상 사건을 나누어 살펴본 결과, 1회 폭행한 사건은 전체의 약 5%에 불과했다. 이것을 특정인에 대한 폭행이 장기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표 15〉 스포츠분야 폭력 사건의 폭행 횟수

(단위 : 건)

1회	2~5회	6~10회	11~15회	16~20회	20회 초과	“수회”	불상	합계
2	4	3	0	4	3	16	7	39

2. 스포츠분야 폭력 사건 판례 분석

가. 코치 등에 의한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⁷²⁾.

판례는 검도 코치가 폭행에 사용한 중량목검이나 야구부 투수코치가 폭행에 사용한

72)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야구방망이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⁷³⁾ 태권도부 코치가 사용한 하키채와 겔레자루도 마찬가지이다.⁷⁴⁾ 야구부 선배가 길이 30cm에 불과한 지름이 비교적 얇은 야구방망이를 등근 손잡이 부분으로 폭행하는 데에 사용했다면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부러진 야구방망이는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상 특수폭행죄를 구성하는 위험한 물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⁷⁵⁾

판례는 태권도부 코치가 정신봉이라는 이름으로 성기 등을 구타에 사용하여 출혈과 멍자국이 남은 상해사건에서의 길이 50~60cm의 몽둥이 등 70cm의 몽둥이, 길이 60~70cm, 굵기 및 지름 3-4cm의 나무몽둥이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⁷⁶⁾ 판례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감독이 골프훈련장에서 골프 훈련생을 1m의 골프채로 150회 구타한 경우 특수폭행죄를 구성한다고 보았다⁷⁷⁾.

판례는 피겨스케이팅 강사가 13세의 선수가 통증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자세를 교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양팔을 X자로 세계 잡아당긴 후 어깨 스트레칭을 계속 하게 하여 선수가 견갑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과실치상죄를 인정한 바 있다. 미끄러운 빙상장에서 선수를 지도하는 강사에게는 선수의 신체유연성에 맞는 세기와 방법으로 스트레칭을 하게하고 선수가 통증을 호소할 경우 훈련을 중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이다.⁷⁸⁾

판례는 핸드볼 코치가 체육관에서 17세의 훈련생의 머리와 배를 수차례 장시간 구타하여 뇌손상 등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아동학대중상해)를 인정한 바 있다⁷⁹⁾.

73)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11. 선고 2017고단5740 판결.

74) 청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7고단2833 판결.

75) 청주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노2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4220 판결에서 확정.

76) 인천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노4117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2561 판결에서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12. 11. 선고 2013고단1084 판결.

7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 9. 13. 선고 2018고합31 판결.

78)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5. 12. 4. 선고 2015고정23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노7611 판결.

79) 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노1653 판결.

나. 폭력의 상습성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⁸⁰⁾.

판례는 핸드볼 코치가 핸드볼 선수들을 체육관에서 수회에 걸쳐 머리를 포함한 신체 부위를 무차별 구타해온 사건에서 폭력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해자들이 처벌의사를 철회하여 단순폭행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⁸¹⁾.

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판례는 태권도 관장이 9세 아동이 체육관에서 “아이씨”라고 했다는 이유로 발로 차 심하게 구타한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한 바 있다. 또한 투척 코치가 훈련 중인 16세 여아를 빗자루로 엉덩이를 때리거나 나뭇가지(50cm)로 엉덩이를 때린 부분을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로 보았고, 휴대폰 모서리로 정수리를 폭행한 부분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았다⁸²⁾. 판례는 수영강사가 7세 아동의 이마를 10회 정도 때려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입힌 경우 신체적 학대행위로 보았다⁸³⁾. 또한 판례는 배구부 코치가 초등학교 훈련생(11세)에게 욕설을 한 후 뺨을 때리고 종아리를 찬 후 머리카락을 잡고 세워 뒤로 밀어 겁을 먹게 한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았다⁸⁴⁾. 판례는 수영코치가 실내수영장에서

80)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81) 대구지방법원 2016. 5. 4. 선고 2015노500 판결,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도7434 판결에서 확정.

82) 대전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고단2911 판결.

83) 울산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노1235 판결.

84) 부산지방법원 2018. 1. 8. 선고 2017고단5579 판결.

13세의 아동을 오리발이나 나무막대기로 엉덩이를 멧들게 하고,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밟은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⁸⁵⁾.

판례는 초등학교 기계체조부 코치가 운동을 그만두겠다는 피해자들을 몽둥이로 발바닥을 때리거나 하키스틱으로 엉덩이를 때리고, 교회에 못가게 하겠다면서 백핸드(양손 짚고 뒤로 덩블링하는 동작)을 1시간 시킨 경우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⁸⁶⁾. 스포츠 폭력이 훈련 목적을 빙자하여 가해자의 권력을 확인하는 행위를 넘어 스포츠를 그만 두거나 교회에 갈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스포츠분야 폭력 사건 양형 분석

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의 어려움 고려

스포츠분야에서 폭력이 발생한 경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중상해의 결과를 가져오고 정신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기도 한다. 결국 피해자에게 선 수 생명이 끝나게 되는 피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법원이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스포츠분야의 폭력의 경우에는 단순한 폭행 상해를 넘어 직업을 잃어버리는 결과도 가져오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체벌의 종류와 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신체적 상처가 적지 않아 보이고, 특히 피해자 E는 이로 인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바, 그 피해가 극심하여 죄질이 나쁘다.⁸⁷⁾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핸드볼팀 코치인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하에 있는 아동인 피해자 E의 머리 부위와 배 부위 등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 E를 뇌손상 등에 따른 의식불명상태에 빠지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고, 역시 자신의 보호하에 있는 다른 4명의 피해 아동들의 머리 부위와 배 부위등을 발로 걷어차

8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4. 19. 선고 2017고단161 판결.

8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5. 26. 선고 2016도678 판결.

8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103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피해자 E 측의 의사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⁸⁸⁾

나. 폭력을 대물림하는 관행 고려

최근에도 여전히 체육대학 안에서 열차려, 단체 오리걸음은 기본이고 거수경례와 함께 졸업 연도와 출신 학교, 이름을 외치면서 군대 전입신고 형태의 신고식도 하며, 군대식 말투를 쓰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속에서도 강요와 폭언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⁸⁹⁾. 이와 같이 스포츠분야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그 특징이 지도자와 선배들에게서 대물림되는 것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고, 이러한 현실이 판결에서도 반영되어 있는 사례도 있다.

피해자 G는 이 사건으로 장래 사이클 선수로서의 꿈을 접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스포츠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어린 나이부터 상대방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기본적인 예절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오로지 운동에만 몰두하고 성적 지상주의를 최우선시하는 학교 스포츠 문화와 체육지도자들의 스포츠 인권에 대한 낮은 인식과 수용태도, 운동부 내부의 학습된 폭력으로 인해 기강과 위계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명분으로 선배 사이에서 비인격적 대우와 폭력을 대물림하는 악습이 만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를 알고 있었지만 그 심각성을 과소평가하여 제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오랫동안 선배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와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해 오다가, 상급생이 되자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후배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당한 그대로 폭력을 답습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⁹⁰⁾

88) 서울고등법원 2017노1653

89) 2019.10.01. <https://news.v.daum.net/v/20191001205109254?d=y국립대> 체육관련학과에서 강압적인 군기 문화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이나 있었던 일 아닌가 싶지만 선배가 후배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거수경례와 신고식을 강요하고, 조금이라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 욕설과 열차려를 받아야 하는 식의 악습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깔때기 모양으로 잘린 페트병을 입에 문 학생. 누군가가 그 위로 막걸리를 들이붓습니다. 돌아가며 받아 마시다 구역질까지 하는데도[뭐야? 토했어?] 가혹행위는 계속됩니다. 다른 학과에서도 알 만큼 공공연하게 벌여졌지만, 대학 측은 익명 게시판에 폭로 글이 올라올 때까지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 논의는 없고, 대안이라며 내놓은 규정 역시 자율과 권고라는 말뿐이어서 악습을 끊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다. 피고의 장래성 유리한 양형 사유 고려 지양

법원은 스포츠 폭력 발생 시 피고인의 스포츠분야에서의 지위, 가능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폭력 가해자가 그 스포츠분야에서 이룩한 기존의 업적에 따라 그 양형이 달리 정해지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납득이 될 수 있는지, 스포츠 폭력을 억제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타당한지 의문이다.

피고인 A는 청소년 국가대표를 지냈고, 피고인 B는 10여개의 사이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장래 유망한 사이클 선수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우리나라 사이클 종목의 현실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대학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선수로 활동하지 않으면 선수로서의 생명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이번에 한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사 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⁹¹⁾

라. 신체적 접촉이라는 훈련과정의 특성 고려 신중

스포츠분야의 특성상 폭력이 발생하게 된 과정에서 연습 등에서 신체적 접촉이 전제되기 때문에 이를 양형에서 참작하기도 한다. 하지만 스포츠의 특성이 신체 접촉이 수반된다고 하여 그 폭력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평가가 완화된다면, 앞으로도 스포츠분야의 폭력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양형사유로 참작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어린 피해 학생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하지만, 이는 신체 접촉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농구 경기의 특성 및 고된 훈련 과정에서 지나치게 성적 및 목표 당성의 의욕이 앞선 나머지 훈육의 목적에서 우발적으로 가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⁹²⁾

90)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92, 피고인들이 같은 학교 사이클부 후배들인 피해자들의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거나 자신들에게 마사지를 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거나 이로 인해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의 성기나 젖꼭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안이다.

91)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92

92)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296

마. 처벌불원 의사 표시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스포츠분야의 폭력에서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스포츠분야에서는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 또는 주위의 상황 때문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에 대한 판단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판결에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신중하게 판단하기도 하였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 보고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에게 분명히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도1288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J 및 그 부친이 “9월 22일. 저는 그 날 저녁 감독님의 폭행이 아닌 훈계로 느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휩쓸리다 보니 본의 아니게 폭행이라고 했습니다. 감독님께 죄송하고 본의 아니게 일이 커진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감독님께서서는 저희만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의 안일한 생각에 감독님을 힘들게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다시 감독님과 졸업할 때까지 같이 야구하고 싶습니다. 감독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빨리 같이 야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시 한 번 도와주세요”라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후 경찰에 제출한 사실, 피해자 K 및 그 부친은 “처음 일이 발생할 때의 감정은 좋지 않아 안 좋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흘러 지금 생각을 돌이켜 보건대 감독님의 훈계를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이 이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위 각 사실확인서는 그 제목이나 본문 어디에도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언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 J는 법정에서 ‘자신은 당시 아버지가 쓰라는 대로 위 사실확인서를 쓴 것이고, 아버지가 왜 그렇게 쓰라고 시킨 것이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고 위 각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것만으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⁹³⁾

IV. 스포츠분야 성폭력·폭력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1. 의제강간연령 상황

우리나라도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의제강간을 형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즉,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는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 또는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형법 제305조)함으로써 의제강간 나이를 13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해당되는 의제강간 외에도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있다.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 대상 범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한다고는 하지만 강간이나 유사강간으로 판결이 났을 때의 적용이므로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때 적용된다. 그 외에도 아청법에서는 형법과 달리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도 강간으로 규정한다. 이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강간으로 규정하는 형법보다는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위계나 위력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위계나 위력, 폭행 또는 협박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자의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⁹⁴⁾.

외국의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을 아래 표와 같이 13세~16세 미만으로 되어 있다.⁹⁵⁾ 우리나라와 일본이 13세 미만으로 되어 있다.

대륙법계							영미법계	
한국	독일 ⁹⁶⁾	프랑스	중국	스위스	일본	오스트리아	영국	미국 ⁹⁷⁾
13세 ↓	14세 ↓	15세 ↓	14세 ↓	16세 ↓	13세 ↓	14세 ↓	16세 ↓	16세 ↓ (연방형법)

93) 청주지방법원 2018노2

94) 정은경 (2016). 의제강간죄 연령상황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7(2), 19-20면.

9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541호)) 검토보고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18.11

96) 독일은 14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보호하되,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해자의 양육·훈육·교육의 대상인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양육·훈육·교육 대상이면서 가해자가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97) 미국은 각 주마다 14세부터 18세까지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주는 16세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스포츠분야의 위계적이고 도제적인 환경에서는 폭행, 협박이 아닌 수단에 의한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열악한 관계에 있는 스포츠 분야의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제기간 연령은 상향될 필요가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2.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에 따른 쟁점목록을 통해 만13세 동의 연령 상향 등 관련 계획을 제시할 것을 질의하기도 하였다.

2. 스포츠분야 성폭력·폭력 상담 및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13세미만 아동까지 성폭력·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현실에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상담에서 사건처리, 재발방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사건 처리의 전 과정과 그 전후의 상담과 심리치료가 중요하다.

상담과 심리치료 전문가, 체육시설, 학교, 시도교육청 등 교육기관,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교육부·문화관광체육부 등의 정부 부처, 경찰, 검찰,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 등이 긴밀히 연계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특별법이나 기구를 만들 때까지 현재 존재하는 상담인력과 가해자 징계·처벌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정부 부처가 관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더라도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상담기구가 작동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나 징계가 가능하도록 조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육시설별로 마련하도록 하는 입법이나 행정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가 관여하는 시스템과 병행하여 체육시설단위별 상담 및 사건처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캐나다에서는 전국단위의 무료, 비밀 상담전화(Canadian Sport Helpline)가 개설되어 있다.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시도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의 위상 제고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한편, 아청법이 개정되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제34조제2항15호 신설) 시켜 스포츠분야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였다.⁹⁸⁾

98) 2018.2.13. 김민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4.2.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1.29.권미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3.7.유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여성가족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출하여 2019.10.31.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3. 시설 체육학원 규제 강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은 사전 등록이 필요한 체육시설업이고, 수영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체육시설업, 무도학원업 등은 신고가 필요한 체육시설업이다. 한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교육청에 미리 등록하여야 하지만 이 법에서 말하는 ‘학원’은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는 곳을 의미한다(제2조제1호). 이처럼 무도학원업을 제외하고는 체육을 가르치는 사설학원을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는 상태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행정관청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설 체육학원에서는 아동·학생들이 폭행·성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체육시설에서 교습하는 업(業)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시켜 신고하게 하여 체육교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동법에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폭행·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에 포함시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폭행·성폭행 방지에 관한 사항과 관련 예방교육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스포츠 기본법 제정

스포츠분야에서 발생하는 성폭력·폭력 사건은 가해자 개인의 일탈적 행위를 엄벌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성폭력·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은폐되는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즉, 스포츠 국가주의, 체육 권력, 메달 중심주의, 엘리트 스포츠 정책 등 성폭력의 발생과 은폐, 그리고 침묵을 강요하는 구조의 해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스포츠기본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 이 법에서는 “스포츠 고유의 가치”와 “생활체육 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한 체육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이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책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스포츠기본법에는 목적과, 기본이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스포츠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 시책

(성차별·성폭력 방지 및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성차별·성폭력 방지 및 조치에 관해서는 별도의 장으로 편제하여 상담에서 사건처리, 재발방지 조치까지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보편적 기본권으로서 ‘스포츠권’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에 기반한 스포츠 정책 체계(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 기존 관계법령의 개정 수준을 넘어선 별도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부와 국회에 스포츠 기본법제정을 권고하였다. 이 법에는 법의 목적과 이념을 통해 스포츠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법이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11조(법 앞의 평등/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31조(교육받을 권리), 제32조(근로의 권리),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6조(보건에 관한 권리) 등에 근거하도록 했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유네스코(UNESCO),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등의 스포츠 관련 현장에서 정하는 스포츠권에 근거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인 스포츠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음을 명기하도록 하였고, 육관계 법령을 총괄하는 모법 형태로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⁹⁹⁾

※ 일본의 “스포츠기본법” 전문

전문
스포츠는 세계 공통의 인류문화이다.
스포츠는 심신의 건전한 발달, 건강 및 체력 유지 증진, 정신적인 충족감의 획득, 자율심 그 밖의 정신의 함양 등을 위해서 개인 또는 집단으로 행해지는 운동 경기 그 외의 신체 활동이며, 오늘날 국민이 생애에 걸쳐 마음과 몸 모두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불가결한 것이다. 스포츠를 통해 행복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권리이며, 모든 국민이 그 자발성에 의해 각각의 관심, 적성 등에 따라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상적으로 스포츠에 친숙해, 스포츠를 즐기거나 또는 스포츠를 지지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어야 한다.
스포츠는 차세대를 담당하는 청소년의 체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타자를 존중하고 이와 협동하는 정신, 공정함과 규율을 존중하는 태도와 극기심을 길러 실천적인 사고력이나 판단력을 키우는 등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스포츠는, 사람과 사람과의 교류 및 지역과 지역과의 교류를 촉진해 지역의 일체감과 활력을 양성

99) 문체부 보도자료(2019.6.26.), 스포츠혁신위원회,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하고 인간 관계의 희박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사회의 재생에 기여한다. 그리고 스포츠는 심신의 건강 유지 증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장수 사회의 실현에 필수적이다. 운동선수의 부단한 노력은 인간의 가능성을 극한으로 추구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한 국제경기대회에서 일본선수의 활약은 국민에게 자부심과 기쁨, 꿈과 감동을 심어주고 국민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이들을 통해서 스포츠는, 우리나라 사회에 활력을 주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넓게 기여한다. 또한 스포츠의 국제적인 교류나 공헌이 국제 상호 이해를 촉진해, 국제 평화에 크게 공헌하는 등, 스포츠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완수한다.

그래서 지역에서 스포츠를 추진하는 가운데 뛰어난 스포츠 선수가 길러지고 그 스포츠 선수가 지역에 있어서의 스포츠 추진에 기여하는 것은 스포츠와 관련되는 다양한 주체의 제휴와 협동에 의한 우리나라 스포츠의 발전을 지지하는 선순환을 가져온다.

이러한 국민 생활에 있어서의 다면에 걸치는 스포츠의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스포츠 입국을 실현하는 것은 21세기의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불가결한 중요 과제이다.

여기에 스포츠 입국 실현을 목표로 국가전략으로서 스포츠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 법률을 제정한다.

5. 스포츠분야 성폭력·폭력 사건 엄격한 양형조사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에서 제시되는 개별적인 양형요소의 적정성과 반영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고민과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한 양형을 위해 인정하기 어려운 법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실행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수정되어야 하며 사회의 여러 집단들 간에 양형의 편차를 발생시킬 여지가 있는 요인으로서 ‘피고인이 고령, 상당 금액 공탁,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그 자체로 연령이나 사회계 등에 따른 양형의 편차를 유발할 수 있는 법외 요인들이기 때문에, 구금형의 판단 과정에서 판사의 지나친 재량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으로 ‘처벌불원, 사회적 유계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의 요인’은 판사의 매우 주관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박철현, 2012: 93).

예를 들어 앞서 스포츠분야의 폭력, 성폭력 판결에서도 동성 간의 성폭력이라는 점, 피고인의 퇴직 후 연금 수령에 대한 고려 등은 적절한 양형사유인지 문제된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의 절대다수가 3년 이하의 실행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합의를 통해 양형이 감경되거나 석방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지적과, 아동성범죄에 있어 감경의 사유가 가해자의 반성과 같은 태도와 분위기에 지나치

게 치중되고 있다는 것과 판사에게 주어지는 판단의 재량의 범위가 넓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가해자의 합의, 보상을 위한 노력, 반성, 뉘우침, 그리고 피해자의 용서 등 사건 당사자의 정서 상태가 판결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도 지적되고 있다(한창근 외, 2017: 89). 이처럼 위계적 관계에서 발생한 스포츠분야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 반영은 특히 신중하여야 한다.

스포츠분야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그 폐쇄성으로 인해 당사자만의 문제 이외에도 주변 사람들과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스포츠분야의 종목 특성상 진실한 피해자의 의견이 제대로 법원에 제출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한 판결에서는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였다 “당심에서 제출된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중학교에 진학하여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이 사건을 잊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으며, 어머니에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피고인도 구치소에 구금되어 벌을 받았으니 진심으로 피고인을 용서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 역시 법원조사관에게 ‘피해자 본인의 마음 상태가 현재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은 면하게 해주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서울고등법원 2016노793)”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도 반영이 될 수 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를 통해 진실한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탁틴내일연구소(2017),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피해사례 분석, 아동·청소년 성범죄 속 그루밍(Grooming), 어떻게 볼 것인가 심포지엄 자료집 15면
- 고은하 외(2005). 운동선수 구타 실태 조사 및 근절방안. 체육과학연구원.
- 교육과학기술부(2009). 학생선수 학습권 및 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운동부 정상화 대책. 학교운동부 정상화 대책 TF팀 회의자료.

- 김영미, 유정숙(2009). 운동선수의 성폭력 경험 실태 조사 및 성폭력 경험과 운동 생활 적응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8(5), 75-92.
- 김영인(2000). 대학 운동선수와 일반학생들의 사회조직망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3, 137-143.
- 김정명(1999). 청소년 인권의 사각지대: 체육특기생. 한국청소년학회지, 6(2), 21-40.
- 김혜경(2018), “피해자 관련적 양형인자에 대한 비판적 고찰”, 피해자학 연구, 2018 26권 2호, 한국피해자학회, 147-172.
- 남상우 외(2007). 스포츠에서의 성희롱 인식 차이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6(4), 21-40.
- 남상우, 이석호, 여정권, 박장선(2007). 스포츠에서의 성희롱 인식 차이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6(4), 117-127.
- 류태호 외(2010), 2010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 대학교 학생선수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 박철현(2012).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국제비교 : 한국, 미국, 영국의 양형기준에 나타난 형량의 비교.”, 한국치안행정논집, 8(4), 77-99.
- 윤덕경 외(2017),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2016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별책-」, 여성가족부, 16면
- 윤덕경·박복순·황의정·김차연·정선영(2014), 「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Ⅲ) : 여성폭력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명선 외(2008).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 중·고교 학생선수의 학습권, 폭력, 성폭력 실태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 이성철, 민병남(2009). 운동선수의 피학대 경험과 폭력에 대한 태도 및 폭력행동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8(5), 65-74.
- 정은경(2016), “의제강간죄 연령상향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27권 제2호(통권 제106호, 2016 · 여름)
- 조광민 외(2006).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 한창근 외(2017).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벌제도 : QCA방법론을 이용한 양형분석.“ 사회복지연구, 48(2), 71-95.

허현미, 황정임, 선보영(2008). 여성선수 성폭력에 대한 여성 지도자의 인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1(2), 401-421.

황정임 외(2007). 프로스포츠 팀과 직장운동부의 여성선수 권익실태 조사. 문화관광부.

황정임 외(2017).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부 록] 스포츠분야 성폭력·폭력 금지 관련 법제 현황

1. 스포츠 관련 정의 및 지도자 자격 조건 등 법제 현황

가. 스포츠 관련 정의

<p>국민체육 진흥법</p>	<p>제2조(정의)</p>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의2. "국가대표선수"란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5장에 따른 통합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지부·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	----------------	--------------------------------------------------------------------------------------------------------------------------------------------------------------------------------------------------------------------------------------------------------------------------------------------------------------------------------------------------------------------------------------------------------------------------------------------------------------------------------------------------------------------------------------------------------------------------------------------------------------------------------------------------------------------------------------------------------------------------------------------------------------------------------------------------------------------------------------------------------------------------------------------------------------------------------------------------------------------------------------------------------------------------------------------------------------------------------------------------------------------------------------------------------------------------------------------------------------------------------------------

		<p>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 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현금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p>
<p>생활체육 진흥법</p>	<p>제2조(정의)</p>	<p>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체육종목단체"란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민생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5.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p>
<p>학교체육 진흥법</p>	<p>제2조(정의)</p>	<p>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4.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5.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6.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스포츠강사"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말한다. 8. "학교체육진흥원"이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 정책개발, 연구 등을 실시하는 조직을 말한다. </p>

나. 체육지도자 자격조항

국민체육 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p>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p> <p>③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4조(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p>① 초등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스포츠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p> <p>②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할 수 있다.</p> <p>③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사로서의 자질 2. 복무 태도 3. 학생의 만족도 <p>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③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 교사를 둘 수 있다.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시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다. 폭력 관련 피해자보호 및 사건처리

국민체육 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올림픽대회, 장애인 올림픽대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와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원로 체육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법 제14조제5항 전단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고 및 상담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신고 및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 것 3.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는 사람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칸막이 및 방음 시설을 설치할 것
국민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3(신고 및 상담 사업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5항 전단에 따른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체육단체와 그 지부 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

		<p>인이나 단체</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 부 운영 등)	<p>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p> <p>②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p> <p>③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학습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학교의 장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p> <p>⑤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p> <p>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제13조의2(여학 생 체육활동 활성 화 지원)	<p>①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④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체육 교재,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p> <p>⑤ 제2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p>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학생선수 를 위한 기숙사의 운영)	<p>① 학교의 장이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숙사(이하 "학생선수기숙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습시설(책상·의자·컴퓨터), 휴게실, 욕실, 침실, 화장실, 세탁실, 식당, 주방 등을 갖추는 것 2. 학생선수기숙사 관리를 전담하는 교직원을 둘 것 3. 여학생인 학생선수가 학생선수기숙사에 입사(入舍)하는 경우에는 여학생의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여성 교직원을 둘 것 <p>②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기숙사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선수기숙사 생활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학생선수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p>

	제8조(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p>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학교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 준수 여부 및 기본지침과 계획 내용의 연관성 2. 학교 체육활동의 계획 준수 여부 3. 계획 시행에 따른 여학생 체육활동 진흥 현황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초·중등 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의2(재심 청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 육법 시행령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 청구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징계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징계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징계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p>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⑤ 징계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p> <p>⑥ 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의 정본을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퇴학조치의 원인 4. 결정내용 5. 결정의 이유 6. 결정한 날짜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p>①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또는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초등 또는 중등 교원 중 2명 2. 해당 지역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3.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는 자 5. 교육감 관할 구역 안의 학교 학부모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6. 청소년 관련 단체나 청소년 상담기관의 상담전문가 또는 의료기관의 정신건강 의학과 의사 <p>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p> <p>④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p>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p>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개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징계조정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p> <p>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퇴학 조치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퇴학 조치에 관여한 경우 <p>⑥ 청구인은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계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p> <p>⑦ 위원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p>

		<p>심사·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p> <p>⑧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⑨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제2조(정의)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p>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기능)	<p>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p> <p>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p> <p>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p>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8조(대책위원회의 구성)	<p>①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p> <p>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p> <p>2.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제1호의 위원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p> <p>3.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또는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p> <p>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 및 이에 따른 상담 또는 심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p> <p>5. 판사·검사·변호사</p> <p>6.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p> <p>7.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p> <p>8.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p> <p>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장관이 된다.</p> <p>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는 등 안건 심의를 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⑦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p>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검사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p>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라 조사·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⑤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p>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p> <p>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자치위원회 회의 구성·운영)</p>	<p>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p> <p>②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③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p> <p>④ 그 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심의위원 회의 구성·운영)</p>	<p>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p> <p>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p> <p>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피해학생 의 보호)</p>	<p>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p>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p> <p>②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p> <p>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 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1. 삭제 2. 삭제</p> <p>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p> <p>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p>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p> <p>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p>

	<p>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p> <p>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p> <p>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p> <p>⑤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p> <p>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p> <p>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p> <p>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17조의2(재심 청구)	<p>①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학교의 장이 제17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p> <p>③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p> <p>⑤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3항에 따른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제2항에 따른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제21조(비밀누설 금지 등)	<p>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p>
고등 교육법	제13조(학생의 징계)	<p>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p> <p>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p>
교육 공무원법	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p>①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에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징계위원회의 종류·구성·권한·심의절차,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이나 기피(忌避)에 관한 사항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징계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징계의 의결은 무효로 한다.</p>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p>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은 그 바로 위 감독청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한다.</p>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p>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2. 스포츠분야 성폭력 금지 관련 법제 현황

가. 형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 강간 등)	<p>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제4조(특수강간 등)	<p>① 훔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p>
	제6조(장애인 에 대한 강간·강제 추행 등)	<p>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p>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p> <p>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p>
	제7조(13세 미만 의 미성년자에 대 한 강간, 강제추 행 등)	<p>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p>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p>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p>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p>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p>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p>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p>

	<p>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p>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p> <p>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p> <p>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p> <p>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p> <p>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p> <p>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p> <p>2. 제9조제1항의 죄</p> <p>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p> <p>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p>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p>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p>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p>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p>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p style="text-align: center;">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p>	<p>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p>	<p>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p>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p> <p>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p>	<p>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p>	<p>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공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p>	<p>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강간 등살인·치사) ①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p> <p>②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p>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p>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p> <p>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p> <p>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p> <p>2. 제9조 및 제10조의 죄</p> <p>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p> <p>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p> <p>2. 제10조제1항의 죄</p> <p>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p>

라. 아동복지법

아동 복지법	제3조(정의)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p> <p>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p>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p>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스포츠분야 폭력 금지 관련 법제 현황

가. 형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p>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p>	<p>제2조(폭행 등)</p>	<p>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p>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p>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p>	<p>제3조(집단적 폭행 등)</p>	<p>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또는 제369조제1항(특수손괴)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제2항(강요)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p>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p>	<p>제6조(미수범)</p>	<p>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 제255조, 제314조, 제315조, 제335조, 제337조(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제340조제2항(해상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p>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하.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4의2.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이란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4의3.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이란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한 자를 말한다. 5.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 6.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7.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보호처분"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9.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말한다. 9의2. "가정위탁지원센터"란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말한다.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라. 민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p>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p>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60조(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학생선수 인권의 현주소】

인권실태 전수조사와 스포츠분야 (성)폭력 판례분석 결과 발표 토론회

[패널 토의]

판례가 되지 못한 스포츠분야 폭력· 성폭력 사건과 피해자들을 생각하며

함은주

(문화연대 집행위원, 사회체육학 박사)

판례가 되지 못한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사건과 피해자들을 생각하며

함은주 (문화연대 집행위원, 사회체육학 박사)

■ 시작하는 글

지난주, 체조협회 임원 김OO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판결에서 승소하여 가해자에게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난 4년 여간 겪은 피해자의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면 가해자에게 부과된 벌의 결과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가볍다고 생각되어 내가 더 억울할 지경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올림픽 금메달 딴 기분이다. 몸과 맘이 재가 되었는데도 티 안 내고 살려고 애쓰는 내가 불쌍했는데 법적으로 인정해줘서 이 나라가 고마워진다’고 했다는 전언이다.

그는 가해자에 대한 고소가 불기소 처분을 받아 재판 진행조차 할 수 없었고 심지어 검찰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겪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했었다. 이번 승소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성폭력이 인정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피해자의 명예 훼손에 대한 판결을 받은 것이었다. 피해자 자신이 겪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피해 중 아주 작은 부분(물론 중요하지만)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의 경우, 지속해서 피해를 보아 오다 3년이 지나서야 대한체육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3년이 지나 고소장을 접수했고 공소시효 완료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승소한 명예훼손 고소 건도 지난해 7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항고 과정을 통해 올 4월 내려진 재기 수사 명령의 결과였다. 현재 피해자는 올해 4월 상습강간 미수와 강제추행으로 가해자를 재고소한 상태이다.

2018년부터 여성인권진흥원에서 꾸려진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본 건을 지원하면서 가

장 안타깝고 아쉬웠던 점은 피해자가 처음으로 피해를 신고하고 호소한 대한체육회에서 제대로 조사와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때 제대로 조사와 징계가 이루어졌다면 적어도 불기소 처분으로 재판까지 가지도 못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길게 이 사례에 대해 소개하는 이유는 스포츠분야의 폭력·성폭력 사건이 판례가 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리는지를 설명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를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한 첫걸음을 떼기도 쉽지 않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신고하고 처리하는 첫 번째 단계가 이후의 법적 처벌을 위한 여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으로 실시한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사건 판례분석 및 구제 방안 연구’는 스포츠 영역에서는 쉽사리 찾아보기 어려운 희소하고 중요한 연구임은 틀림없다. 연구보고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법원이 가지고 있는 스포츠분야의 폭력·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 정도와 현행법의 한계, 문제점을 파악하고 입법적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유용할 자료로 기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본 연구가 스포츠분야의 폭력·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입법과제의 도출에 기여할 것인가에는 연구의 대상, 결과 분석, 제안의 몇 부분에 대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 기소되어야 판례도 있다.

앞서 소개한 사례에서도 피해자는 고소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의 과정에 이르지 못했다. 이와 달리 2018년에 촉발된 조OO 사건의 경우에는 폭력 사건에서부터 성폭력 사건에 이르기까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기소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스포츠분야의 폭력·성폭력 현실을 토대로 한 입법적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법에 대하여는 문의한이나 마찬가지지만 법의 실현은 정의의 실현이고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정의가 도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해가 명약관화 함에도 재판기회조차 가지지 못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판례분석과 함께 스포츠분야에서 불기소된 폭력·성폭력 사건의 유형 분석이 함께 진행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 처벌불원 - 스포츠분야의 구조, 그리고 카르텔

보고서에 의하면 처벌불원은 스포츠분야의 폭력·성폭력 사건 모두에서 대표적 감경 사유이고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감형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하여 인정하라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불원은 스포츠분야의 폭력·성폭력의 발생구조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가해자의 위력적 지위와 직업적 진로나 상급 학교 진학에 대한 영향력, 위계적이고 폐쇄적 훈련 방식과 문화 등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본 연구의 양형 분석에서 볼 수 있었던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같은 시스템 안에 있는 주변인들이 사건에 개입하여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2차 피해를 발생시키며 결국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청하게 하는 이런 구조, 아니 카르텔은 핵파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는 피해자들의 입을 막아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는 원인이 된다.

지난 4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최로 열린 2019 국제심포지엄 “스포츠 #미투, 국제적 현황과 대응”의 발제자인 마이크 하틸 교수는 라커룸, 고립적 훈련 환경, 이동이 잦은 대회 시스템(자동차나 숙박업소 이용이 잦을 수밖에 없는)과 같은 스포츠분야의 상황 및 기회요인들과 아동기부터 지속해서 많은 훈련 시간을 함께 하며 쌓게 된 신뢰, 가족과 같은 관계 설정, 충성심을 중요시하는 등의 관계문화 등을 스포츠계 성폭력이 발생하는 환경 및 사회문화 구조로 꼽았다.

특히 지도자의 권한이 영향을 행사하는 스포츠선수의 선발 과정, 스포츠를 하는 자녀에 대한 부모와 가족의 헌신과 투자, 스포츠의 규칙과 팀 내 규정 등을 기준으로 하는 엄격한 규율 제도 등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침묵과 은폐를 낳는 배경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기조 발제자인 캐나다의 커비 교수는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구조적 배경으로 선수에 대한 권한이 있는 직위에 남성이 더 많다는 점과 선수들이 거의 또는 아예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스포츠계의 권위적 문화를 지적했다. 또한, "스포츠계 성폭력 대책을 일부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 만들기보다는 스포츠 시스템 전체의 변화가 이루어져

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스포츠분야의 폭력·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의 구조와 패러다임의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입법과제가 도출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앞서 진행한 ‘학생선수 기숙사 실태조사 결과 보고 토론회’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근본적인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이를 다른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의 1차부터 7차까지의 권고문을 참고).

■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을 가진 스포츠 폭력·성폭력 사건처리 허브시스템의 구축

연구보고서에서는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관련 입법과제 및 실효적인 구제방안으로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상담 및 사건처리 시스템에 관한 법 제정’과 ‘체육시설별 상담과 사건처리 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지난 4월, 1차 권고를 통해 스포츠 성폭력과 아동·청소년 학대 등 구조적 인권침해 상황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및 실행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다.

특히,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을 가지고 체육계 내부의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신고 및 구제 절차와 명확히 구별되고 가해자와 그 주변 이해관계자 등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라는 권고를 토대로 문체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기구를 구축하려 노력 중이다. 또한 국회에서는 이미 폭력·성폭력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과 스포츠 폭력·성폭력 처리시스템을 담당할 독립적 기구의 설립을 위한 법안이 심의 중이다.

이러한 권고와 노력은 기존 대한체육회의 ‘클린스포츠센터 내 스포츠인권센터’가 형식적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고 이로 인해 어린 피해선수들이 장기간 반인권적, 반인륜적 침해와 고통에 대한 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와 독립성과 전문

성, 책임성이 결여된 탓에 스포츠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있어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근거가 되었다.

본 보고서의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상담 및 사건처리 시스템에 관한 법 제정'과 '체육 시설별 상담과 사건처리 시스템의 구축'하고 아울러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의 위상을 고려하라는 제안은 스포츠분야, 즉 체육계의 구조와 인식 그리고 현재 전개되고 있는 여러 상황이 고려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 나가며

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행동의 기준을 제시하여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기능, 국민의 권리 내용을 분명히 하여 권리 침해를 제재하고 보호하는 기능, 범법자의 처벌을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 주는 기능을 한다고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제도적 장치와 입법과제가 범법자의 처벌에 치우치지 않고 스포츠분야에서 공정한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근원적 법의 기능이 실현되는 방향이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토론자가 언급한 것 외에도 다양한 스포츠 현장의 문제의식과 현실 등을 더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와 입법과제가 도출되기를 희망한다.



【학생선수 인권의 현주소】

인권실태 전수조사와 스포츠분야 (성)폭력 판례분석 결과 발표 토론회

[패널 토의]

판례로 재확인된 스포츠분야 폭력· 성폭력의 특수성과 구제방안 모색

원민경

(법무법인 (유)원 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

판례로 재확인된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의 특수성과 구제방안 모색

원민경 (법무법인 (유)원 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

1. 판례 연구의 시사점

토론자는 이번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사건 판례분석 및 구제방안 연구(이하 ‘판례 연구1’)로 약칭)에서 수집·분석한 최근 3년간 선고된 164건의 스포츠 폭력·성폭력 판례의 주요 내용을 통해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와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년 전국 중고등학교 남녀 학생선수 1,1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선수들이 매우 높은 비율로 폭력·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구제대책이라는 명목 하에 마련된 시스템들이 거의 작동하지 않던 중에 발생했던 많은 개별 피해 사례를 접하고 다시 한 번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마저도 폭력·성폭력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바로 그 시기에, 수많은 피해자가 생활체육, 학교체육, 전문체육을 가리지 않고 피해를 당하고 있었고, 가장 주요한 피해 장소가 바로 합숙소와 체육 시설이었다는 이번 판례 연구를 통해 다시 한 번 기존에 마련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스포츠 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을 혁신할 필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1) 본 판례연구는 시의 적절하게 기획, 진행된 연구로 위 연구를 통해 생활체육, 학교체육, 전문체육 전반에 걸쳐 발생한 스포츠 폭력·성폭력 실태를 면밀히 확인할 수 있어, 이후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2. ‘스포츠의 폐쇄성’이 낳고 키워 온 스포츠분야의 폭력·성폭력

스포츠분야의 폭력·성폭력이 2000년대 들어서서 처음으로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서고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대응책을 주문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시도교육청, 대한체육회 등이 실태조사, 상담 및 신고 접수, 인권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왔지만, 여전히 ‘폐쇄성’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있던 스포츠분야는 지속해서 폭력·성폭력 피해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전문체육 분야에서는 상급 학교나 직업적 진로를 이용하여 폭력·성폭력이 행해졌고, 절대적인 힘과 권력의 우위를 이용하여 벌어지는 폭력·성폭력 피해 상황에서 학생선수들은 결코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었던 구조가 바로 우리 스포츠의 현실이었다. 불행히도 새로운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기 이전인 지금, 판례연구에 소개되었던 피해와 유사한 피해가 현재 진행 중일 수 있고 새로운 피해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적인 구제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하겠다.

3.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의 특수성과 구제방안

이번 판례 연구에서는 단기간에 많은 분량의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판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결론적으로 [입법과제]로 (1) 성폭력 범죄 전반의 입법론적 체계 재구성, (2) 의제 강간 연령 상향, (3) 스포츠분야 성폭력·폭력 상담 및 사건처리 시스템에 관한 법 제정을 제안하고, [실효적인 구제방안]으로 (1) 체육 시설별 상담과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2) 피해자 중심의 상담과 사건처리, 법 해석의 필요성, (3)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사건에서 엄격한 양형 조사를 제안하고 있다.

토론자는 스포츠분야의 폭력·성폭력 사건을 상담하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기구와 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연구팀의 결론과 기타 구제방안들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에서 서 있다. 그러나 연구팀에서 실효적인 구제방안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체육 시설별 상담과 사건 처리 시스템 구축 제언과 관련하여서는 그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인바, 이하에서는 2019년 4월에 발표된 스포츠혁신위원회 1차 권고문²⁾을 중심

으로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혁신위’)는 빙상종목 국가대표 조 모 코치의 선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2019년 2월 11일 출범한 뒤 스포츠분야 인권 보호와 증진 방안, 국가 스포츠 정책의 체계(패러다임)를 혁신하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스포츠분야의 성폭력과 아동 학대 등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기존의 유명무실한 선수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시스템을 뛰어넘는 제도적 기제를 마련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필요한 개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혁신위는 1차 권고 당시 국내 스포츠분야의 성폭력, 신체적·언어적 폭력(과 학습권 침해) 등 인권침해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으나, 다양한 스포츠 현장에서 성폭력 등이 발생할 때 가해자에 대한 조치 및 피해자 보호 역할에 대한 일차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한체육회와 산하 경기단체 등 체육계 내부의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기존 정부와 체육계의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을 전면 혁신하여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혁신위는 (폐쇄성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의) 체육계 내부의 관련 절차와 명확히 구별되는 스포츠 성폭력 등의 신고, 접수,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이를 위해 독립성·전문성·신뢰성을 갖춘 별도의 ‘스포츠 인권 기구’를 설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권고는 본 판례연구에서 제안한 ‘스포츠분야 성폭력·폭력 상담 및 사건처리 시스템에 관한 법 제정’에 대한 제언과도 일정 부분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스포츠 미투’로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킨 사건들이 모두 체육계 내부 시스템에서 신고, 처리, 해결되지 못하고 피해자 홀로 장기간, 지속해서 진행되는 피해를 감당하다가 외부에 알려졌다다는 점에서 체육시설은 물론이고 대한체육회 등 체육계 내부의

2) 스포츠혁신위원회 1차 권고문(2019. 5. 7. 발표) 참조. 스포츠혁신위원회는 3개 부처(교육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문경란 위원장을 비롯, 15인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여 ‘스포츠는 인권이다’는 IOC 헌장을 기본으로 총 7차에 걸쳐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권고문을 발표하고, 현재 권고 내용(이행 과제)에 대한 이행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절차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자율)성, 전문성, 신뢰성을 갖춘 별도 기구의 설치, 운용은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피해자를 구제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스포츠분야의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는 단순히 개인적인 범죄나 일탈이 아니라 기존 국가주의적·승리 지상주의적 스포츠 체계(패러다임)에서 비롯되는 구조적·제도적 차원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바, 독립성·전문성·신뢰성을 갖춘 별도 기구의 설치·운용과 함께 스포츠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스포츠가 민주주의 학습과 기본권 존중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여야 스포츠분야의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선수 인권의 현주소】

인권실태 전수조사와 스포츠분야 (성)폭력 판례분석 결과 발표 토론회

[패널 토의]

스포츠분야 성폭력 판례분석 토론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스포츠분야 성폭력 판례분석 토론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1. 스포츠분야에서 성차별적 문화

스포츠분야의 성차별적인 문화는 ‘스포츠는 신체 활동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이 주도하는 분야’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그래서 스포츠분야의 인적 자원이나 권력 구조가 성별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여성이 조직 내 의사결정 참여 등에서 배제 혹은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스포츠분야의 성폭력 사건들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여성 선수, 가해자는 남성 지도자 또는 선배선수이고, 어린 시절부터 지속되었으며 훈련과 관련된 장소에서 일어났으며, 선수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폭력(성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된다. 이러한 사건의 특성으로 가해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침해와 폭력을 행사했고, 학생운동부 시기부터 시작되는 폭력과 성폭력이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는 점을 통해 가해자가 폭력과 성폭력을 선수 통제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2010년부터 2년마다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최근 실시한 2018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경험이 있는 선수는 국가대표선수 1.7%, 일반선수 2.7%로 나타났으며 가해자는 주로 남성 지도자와 선배선수로 지목되었는데, 여기에서 성폭력 발생이 선수의 일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와 선배들이 가해자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처럼 성폭력의 발생 원인이 성차별적인 문화에서 기인하며, 성별에 따른 위계는 여

성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고, 성별 권력과 보호·감독 관계의 권력 구조에서 통제받을 수밖에 없는 종속적 위치에 놓인 여성 선수의 경우에는 성폭력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폭력과 성폭력이 발생하더라도 조직 내에 피해자를 지지하고 조력할 수 있는 주변인의 인식 변화와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스포츠분야에서 성평등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스포츠분야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및 성폭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역할 고정관념, 성적 괴롭힘에 대한 인식, 지도자와 선수의 관계(그룹링 포함), 지도자의 통제와 관리에 대한 인식, (성적)괴롭힘에 대한 조직문화, 관리자의 대응 체계, 성폭력 실태(피해 경험, 목격 경험 등), 성폭력 대책에 대한 요구 등을 포함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문제분석을 통해 실행계획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프로그램에서 살펴볼 수 있는 문제점은 선수, 지도자, 관계자(직원, 관리자, 임원 등)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경우에, 선수는 선수 등록 시 의무적으로 15분간 성폭력 예방교육 동영상 시청해야 하고, 선수로 등록된 후에도 인권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받을 기회가 제공된다. 다만 이 경우에 동영상 시청이 선수등록 과정의 필수사항이지만 내용 숙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성이 높지 않다.

대한체육회 2018년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포츠 환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강사의 교육내용에 대한 문제, 선수 휴식 시간을 활용한 교육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 등이 제언으로 있었다. 이는 교육내용의 내실화와 선수 대상 교육시간 정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도자는 선수에게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도자의 인식과 태도는 선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포츠 지도자 입문 과정에서 스포츠분야의 인권 가치를 학습하고 인식시키는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도자 연수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성평등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은 부재하다. 스포츠 지도자의 연수 교육의 총 교육 시수에서 스포츠인권 교육은 1%대이며,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은 1%도 미치지 못한다. 성평등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은 교육 시수에 아예 배정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스포츠 지도자로 입문하는 과정에서 인권 감수성 및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선수지도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성폭력, 성희롱 사건이 쉽게 발생하고 사건 발생 시에 지도자의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스포츠분야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의 문제는 사건 발생 시부터 사건처리 과정과 피해자의 일상회복까지 문제에 참여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조직 내 의사결정권을 가진 남성이 다수라는 점이다. 이는 젠더 기반 폭력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스포츠분야의 전 영역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스포츠 성폭력 사건 판례분석에 대한 의견

- 성폭력 사건의 (형사) 유죄판결 87건을 분석한 것으로, 판결에서 대체로 보이는 특징적인 점이 있다. 훈련의 강도가 높은 전문체육 분야에서 사건이 많고 어린 시절부터 배우게 되는 (일상적인 자기방어 훈련으로 인식되는) 태권도 영역에서의 피해가 다수이고, 피해자의 다수가 학생운동부 혹은 어린 시절부터 운동을 시작한 선수들이고, 그 피해 기간은 피해자 스스로 성폭력이라고 인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기도 하고 피해 고발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기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하는 경향을 보인다.
- ‘밀착된 관계에서 체육 교사나 감독, 코치의 신체적 접촉은 추행과의 경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 남용되기 쉽다’며, ‘일상적으로 체육 교육의 기회를 이용하여 불필요하게 어깨나 팔, 손 등을 자주 만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분석하고, 판례에서는 학생들의 주관을 중시하여 추행을 구성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판례 태도를 분석했다. 하지만 무죄판결이나 불기소 처분을 한 사례들에서는 학생들의 주관을 중시하기보다 가해 행위자의 교육과 훈련의 과정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그렇다면 가해자 ‘교육과 훈련의 과정’보다 피해자(학생) ‘주관’을 더 중시하는 판단의 근거

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유사한 사례들에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중요한 분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판례를 통한 스포츠분야의 실태와 현황, 특성 등을 제시한 부분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다만, 재판부가 판단한 근거를 분석하여 향후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재판부가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했는지, 성폭력 관련 법조를 적절하게 적용한 것인지, 피해자의 진술이 어느 정도 수용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여 판단 근거의 합리성을 제시하여 유사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고려할 지점을 제안한다면 더욱 의미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들은 피고인의 사정(초범, 19세 미만, 의도와 고의 없음, 이종의 불이익 등)과 주변인의 선처 탄원, 피해자의 합의(처벌불원) 등이다. 그래서 대체로 감경 사유로 인정되어 감형되어 선고되거나 항소심에서 감형된다. 하지만 분석글에서도 주장하듯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대한 확인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성년자이거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등의 경우에는 합의하게 되는 과정과 배경, 의미의 이해 등을 확인해야 한다. 법원은 양형 조사관을 통해 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판부가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한 선고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스포츠분야 성폭력 관련 입법과제 및 실효적인 구제방안으로 제시한 내용 중 '의제 강간 연령 상한'에 대한 의견에 대해선 조금 다른 견해가 있음을 밝힌다. 한국의 성폭력의 입법체계는 복잡하기도 하고 나이를 3단계(13세 미만, 13세-19세 미만, 19세 이상)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으며, 행위수단에 따른 적용법조, 가중처벌 요소 등이 다르다. 더욱이 성폭력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의 강간죄가 폭행, 협박의 수단 여부가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 여부(혹은 의사에 반하는)가 판단의 기준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성폭력에 대한 개념, 판단요소, 가중처벌 요건 등이 제대로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성적자기결정권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환경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동청소년의 성적인 침해와 폭력에 대한 보호와 권리적인 측면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여전히 폭행·협박을 수반한 성교행위를 강간으로 판단하는 조항이 그대로 있는 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 특히 청소년의 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단순히 ‘보호’라는 측면의 소극적 의미로만 제시될 뿐이다.



【학생선수 인권의 현주소】

인권실태 전수조사와 스포츠분야 (성)폭력 판례분석 결과 발표 토론회

[패널 토의]

세이프존이 필요한 이유 : 그루밍 학대의 사각지대

김은희

(고양테니스아카데미 테니스 코치)

세이프존이 필요한 이유 : 그루밍 학대의 사각지대

김은희 (고양테니스아카데미 테니스 코치)

스포츠계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즉시, 신고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피해 당사자들은 자신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인식조차 못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대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도 어딘가에 말을 해야 하는지 조차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한다. 이들은 말을 할 용기조차 내지 못한다. 학대의 이유가 교육, 훈육, 훈련의 일부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실력 향상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인성이 안 좋아서’, ‘말을 안 들어서’ 가장 웃긴 이유는 ‘맞을 짓을 해서’ 이것들이 스포츠 현장에서의 변하고 흔한 학대의 이유다. 일반적으로 선·후배 사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학대는 다른 이유도 아니고 ‘피해자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정당화하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는 수긍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다. 이런 환경에 지속해서 노출이 되어온 피해자(선수들)는 성인이 되어서도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아동심리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 가해자보다 더 힘이 세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에서만 피해 사실을 이야기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가해자보다 힘이 세서 피해자를 지켜줄 수 있는,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피해자(선수)는 피해 사실을 즉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피해 즉시 신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즉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부터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성)폭력을 폭력이라 말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피해자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신고는 새로운 피해의 시작.

(성)폭력 피해자에게 민·형사 소송은 새로운 피해이자 손해다. 징계 또한 마찬가지다. 누군가에게 고통과 상처를 안겨준 가해자를 벌하고 싶다는 생각은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할까 말까’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죄인 취급하지 않을까,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드는 것은 지나친 걱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다.

피해자가 소송이나 징계나 어떤 과정이든 가해자에게 가해 행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하는 과정 이후의 삶이 어떠할지 생각해보면, 대체로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이 먼저 떠오를 것이다. 피해자를 대신해 신고한 제삼자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이러한 현실에서 피해자들이 제삼자에게 학대 사실을 발설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닌,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피해 사실을 발설하고,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사건화를 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피해 당사자(선수)가 스포츠계를 떠날 각오, 즉 운동을 그만둘 각오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와 같다고 볼 수 있다. 피해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큰 고통과 상처인데, 가해 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더욱 가혹하다. 문제(학대)가 사건화 되어 피해자들이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신들의 꿈에 다가서기 위한 훈련과 일상을 영위해나가면 되는 정상적인 과정에서 피해자가 마주해야 할 문제들이 어찌면 가해행위보다 더 큰 피해와 손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피해와 피해, 손해와 손해 사이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가해 행위가 단절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과연 미래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나의 의문에도 모두가 달라져야 한다고, 변해야 한다고, 바뀌야 한다고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한다. 스포츠 인권 문제에 대해 크든 작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보고 들어 누구나 심각성과 중대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누구나 말하고 누구나 보고 듣지만, 정작 행동으로 변화를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피해자에게 용기가 필요 없는 세상

거창하거나 복잡하지 않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세이프존이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가해자를 벌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닌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다. 이들 곁에 많은 세이프존이 있다면 (성)폭력을 폭력이라 말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과 꿈을 지키기 위해서 용기를 낼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학생선수 인권의 현주소】
인권실태 전수조사와 스포츠분야
(성)폭력 판례분석 결과 발표 토론회

| 인 쇄 | 2019년 11월 7일

| 발 행 | 2019년 11월 7일

| 발행인 | 최 영 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 1가)
나라키움저동빌딩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 전 화 | (02) 2125-9935 | F A X | (02) 2125-0934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주)두루행복한세상

| 전 화 | 1644-0728 | F A X | (070) 8270-5278

ISBN 978-89-6114-706-4 93370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재산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